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42-01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2009. 12.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 영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 종 희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책임자	최성애	연 구 위 원
연구진	신영태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부 연구위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마창모	연 구 원
	남수민	연 구 원
	이승진	행 정 원
	강주리	행 정 원

위탁연구기관 : (주)피플리서치센터

협동연구기관 : 씨앤닷컴

연구자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함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2. 연구의 목적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도입목적, 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록절차, 관리체계 등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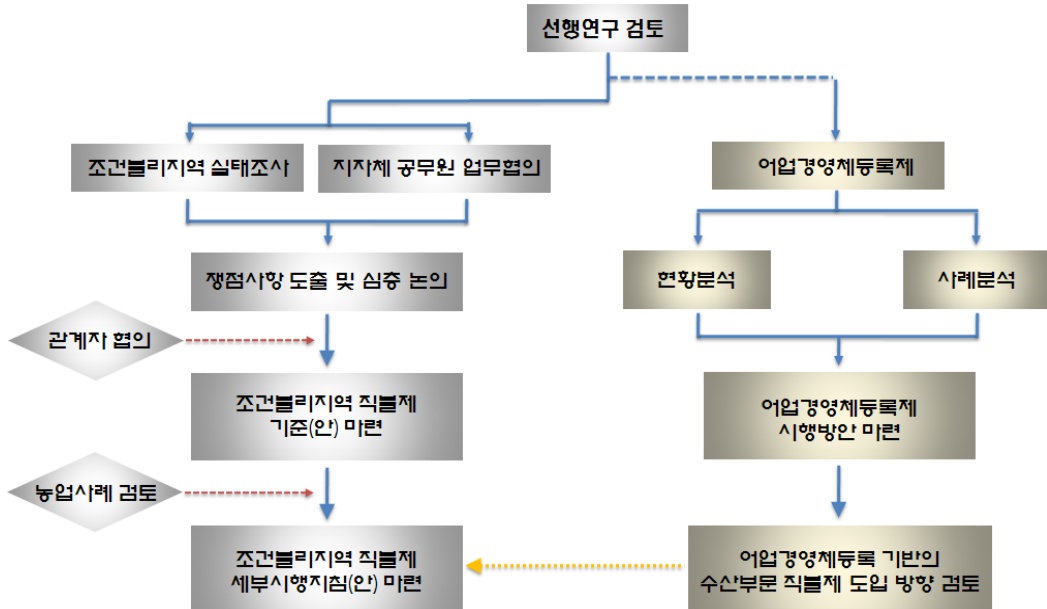
1. 연구방법

[요약 표 1] 참여기관별 연구내용

구분	참여기관	연구내용
주관연구기관	KMI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관련 총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세부시행방안 및 시행지침(안) 마련 -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위탁연구	피플리서치	-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집계
협동연구	씨엔닷컴	- DB 구축



2. 추진체계



[요약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II.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개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에 앞서 정책의 대상, 조건,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어업경영체 등록제 등 타 분야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2. 조사기간

[요약 표 2] 실태조사의 단계별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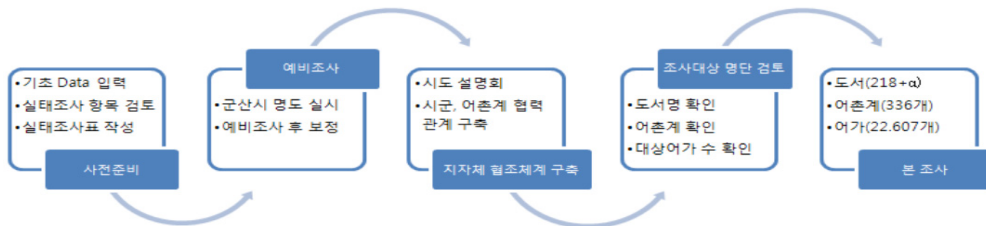
구분	조사기간	비고
조사기간	2009년 5월 1일 - 2009년 12월 11일	
사전준비단계	2009년 5월 1일 - 2009년 7월 20일	- 기초자료 작성 - 실태조사표 작성
예비조사	2009년 7월 31일 - 2009년 8월 1일	- 전라북도 군산시 명도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2009년 8월 3일 - 2009년 8월 20일	-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조사대상 명단 검토	2009년 8월 21일 - 2009년 10월 10일	- 시도 ↔ 시군 ↔ 어촌계
본 조사	2009년 10월 19일 - 2009년 12월 11일	
DB 입력	2009년 11월 24일 - 2009년 12월 11일	

3. 조사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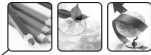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요약 표 3] 실태조사의 조사기관 및 역할

구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피플리서치센터	(주)씨엔닷컴
업무구분	사전준비 및 기획·총괄	조사수행	DB 구축
세부업무	- 기초 Data 수집 및 입력 (도서, 어촌계, 어가, 이격거리 등) - 실태조사표 작성 - 예비조사 실시 - 업무총괄	- 실태조사표 송부 및 취합 - 설문조사(전화조사) - 조사결과 취합 및 집계	- 실태조사표 입력
조사기간	2009. 5. 1~12. 11	2009. 10. 19~12. 11	2009. 11. 24~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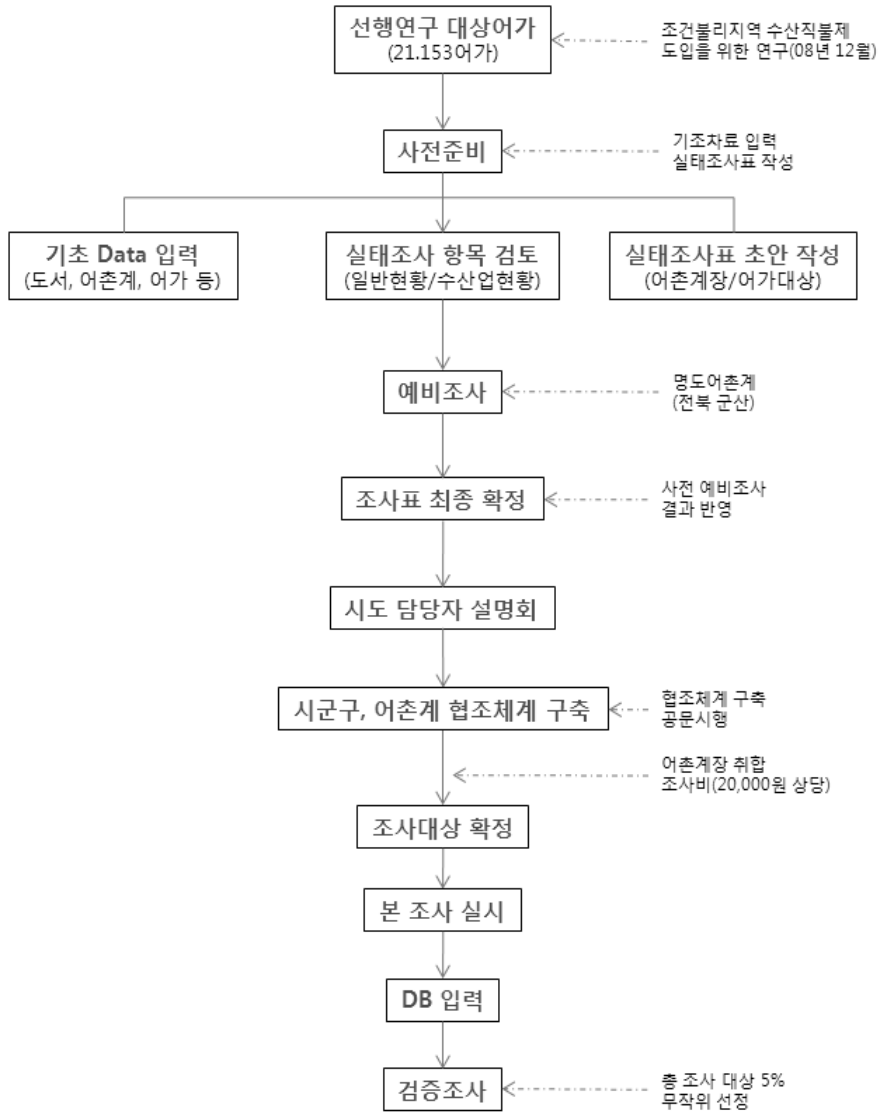
4.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요약 그림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의 단계별 절차



- 조사추진체계



[요약 그림 3]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추진체계

5. 집계결과

[요약 표 4]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집계결과

지역 분류	도서수	어촌계수	어가수	어촌계원수	집계결과		
					회신 어촌계수	회신 어가수	DB 입력 어가수
경남	16	59	2,309	2,336	59	1,534	1,515
경북	1	11	724	654	11	101	100
전북	19	17	1,908	1,632	17	984	886
충남	9	12	1,058	924	12	958	913
경기	3	2	114	101	2	90	90
제주	5	6	445	499	6	241	238
인천	25	28	2,641	2,298	28	1,949	1,872
전남	155	219	14,311	12,979	219	11,413	11,134
총 계	233	354	23,510	21,423	354	17,270	16,748

-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은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조사 대상보다 다소 증가한 233개 도서, 354개 어촌계, 23510어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 응답율은 어촌계의 경우 100% 이루어졌으며, 어가의 경우는 73.5%의 회수율을 나타냈음. 이 중 한 어가당 2인 이상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522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16,748개의 데이터를 DB화 하였음
-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력된 DB를 통해 실태조사 집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하루에 여객선(철부선, 쾌속선, 기타 포함)이 3회 이하 운항되는 어



- 출제는 전체의 42.2%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 지역의 도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연중 조업 기간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2%가 3개월 이상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맨손어업자의 11.5%는 연중 1개월 이하로 조업한다고 응답하였음
 - 셋째,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수는 1인 혹은 2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7%로 나타나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대부분은 2인 이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응답자 중 맨손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70%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54.4%가 맨손어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정책대상에 맨손어업자 포함여부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날것으로 보임

6. 실태조사의 시사점

가. 조사대상의 명확화

-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도서와 각 소속 어촌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어촌계분류평정을 기초로 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를 지자체, 어촌계로부터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보완하였음
 - 어촌계명 및 어촌계장 변동
 - 어촌계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 어촌계의 통폐합으로 인한 어촌계 변동

나. 대상어의 개념 정리

- 실태조사의 대상은 도서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로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 낚시, 맨손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 맨손어업이지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가
- 육지와 도서를 오가며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
- 염산업에 종사하는 어가
- 또한 맨손어업과 같은 신고어업의 경우 비(非)어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어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다. 대상어가 판정 여부

-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상 어가로 판정이 필요한 도서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소멸 보상을 받아 면허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태풍, 해양오염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
 - 어촌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
 - 어촌계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가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는 불법어가와 실제로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의 경우 대상 어업인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음
- 또한, 비(非) 어촌계원의 대상어가들을 판정하기 위해 개인별로 신청한 어가들에 대해 대상어가임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운영 및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면허 및 허가증, 위판실적, 어구 구입 영수증 등)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Ⅲ.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1. 개요

가. DB 구축의 목적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조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시행착오 줄이고, 어가 및 어촌공동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나. 대상 및 규모

[요약 표 5]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대상 및 규모

시도	시군구	어촌계	어가	비고
인천	중구	4	151	
	강화군	3	203	
	옹진군	21	1,447	
경기	안산시 단원구	1	64	
	화성시	1	23	
충남	보령시	11	865	
	서천군	1	44	
전북	군산시	11	515	
	부안군	6	338	
전남	여수시	29	1,303	
	고흥군	2	58	
	영광군	4	251	
	완도군	109	3,886	
	진도군	30	1,122	
	신안군	56	4,117	
경북	울릉군	11	96	
경남	통영시	59	1,482	
제주	제주시	5	127	
	서귀포시	1	90	
합계		365	16,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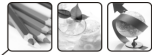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다. DB 구축범위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통계관리가 가능토록하여 DB의 활용도 제고
 - 어가정보 : 어업인·경영주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종사유형(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등), 소득수준 등
 - 어촌계 정보 : 어촌계(어촌계명,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등), 계원수, 입지유형 등
 - 생산정보 : 생산품목, 경영형태 및 규모,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등
- 조사된 실태조사 정보는 정제를 통해 색인화 및 코드화 작업이 수행
 - 입력 후 검색이 빠르고 정보의 변환이 용이한 색인화된 DB 구축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의 DB화 자료는 수산분야 다른 DB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라. DB 구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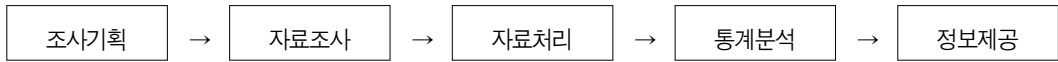
[요약 표 6] DB 구축방법

구분	진행내용
자료의 수집계획 수립	- 원시자료 수집절차, 방법, 준비사항 등
자료분석	- 자료의 내용, 범위, 형태, 크기 파악 - 자료 분류 - 코드화 여부 검토
DB 구축	- Data Base, Table - Data Base 구축(자료입력프로그램)
DB 구축 및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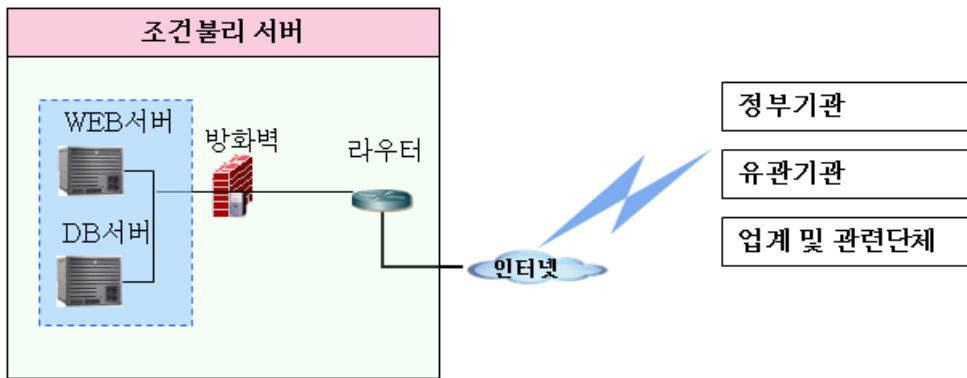
2. 자료처리 및 DB구축

가. 자료처리



[요약 그림 4] 자료처리 과정

나. DB 구축



[요약 그림 5] 정보제공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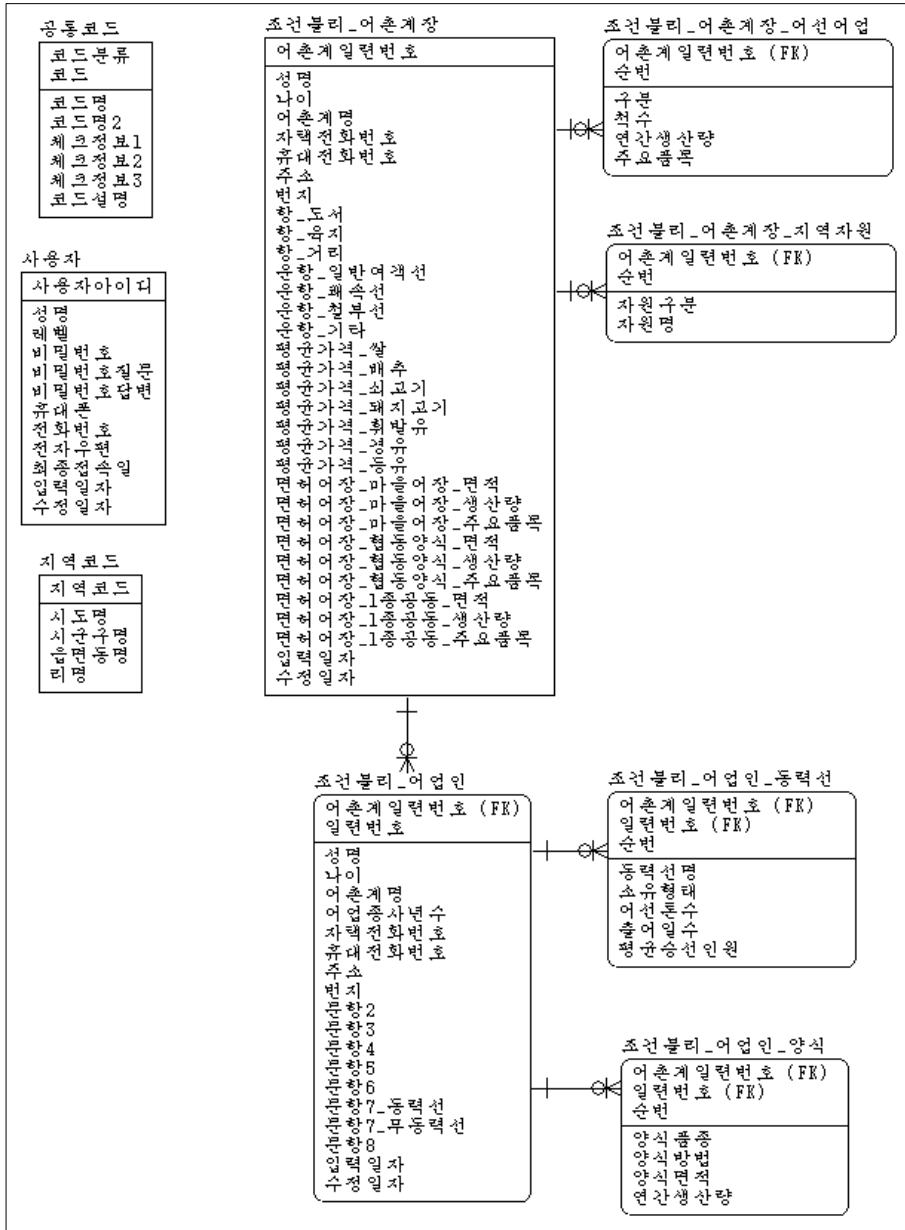
다. DB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약 표 7] DB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분류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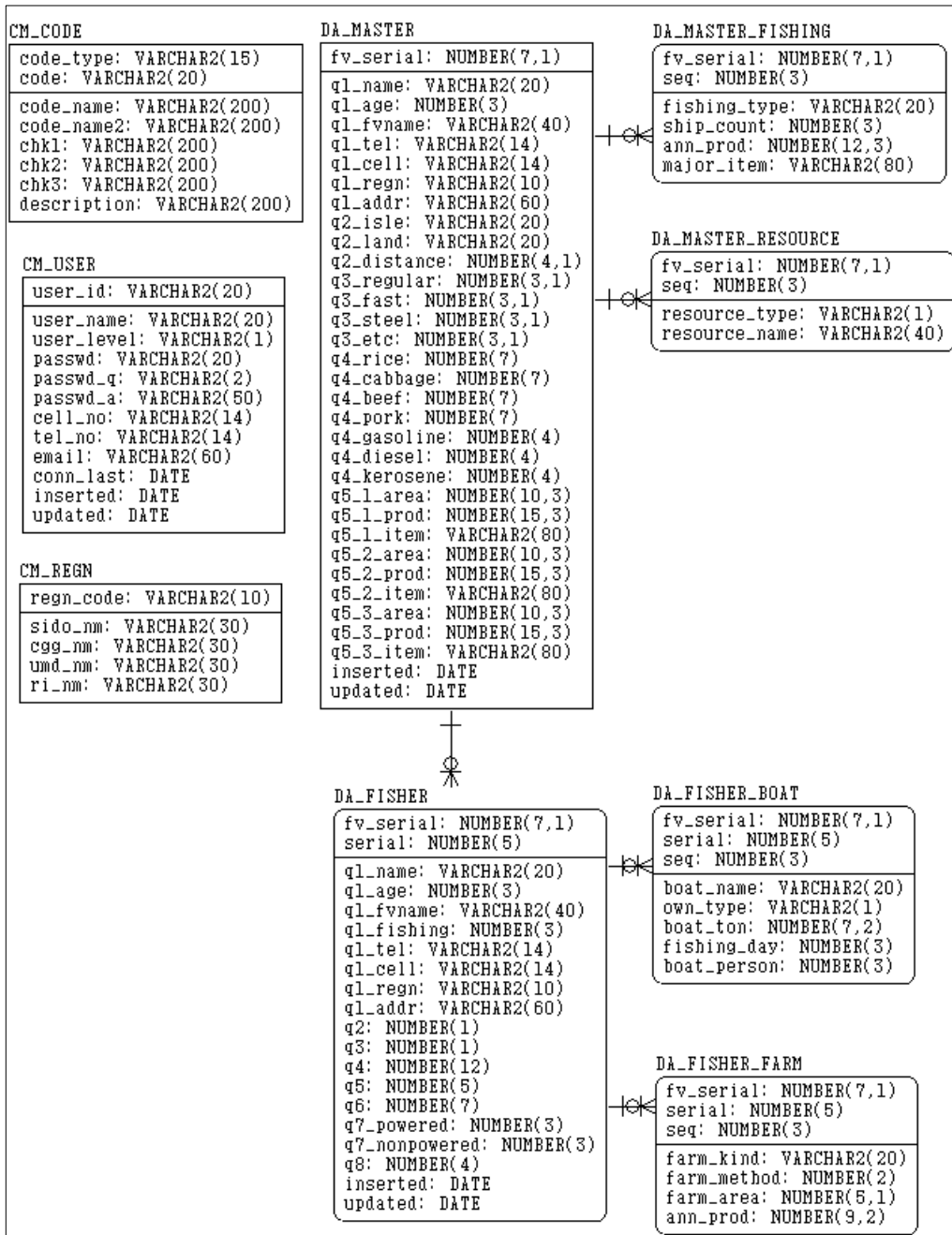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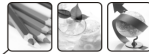
구분	종류	특성	비고
DBMS	Oracle	UNIX 및 NT 시스템	적용대상
	MS-SQL Server	NT 시스템	
Web Server	OAS	DBMS가 Oracle 인 경우에	
	Apache	OS가 UNIX인 경우	
	IIS	OS가 NT인 경우	적용대상
Web Program	ASP.NET	Web Server가 IIS인 경우	적용대상
	CGI	Web Server가 Apache, OAS	
개발언어	C#		적용대상

3. DB 항목 및 활용

가. DB 항목



[요약 그림 6] 논리 ERD



[요약 그림 7] 물리 ERD

나. DB의 활용

- 조건불리통계 DB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들의 Web 접근정보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에 따라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생성과 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자료의 새로운 생성과 메뉴 재구성을 통한 GUI를 최적화
- 정책적 활용사례 제공, 학습자료 제공과 홍보(논문공모 등) 그리고 주제의 검색자료 제공 등을 운영·관리
- 전문가, 민간부문 조건불리통계 관련 정보 검색 등을 통한 지속적 운영 관리가 되도록 협력적 체계를 구축

IV.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및 시행지침(안)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 ‘육지와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¹⁾어촌’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함
 - 추가 고려 대상으로는 실질적인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육지와 이격거리 8km 미만 일지라도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거나 또는 1일 3회 미만 운항되는 도서도 선정될 필요가 있음(실태조사 및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로 어업인의 개념정의를 중요함. 따라서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의 나목의 어업인 중에서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1)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 중 육지와 연륙되지 아니한 섬



○ 확인방법

- 어촌계 명부에 등록된 어업인
- 어촌계에 소속되지 아니한 어업인은 면허, 허가 등 등록자로 관련 등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업활동 유무 판단이 중요한데 지역별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함.
- 어업활동여부 지역심의위원회 구성원 : 어촌계장, 이장 및 읍·면장

○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지원기준은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임²⁾
- 직불금은 한 번 산정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하도록 하고, 3년 또는 5년마다 새로이 산정하여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업소득 차액

- 어업소득 차액이 2004년에는 -85천원으로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이 비조건불리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어업소득 차액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08년에는 979천원까지 격차가 커져서 소득양극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어업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어촌의 소득저위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어업소득 차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했을 때 직불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과제임. 예산제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직불금 지원수준(단가)은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건의 불리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수준(단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최근 3개년(2006~2008) 평균 어업소득 차익인 62만원의 1/3~1/2인 20~31만원의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수협 어촌계분류평정자료 활용

○ 지급내용

- 직불금은 생산자 직접 소득지원과 마을공동사업지원을 병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이에 지급방법은 생산자 직접 소득지원의 측면에서는 개별 어가이며, 마을공동사업 지원의 경우는 어촌계에 지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직불금을 농가와 마을의 분배가 7:3으로 직불금의 30%는 농촌마을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요약 표 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준

구 분	기 본(안)	비 고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 육지와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	·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다음 조건 포함여부 - 정기여객선 운항빈도 1일 3회 미만 도서 - 정기여객선 운항하지 않는 도서
지원대상	·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 -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 나목 및 동 시행령 제3조 2항 1호 및 2호에 의거	·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어업인(고용인 제외) ·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둠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 (20~31만원)	·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자료를 활용 · 3년 평균 어업소득 차액의 일부(1/3-1/2)지원
지급내용	· 생산자 직접소득 + 마을사업 지원	· 마을사업지원의 경우 마을협약 체결
지급방법	· 어가 및 어촌계	· 어가 : 개인별 거래 구좌 · 어촌계 : 어촌계 거래 구좌

주 : 생산자 직접소득과 마을사업 지원의 비율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안)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단계

- 한국어촌어향협회 :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의 육지까지 이격거리, 해당 어촌계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조건불리지역을 도서, 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 DB관리기관에 이를 통지

- DB 관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대상지역(도서명, 어촌계 등)에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신청서 전산화를 준비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 : 시군구,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읍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 어촌계에 '사업신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신청 단계

- 어촌계, 읍면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읍면장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이를 시장·군수에 제출
- 지자체(시군) : 읍면에서 제출한 직불금신청서와 마을활성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결과를 해당 읍면 및 운영위원회에 통지

○ 사업자 선정단계

- 어촌계(어가단위) : 지원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일련번호대로 정리하고, 누락 및 서명 등을 확인한 다음 어가선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증
- 읍면 : 어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운영위원장과 동행하여 실제 대상자임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
- 시군 :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자 DB자료 결과를 토대로 무작위로 5%를 추출하여 현장조사 실시

○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지급의 이행요건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시군의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

- 시군 : 직불금 지급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주체로 어장관리의무, 마을활성화 사업(자율관리어업과 연계 가능) 등을 점검
 - 읍면 : 이행점검 확인 결과, 불이행 대상어가 또는 어촌계에는 부적격 처리를 하고, 이를 DB자료에 입력
-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 이행요건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이 제재함

[요약 표 9] 이행요건 불이행 시 제재기준

이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어장관리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에 따른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5년 간)
마을활성화사업 이행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취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발전기금 지급 중단(5년 간)

- 자연재해, 어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적용

V.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1. 도입배경

- 수산부문에서도 농업부문에서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임.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개별 어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므로 어가 관련 자료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필요함
- 최근 수산부문에서도 어가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학적 구조가 이질화 되면서 어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어가 유형별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어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어가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개념과 목적, 등록의 대상과 등록항목, 등록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 어가의 경영정보 파악이 필수적임

2.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가. 어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 최근 수산부문도 농업에서와 같이 개별 어가를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할 계획임. 이러한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한 기준소득의 설정과 현재의 소득파악 및 검증이 중요하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여 기초데이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어가유형별 차별적인 정책 시행

- 최근 어가는 업종, 겸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고, 어가들의 인적 조건과 경영능력, 경영체로의 발전가능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어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다. 어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자료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요 정책 사업에서 요구되는 어가의 기본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대외 개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

-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수산물

의 가격변화에 따른 품목별 피해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총괄적 피해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피해정도를 어가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면 대외 개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효율적인 수산인력 육성

- 수산부문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경영 교육, 투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제 마련을 통해 어가의 경영·교육 이력 등을 관리해야 함

3. 기본방향

가. 도입 목적

- 어업경영체등록제는 어가의 기본정보 등록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어가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어가의 경영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 신청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나. 정책적 활용³⁾

① 직접지불제의 근거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수산부문에 도입되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어업경영체 등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어가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또한 현재의 등록제는 사업자 등록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소득 노출을 꺼리는 어업경영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급될 직접지불제와 연계된 등록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2006.1)의 농업부문 내용을 토대로 수산부문에 적용해서 작성함



- 또한 정책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부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② 어가 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위한 기반

- 어가 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어가가 유형화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파악되어야 함
- 어가 유형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이와 함께 개별 어가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용함
- 따라서 어업경영체등록제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유효한 기반이 될 수 있음

③ 전업어가의 육성 기반

- 어가단위로 등록된 정보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업어가의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업어가의 인적사항, 경영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개별 어가에 필요한 경영·기술 교육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④ 소득안정정책의 기반

- 수산부문에서도 농가 수준의 어가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가의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그 기반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4.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가. 등록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어업경영체”로서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어업경영체에서 어업인은 시행령상에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임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등록 방법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방법은 임의등록의 원칙하에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등록내용 및 절차

① 일반 수산사업 등록정보 현황

- 고밀도 부표보급지원사업
 - 어업의 종류/어장 면적/어업자 성명/어업자 주소/어장의 위치/총부표사용량(종류,용량, 수량)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 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번호/업체 주소/양식품종/수조면적/연간생산량/연간수출량/양식형태(육상수조식, 순환경과식 등)/수조수/허가등록번호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정치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명/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생산자단체형태
 - 선명(업종)/톤급(선질)/진수년월일/어업허가번호(어선번호)/최종선박검사/설치장비명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명/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생산자단체형태/참여 어가수/어업면허(종류, 허가번호)
 - 선명(업종)/톤급(선질)/진수 년월일/어업허가번호(어선번호)/최종선박검사/설치장비명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어촌계명/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학력/조직형태/참여가구
 - 영어규모 :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 재산상태 : 동산, 부동산, 현금(저축포함)
 -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관련자격증 취득 : 자격증명, 발급기관

② 소득보전사업 등록정보 현황

-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품목/소재지(시군, 읍면,리동)/면허번호/허가번호/면허면적(m²)/생산기간/생산 품목별 생산량/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어류양식현황조사

- 일반현황
 - 어가 또는 사업체명/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체 사육가능 시설면적 (시설방법에 따라 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축제식 등 m²와 ha)
- 시설현황
 - 양식어종별 시설방법, 시설면적(가로(m), 세로(m), 시설수, m², ha)
- 종사자수
 - 가족종사자(경영주, 처, 자녀, 동거친인척 등), 상시종사자(1개월 이상 고용), 임시종사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 구분
- 양식어종 현황
 -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판매금액, 폐사량, 현사육량(크기별 구분), 사료투입량(생사료, 배합사료 구분)

④ 수산부문 수산직불제 시행 시 등록사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내 어가정보
- 고흥어가은퇴직불제
 - 양식어종(어류, 패류, 해조류 등), 양식품종, 경영주 연령, 양식어업 종사기간, 면허취득 일자, 면허유형(개인, 어촌계),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 (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부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 휴어직불제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 어종, 월별 생산량
- 어장휴식직불제
 -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 재해피해정보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혜액



⑤ 일반 등록사항 제안

- 기초등록사항
- 양식수산물 생산시설
- 양식어업 생산규모
- 어선어업 생산
- 기타 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염산업

⑥ 상세 등록사항 제안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 수산계 학교 졸업여부, 재산상태(동산, 부동산, 현금(저축포함)),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관련자격증 취득 여부(자격증명, 발급기관)

[요약 표 10] 상세등록사항(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재산상태				자격증 취득 여부		관련 교육 이수 실적	
	합계	동산	부동산	현금	자격증명	발급기관	교육명	기간

- 경영관련 사항
 - 수산업 관련 자산과 경영성과를 등록하고 매년 갱신하여 어가의 경영이력으로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경영성과로서 조수입이나 매출액, 어업부채 등)
- 기타 등록사항
 - 과거 정책자금 등의 수혜 여부나 재해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등록함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혜액 등
- 직불제 대비 등록 사항
 -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부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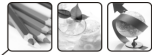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판매금액, 폐사량, 현사육량(크기별 구분), 사료투입량(생사료, 배합사료 구분)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 어종, 월별 생산량

⑦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사전자료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한 정보로 어가단위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품종별 표준어업소득 자료를 구비해야 함
- 고령어가은퇴직불제 등의 직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한 표준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⑧ 등록절차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동일한 등록절차를 따름
 - ①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함
 - ② 농관원은 제출한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농지, 축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함
 - ③ 농관원에서 보낸 ‘전산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본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관원에 제출함
 - ④ 농관원은 ‘본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한 후 그 결과를 농가별로 통보함
- 단,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절차 없이 농관원에서 보낸 본신청서를 작성, 제출



라.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① 검증 체계 검토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정보는 정책사업 신청서와의 대조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현장 실사를 통한 검증을 병행함
- 따라서 현장검증을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것 보다는 표본조사 형태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실사 결과가 등록내용과 다를 경우 향후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② 갱신 방법

- 등록내용에 대한 갱신체계는 어업경영체가 자진 신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③ 관리기구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할 조직으로는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④ 등록번호 체계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록번호 체계를 구축한다면 향후 수산물이력제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물의 세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요약 표 11] 우리나라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국가번호>	<도 번호>	<시군 번호>	<읍면 번호>	<어업경영체 개별번호>					

마. 향후 추진 과제

① 관리 조직의 선정, 인력과 예산 배정 필요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관리하는 조직을 선정하고, 그 관리 조직에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도록 함

② 직불제 실시에 대비한 등록체계 마련

- 향후 실시하게 될 수산부문 직불제의 추진경과에 맞추어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③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등록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④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 직불제의 단계적 도입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공익형 직불제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⑤ 실질적인 어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

- 어가별 등록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어가단위 소득안정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목 차

요 약	1
I.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5
1. 연구범위	5
2.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1. 연구방법	6
2. 추진체계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9
1. 주요 연구내용	9
2. 향후 추진 과제	12
II.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13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15
1. 조사의 목적	15



2. 조사기간	15
3. 조사대상	16
4. 조사기관 및 역할	17
5.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1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31
1. 실태조사 집계 결과	31
2. 실태조사 내용	33
제3절 실태조사 검증	39
1. 충남 서천군 유부도	39
2. 전남 신안군 병풍도	4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Ⅲ.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43
제1절 개요	45
1. DB 구축의 목적	45
2. 대상 및 규모	45
3. DB 구축 범위	46
4. DB 구축방법	46
제2절 자료처리 및 DB 구축	47
1. 자료처리	47

2. DB 구축	50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55
1. DB의 구분	55
2. DB의 활용	63
IV.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및 시행지침(안)	65
제1절 세부시행방안(안)	67
1.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67
2. 지급대상어가 및 확인방법	69
3. 지원기준과 지원수준(단가)	70
4. 지급내용 및 방법	73
제2절 시행지침(안)	74
1. 목적	74
2. 근거법령	74
3. 성과목표 및 지표	74
제3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75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단계	75
2. 사업신청 단계	76
3. 사업자 선정단계	77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79



5.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80

V.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83

제1절 도입배경 85

제2절 어가 실태 및 현황 87

 1. 어가 및 어업경영체 현황 87

 2. 근해어업 경영실태 93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94

 1. 농업경영체 등록 94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100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122

 1. 필요성 122

 2. 기본방향 123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126

 1. 등록 대상 127

 2. 등록 방법 127

 3. 등록내용 및 절차 128

 4.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133

 5. 향후 추진 과제 136

 6. 어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 137

VI.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론	149
제2절 정책제언	150
VII. 부록	153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155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159
3.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171
4. 제안 의견	181
5. 도상연습	187
6. 도서 공도화 방지대책	195
7.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203



표 목 차

[표 1-1] 참여기관별 연구내용	8
[표 1-2]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요소 검토(안)	11
[표 2-1] 실태조사의 조사기관 및 역할	16
[표 2-2] 실태조사 대상	17
[표 2-3] 실태조사의 조사기관 및 역할	17
[표 2-4]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항목	21
[표 2-5] 어촌계장용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검토 항목	23
[표 2-6] 어업인용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검토 항목	24
[표 2-7] 예비조사 추진내용	25
[표 2-8] 조건불리지역 대상 추가검토 지역 리스트	28
[표 2-9] 본 조사 추진내용	29
[표 2-10]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집계결과	31
[표 2-11] 충남 서천군 유부도 검증조사 개요	39
[표 2-12] 전남 신안군 병풍도 검증조사 개요	40
[표 3-1] 대상 및 규모	45
[표 3-2] DB 구축방법	46
[표 3-3]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 구축관련 소프트웨어 분류 및 적용	51
[표 3-4] 테이블 목록	58
[표 3-5] 조건불리 어촌계장	58
[표 3-6] 조건불리 어촌계정 어선어업	59
[표 3-7] 조건불리 어촌계장 지역자원	59
[표 3-8] 조건불리 어업인	60

[표 3-9] 조건불리 어업인 동력선	61
[표 3-10] 조건불리 어업인 양식	61
[표 3-11] 사용자	62
[표 3-12] 공통코드	62
[표 3-13] 지역코드	63
[표 4-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본(안)	67
[표 4-2]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도서 및 어촌계 수 (추정)	68
[표 4-3] 비조건불리지역과조건불리지역 간 어업소득 차액 산정	72
[표 4-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성과지표	75
[표 4-5] 이행요건 불이행 시 제재기준	81
[표 5-1] 어가유형별 어가수 추정 결과	88
[표 5-2] 소득계층별 어가소득 현황	91
[표 5-3] 소득계층별 어업소득현황	92
[표 5-4] 어가소득원천별 불안정성	92
[표 5-5] 주요 국가의 직불제 실시 동향	103
[표 5-6] 공익형 직불과 경영안정형 직불의 비교	116
[표 5-7] 상세등록사항(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132
[표 5-8] EU의 농가등록번호 체계	136
[표 5-9] 우리나라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136
[표 5-10] 직불제 추진 로드맵	14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7
[그림 2-1]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의 단계별 절차	18
[그림 2-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의 추진체계	19
[그림 2-3] 기초 Data 입력	20
[그림 2-4]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26
[그림 2-5] DB 입력 구조 및 개요	30
[그림 2-6]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33
[그림 2-7] 1일 여객선 운항 빈도	34
[그림 2-8] 여객선 1일 3회 이하 운항 어촌계의 지역별 비중	34
[그림 2-9] 연중 어업 종사기간	35
[그림 2-10] 어업종사 가구원	36
[그림 2-11] 종사 업종	36
[그림 2-12] 지역별 맨손어업자 비중	37
[그림 2-13] 참여 조직	37
[그림 3-1] 자료처리 개요	47
[그림 3-2] 자료처리 흐름도	48
[그림 3-3] 정보제공 구성도	51
[그림 3-4] 개체관계도	52
[그림 3-5] 물리 ERD	56
[그림 3-6] 로그인 페이지	57
[그림 4-1]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 및 통보 단계의 기관별 역할	75
[그림 5-1] 어가수 및 어업종사가구원수 추이	87

[그림 5-2]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추이	89
[그림 5-3] 어업형태별 어가경제잉여 추이	89
[그림 5-4] 실질어가소득 분포변화	90
[그림 5-5] 실질어업소득 분포변화	91
[그림 5-6] 근해어업 경영실태 및 출어비용	93
[그림 5-7] 인정농업자제도 개요	99
[그림 5-8] 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념도	105
[그림 5-9] 미국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 개념도	106
[그림 5-10] EU 단일직불제 개요	108
[그림 5-11]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개념도	114
[그림 5-12]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기본지불	114
[그림 5-13] 밭농업 직불제 개념도(가산형 예시)	117
[그림 5-14]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	120

Chapter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2011년 추진하게 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금액, 이행요건 등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앞서 검토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2008. 12)」의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실태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수산분야의 다른 직불제를 추진할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어업경영체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등 향후 효율적인 수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농업분야의 경우 이미 다양한 직불제 시행을 통해 구축된 농업경영체 단위를 DB화시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고 있음
- 현재까지 어가정보는 어업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와 부정확한 내용으로 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검증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수산분야에서 도입할 예정인 직접지불제 또는 다양한 수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업경영체 단위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부정·중복수혜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어업활동이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불리지역으로 도출된 도서어촌⁴⁾의 실질적인 대상어가⁵⁾을 파악해 보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도입목적, 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록절차, 관리체계 등 정책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본 보고서에서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이격되어진 도서지역을 의미하며, 제주도는 제외하였음

5)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도서지역의 어촌계장을 통해 어가수를 파악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09년 - 2010년
- 실태조사 범위 : 육지로부터 8km이상 이격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 및 어가⁶⁾
- 내용적 범위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세부시행방안 및 시행지침(안) 마련
 -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크게 ①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② 어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대상어가 파악 및 실태조사 실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웹(web)상에 DB로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선행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2008. 12)」에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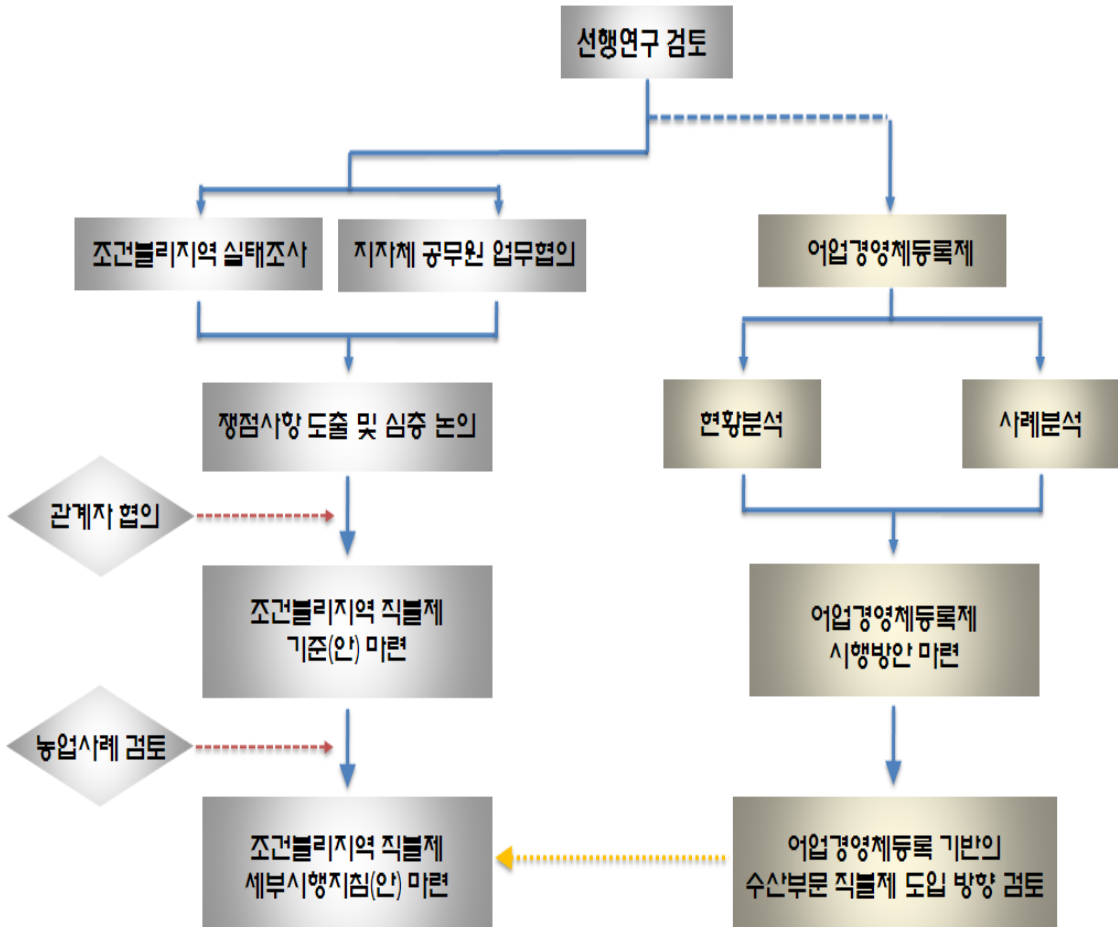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선행연구 검토, 실태조사, 유사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청취, DB 구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음
 -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에 앞서 도서(島嶼), 어가, 이격거리 등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백서(행정안전부, 1996), 도서현황(행정안전부,), 전남의 섬(전라남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Excel, ArcGIS 9.2에 입력하여 관리함
 -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에 앞서 시행된 선행연구와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
 -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사전준비, 예비조사,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조사대상 명단 검토, 본 조사, DB구축 및 활용, 검증조사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장에서 설명하였음
 - 유사 사례조사 : 어업경영체 등록제 검토를 위해 농업사례를 검토하여 그 기본방향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 자문청취 :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의 전문가, 수산정책분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 DB구축 : 실태조사표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웹상에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구축하였음
-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협력으로 수행하였음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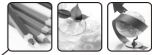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가. 연구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나. 참여기관

- 본 연구의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씨앤닷컴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피플리서치는 KMI에서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 참여기관별로 업무를 살펴보면, KMI는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를 총괄과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시행방안 및 시행지침(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을 검토함
- 피플리서치는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를 대상 도서지역과 어가에 배포하고, 작성된 결과를 집계하는 업무를 담당함
 - 씨앤닷컴은 해당 어가 및 어촌계장이 작성한 실태조사표를 피플리서치로부터 넘겨받아 그 자료를 웹상에 입력하여 DB를 구축하였음

[표 1-1] 참여기관별 연구내용

구분	참여기관	연구내용
주관연구기관	KMI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관련 총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세부시행방안 및 시행지침(안) 마련 - 어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향 검토
위탁연구	피플리서치	-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집계
협동연구	씨앤닷컴	- DB 구축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연구내용

- 수산부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 연구로는 최성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2008)』가 있음. 이 연구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 최초의 연구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개념, 선정기준,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행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조건불리성의 개념 정립, 대상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음
-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정주여건 등의 불리성으로 어촌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규정함
 - ‘조건불리지역’이란 수산업의 물적 토대인 어장이 위치한 지형적·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사회의 전반적 발전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든 어촌지역이 이에 해당될 개연선이 많아 사업 대상자를 특정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경제적 조건불리성, 지리적 조건불리성 및 사회적 조건불리성의 3개 지표로 구분하여 각 지표의 기준요소에 대하여 변별력, 논리성, 객관성, 관련 기초자료 확보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함
 - 경제적 조건불리성의 기준요소로 어가당 어장면적, 어업소득, 생산액, 어장수심, 연중 취업률 등을 검토함
 - 지리적 조건불리성으로는 도서어촌에서의 인근 육지와 직선거리, 도서어촌의 면적, 여객선 운항빈도, 벽지어촌의 인근 중심지역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운행빈도 등을 검토함



- 사회적 조건불리성으로는 인구밀도, 고령화률, 평균지가, 의료시설, 도서
내 대중교통운행여부 등을 검토함
- 각 지표의 기준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조건불리지역 선정대상 기준을 정하
기 위한 지표로 지리적 조건불리성을 나타내는 ‘육지와 이격된 직선거리’
및 ‘1일 여객선 운항빈도’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요소 검토한 결과([표 1-2] 참조)에 의하면 변별력,
논리성, 객관성, 기초자료 확보 용이성 등에서 도서어촌 지역이 조건불리지
역으로 선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표 1-2]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요소 검토(안)

구 분		변별력	논리성 (명확성)	객관성	기초자료 확보 용이성	선정여부	
지 표	기준요소						
경제적(생산) 조건불리성	어촌계 어가당 어장면적	◎	△	◎	△	×	
	어촌계 어가소득	△	○	○	△	×	
	어촌계 어업소득	○	◎	○	△	×	
	어장수심이 10m 이내	○	○	◎	○	×	
	연중 취업율이 평균 이하	△	△	○	△	×	
지리적 조건불리성	도서 어촌	육지 선착장까지의 거리	◎	◎	◎	○	○
		육지 위판장까지의 거리	◎	◎	◎	×	×
		도서어촌의 면적	◎	×	○	◎	×
		도서어촌의 표고 및 경사도	◎	○	◎	△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	○	◎	◎	○
	벽지 어촌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	△	△	×
		1일 대중교통 운행편도 회수	○	△	△	△	×
사회적 조건불리성	인구밀도	△	◎	○	×	×	
	고령화율	△	◎	○	×	×	
	평균지가	△	○	○	◎	×	
	의료시설 유무	◎	◎	△	×	×	
	도서내 대중교통 운행 여부	◎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8.12

- 지리적 조건불리성 지표에 적합한 지역은 도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어촌 중에서도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어촌 및 8km이하라도 1일 대중교통 운항횟수가 3회 미만을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선정기준을 어촌계분류평정의 자료를 토대로 8km 이상 도서어촌계 322개(21,153어가), 8km 미만 1일 선박운항횟수 3회 미만 도서어촌계 97개(3,391어가)로 집계되었음
- 지원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업활동의 조건불리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업소득의 격차 그리고 정주여건상의 조건불리성으로 추가 지불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2. 향후 추진 과제

- 선행연구의 결과 향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어의 정확한 명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 그리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 파악한 조건불리지역 대상의 도서, 어촌계, 어가수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
-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금액에 대하여 어업활동의 조건불리성으로 발생하는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 간의 어업소득 차액, 어업이외의 정주여건 불리성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검토하였음
- 아울러 직불금의 지원 방법 및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추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① 어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② 어촌계(지역공동체)에 지원하여 마을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③ 어가와 어촌계에 배분하는 등의 지원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어촌계분류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어업소득자료 확보에 대한 검토 및 방안마련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매년 지원금액을 정할 수 없으며 3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보정하는 방안 등 검토)

Chapter

0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제3절 실태조사 검증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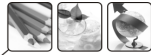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는 본 정책의 시행에 앞서 정책의 대상, 조건,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향후 사업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임
- 본 조사는 선행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2008. 12)」에서 파악되었던 정책대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직불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결과를 토대로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이 감안되도록 함
-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어업경영체 등록제 등 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함

2. 조사기간

- 본 실태조사는 사전준비단계, 예비조사,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조사대상 명단 검토, 본 조사, DB입력 등의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단계별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음.
 - (1) 사전준비단계는 조건불리지역의 기초자료 입력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2009. 5. 1~7. 20 까지 진행하였음
 - (2) 예비조사는 전라북도 군산시 명도를 대상으로 2009. 7. 31~8. 1까지 2일간 실시하였음
 - (3) 실태조사에 앞서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 8. 3~8. 20 까지 해당 시도 담당자를 면담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취지와 향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



- (4) 실태조사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사대상 명단(안)을 해당 시도, 시군 구, 어촌계에 확인을 요청하여 조사대상 명단을 검토하는 작업을 2009. 8. 21~10. 10 까지 진행하였음
- (5) 조건불리지역 명단을 토대로 본 조사를 2009. 10. 19~12. 11 까지 진행 하면서 동시에 DB 입력 작업을 추진하였음

[표 2-1] 실태조사의 조사기관 및 역할

구분	조사기간	비고
조사기간	2009년 5월 1일 - 2009년 12월 11일	
사전준비단계	2009년 5월 1일 - 2009년 7월 20일	- 기초자료 작성 - 실태조사표 작성
예비조사	2009년 7월 31일 - 2009년 8월 1일	- 전라북도 군산시 명도 (명도어촌계)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2009년 8월 3일 - 2009년 8월 20일	-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조사대상 명단 검토	2009년 8월 21일 - 2009년 10월 10일	- 시도 ↔ 시군 ↔ 어촌계
본 조사	2009년 10월 19일 - 2009년 12월 11일	
DB 입력	2009년 11월 24일 - 2009년 12월 11일	

3. 조사대상

- 육지로부터 8km이상 이격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 및 어가
 - 본 조사 실시 전 진행된 조사대상 명단 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대상을 확정하였으며, 결과로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233개 도서, 354개 어촌계, 23510 어가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실태조사 대상

구분	도서수	어촌계수	어가수	어촌계원수
경기	3	2	114	101
인천	25	28	2,641	2,298
경남	16	59	2,309	2,336
경북	1	11	724	654
전남	155	219	14,311	12,979
전북	19	17	1,908	1,632
충남	9	12	1,058	924
제주	5	6	445	499
총 계	233	354	23,510	21,423

4. 조사기관 및 역할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는 크게 ① 사전준비 및 기획·총괄 업무, ② 조사 수행 업무, ③ DB 구축 업무로 대별되며, 각 내용별로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업무를 분장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사전준비 및 기획·총괄
 - (주)피플리서치센터 : 조사수행
 - (주)씨엔닷컴 : DB 구축

[표 2-3] 실태조사의 조사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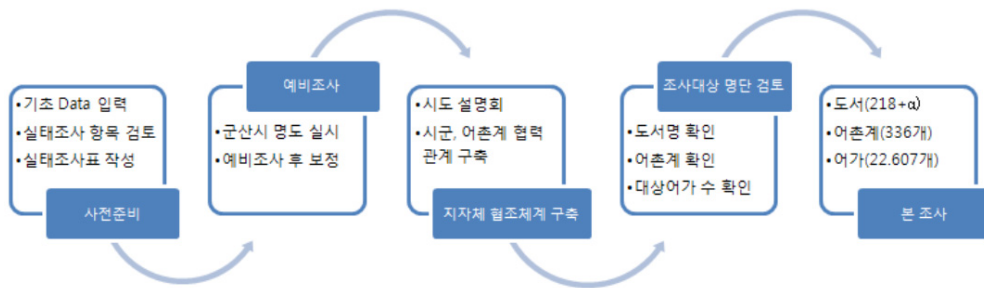
구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피플리서치센터	(주)씨엔닷컴
업무구분	사전준비 및 기획·총괄	조사수행(본 조사)	DB 입력
세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Data 수집 및 입력 (도서, 어촌계, 어가, 이격거리, 운항빈도 등) - 실태조사표 작성 - 예비조사 실시 - 업무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표 송부 및 취합 - 설문조사(전화조사) - 조사결과 취합 및 집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표 입력
조사기간	2009. 5. 1~12. 11	2009.10. 19~12. 11	2009. 11. 24~12. 11



5.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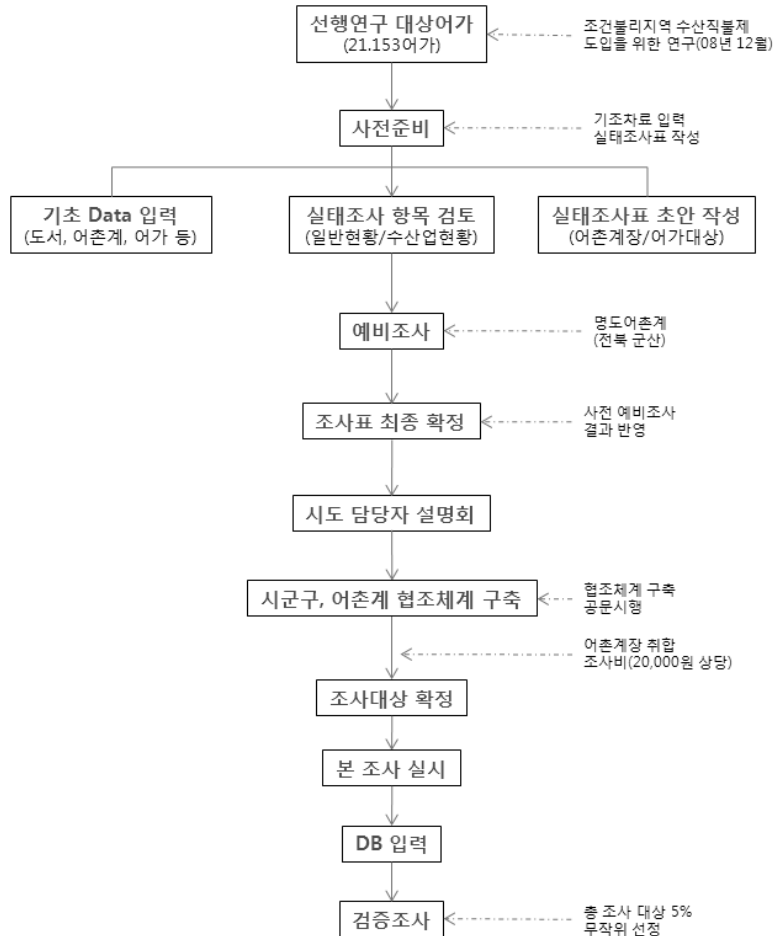
가. 추진절차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는 ① 사전준비, ② 예비조사, ③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④조사대상 명단 검토, ⑤ 본 조사, ⑥ DB구축 및 활용, ⑦ 검증조사 등 크게 6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피플리서치는 ① 사전준비, ② 예비조사, ③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④조사대상 명단 검토, ⑦ 검증조사, ⑤ 본 조사를 각각 수행하였고, ⑥ DB구축 및 활용은 (주)씨앤닷컴에서 수행하였음



[그림 2-1]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의 단계별 절차

나. 조사추진체계



[그림 2-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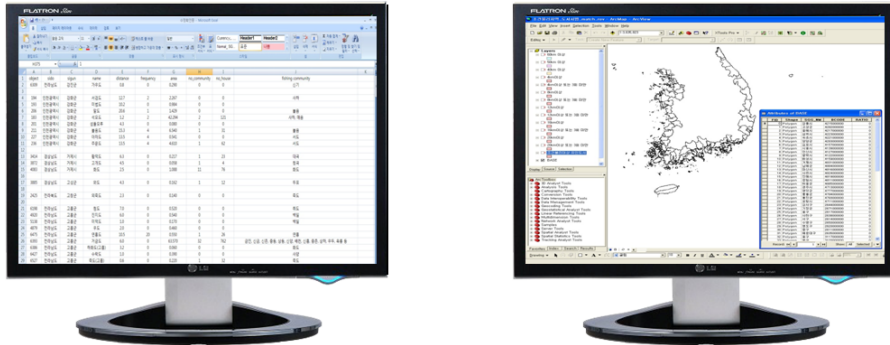
다. 추진방법

① 기초 Data 입력

- 사전준비 단계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던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또는 누락된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서백서(島嶼白書), 전국도서현황, 어촌계분류평정 등



을 활용하여 도서명-어촌계-어가정보 등의 정보를 엑셀(Excel) 2007과 ArcGIS 9.2에 입력함



[그림 2-3] 기초 Data 입력

② 설문조사표 검토

- 실태조사표 조사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농업사례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분야에 적합한 실태조사표 조사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음
 - 수산부문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항목을 검토하기 전에 농업부문 조건불리지역에서 구축하였던 정보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 발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항목을 정리해보면 [표 2-4]와 같이 9가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음

[표 2-4]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항목

구 분	조사항목	비 고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지원대상자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증명서류 : 임차농/사용차 농업인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② 토지 소재지	- 시·군 - 읍·면 - 법정리/행정리 - 지번	사업대상지역 관리(조건불리지역 선정 근거자료)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코드번호 부여하여 전산 DB 운용
③ 지목(공부)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m ² 당 20원 지급
④ 공부상 면적(m ²)		공부상 면적과 실경작 면적 간 오차 확인
⑤ 제외면적(m ²)		묘지, 창고, 유희지 등 미경작 면적 등을 파악
⑥ 실경작 면적(m ²)	- 논 - 밭 - 과수원 - 초지	보조금 산정의 기준 지급기준(m ² 당 밭과수원 40원, 초지 20원)에 지급대상 면적(m ²)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 절사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⑦ 성과 지표	- 이탈농지비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지역 과소화 예방 등 그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제시 ※ ('09 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⑧ 지역 자원	- 자연자원 - 문화자원	마을발전계획 활용 가능한 지역의 부존자원 파악
⑨ 지역 특산품	- 친환경인증농산물 - 지역특산품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항목으로 검토되었던 항목은 ① 신청인, ② 소재지, ③ 소속 어촌계, ④ 인근 육지와 직선거리(km), ⑤ 여객선 운항빈도, ⑥ 생필품 물가지표, ⑦ 수산업 현황, ⑧ 성과지표, ⑨ 지역 부존자원 등이었음
- ① 신청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허가어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료 한정하는 것으로 함
- ② 소재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선정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되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전산 DB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③ 소속 어촌계는 어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로써 당해 지역의 어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임
 - ④ 인근 육지와와의 거리는 연륙된 도서를 제외하고 이격거리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도서백서 등의 자료와 해당 지자체, 어촌계에 확인 절차를 통해 파악하는 항목임
 - ⑤ 여객선 운항빈도는 인근 육지와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운항빈도가 적어 생활상의 불리성을 파악하는 항목이며, 운항빈도는 여객선, 차도선, 도선 등 육지와 조건불리지역을 왕래하는 모든 여객수단을 포함함
 - ⑥ 생필품 물가지표는 기초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물품 즉, 쌀, 배추, 라면, 계란, 휘발유 등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조건불리지역의 불리성을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임
 - ⑦ 수산업 현황은 조건불리지역 내 어가들의 수산업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실제 어업의 종사여부 등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어업 종사기간, 어업종사형태, 어업경력, 어업형태(어선, 양식), 생산자 조직 참여, 수산물 판매금액,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함
 - ⑧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의 성과지표는 어가유지비율을 정량화하여 도출하는 것으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해당지역 과소화 예방 등 그 성과를 나타내는 항목임
 - ⑨ 지역 부존자원은 조건불리지역에 분포하는 역사, 자연,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임
-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실태조사표는 어촌계장용(Type A)과 어업인용(Type B)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조건불리지역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은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 어가에 대한 정보는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상어가의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어촌계장 대상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도서와 육지와의 직선거리, 여객선 1일 운항빈도, 생필품 표준가격, 어촌계 면허어장, 지난 1년 간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의 생산량, 지역 부존자원 등임

[표 2-5] 어촌계장용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검토 항목

조사항목		조사내용
일반현황	응답자 성명	- 실태조사의 연결고리로 DB 관리상 필요한 항목
	소속 어촌계명	
	주민번호/연락처	
	현 거주지 주소	
도서와 육지와의 직선거리		- 도서통계를 통해 기초자료가 확보되었으나 어촌계장을 통해 확인하는 항목
여객선 1일 운항빈도		- 여객정보를 통해 기초자료가 확보되었으나 어촌계장을 통해 확인하는 항목
생필품 표준가격		- 조건불리지역의 정주여건 불리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
어촌계 면허어장		- 어촌계 단위의 수산업적 현황과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지난 1년간 마을양식어장과 협동양식어장 면적 및 생산량		
지역 부존자원		- 향후 조건불리지역 지역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부존자원의 조사 항목

- 어업인(어가) 대상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어업종사 경력, 지난 1년간 어업종사기간, 수산물 판매금액, 어업종사 형태, 생산자 조직참여, 어선어업, 양식어업 현황 등임



[표 2-6] 어업인용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검토 항목

조사항목		조사내용
신청인	응답자 성명	- 조건불리지역 대상어가의 기초 입력 자료 - 향후 직불금 지급대상의 관리항목으로 활용 ※ 지원대상자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면허·허가(신고)어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함
	소속 어촌계명	
	주민번호/연락처	
	현 거주지 주소	
어업종사 경력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기간		- 60일 이상 조업기간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여부 판단하는 항목
가족 중 어업종사 인원		- 어가당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지난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		- 120만원 이상 어업수입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여부 판단하는 항목
지난 1년간 어업종사 형태		
생산자 조직참여		- 어촌계 소속 또는 어촌계 소속 여부가 아닌지에 따른 정책대상 여부 판단
어선어업	어선수	- 어촌계 소속되지 아니한 어선어업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
	소유형태	
	어선통수	
	출어일수	
	평균 승선인수	
양식어업	참여형태	- 어촌계 소속되지 아니한 양식어업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
	양식방법	
	양식면적	
	연간 생산량	

③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본격적인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에 앞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시행해 봄으로써 실태조사표의 난이도, 가독성, 조사의 용이성 등을 파악하여 수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예비조사 지역은 어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도서지역 전체가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음

- 예비조사 조사지역은 전북 군산시 명도로 총 34개 어가가 모여 있는 지역이며, 군산으로부터 27.2km 정도 이격된 도서어촌 지역임
-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대상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각 어가별로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태조사표 작성의 난이도, 용이성, 가독성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음
- 예비조사는 2009년 7월 31일 시행하였으며, 총 34개 어가 가운데 21개 어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후 대부분의 의견은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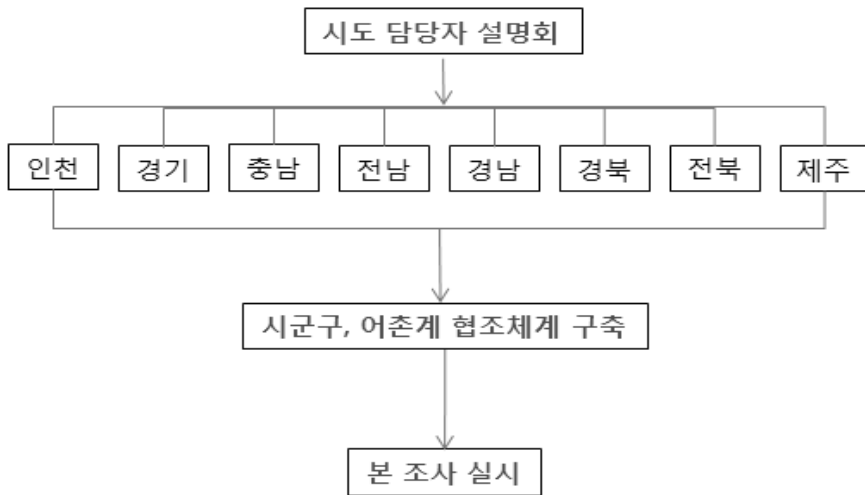
[표 2-7] 예비조사 추진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예비조사 선정기준		- 예비조사 지역의 선정은 비교적 어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도서지역 전체가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조사지역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명도리
	어촌계명	- 명도어촌계
	대상어가	- 총 34개 어가
	이격거리	- 27.2km
	수산업 현황	- 해조류 및 패류 양식
조사방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어가별로 실태조사표 작성 - 작성 후 난이도, 가독성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조사일자		- 2009년 7월 31일
조사완료		- 21개 어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태조사표에 대한 난이도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실태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가독성에 문제가 있는 부준은 수정하여 보완함



④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향후 행정조직(시도, 시군구, 읍면사무소, 어촌계)을 기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구상의 실태조사에서도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향후 추진과정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지자체 협조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시·도(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제주), 시·군·구, 어촌계가 상호 원활한 업무 전달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담당자를 만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취지와 목적 등 개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지자체, 어촌계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함



[그림 2-4]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⑤ 조사대상 명단 검토

- 조사대상 명단 검토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던 도서, 어촌계, 어가수에 대해 해당 지자체, 어촌계의 확인을 통해 조사대상자 명단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조사과정에서의 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함
- 조사대상 명단 확인작업은 지자체별로 대상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

- 문에 전남지역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지자체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명단을 토대로 지자체의 자료와 어촌계의 확인을 거쳐 대상지역의 도서, 어촌계명, 어가수를 파악하였음
 - 조사대상 명단 검토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육지와 이격거리 8km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이를 다시 확인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검토하였음
 - 해당 도서지역이 육지와 이격거리가 8km 이상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행정구역 단위의 개념인지 실제 생활상의 교류가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나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도 나타나 이를 수정하였음
 - 일부 도서지역들은 어촌계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명단 검토 과정을 통해 어촌계가 다수의 도서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였음



[표 2-8] 조건불리지역 대상 추가검토 지역 리스트

시도	시군구	도서명	여가수	비고	
경남	통영시	죽도	40	반영	
		수우도	24	반영	
		두미도	33	반영	
		이수도	45	미반영	
		내도	9	미반영	
		조도, 호도	40	미반영	
		노도	11	미반영	
전북	군산시	개야도	319	반영	
	부안군	거륜도	8	반영	
충남	보령시	장고도	85	반영	
		고대도	54	반영	
		원산도	361	반영	
		효자도	127	반영	
전남	여수시	수향도	1	미반영	
		부도	3	반영	
		소두라도	5	반영	
		화태도	138	미반영	
		대황간도	45	반영	
		서도	80	반영	
		초도	134	반영	
		소거문	8	반영	
		신안군	팔금도	48	반영
	영광군	대각시도	1	반영	
	진도군	주지도, 하조도, 상하죽도	-	미반영	
	완도군	장도			반영
		어룡도			미반영
		사후도			미반영
		고마도			미반영
		흑일도			미반영
		서화도			미반영
		양도			미반영
		백일도			미반영
		동화도			미반영
토도				미반영	
초완도				미반영	
넙도			미반영		
당사도			반영		

⑥ 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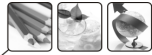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함
 - (주)피플리서치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어업인의 특성상 회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임
- 조사대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규모보다 다소 늘어난 233개 도서, 354개 어촌계, 23,510 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을 지자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조사대상 어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표 2-9] 본 조사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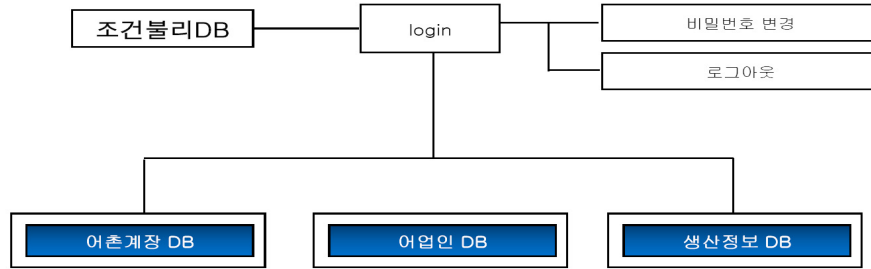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조사기간	- 2009년 10월 19일 ~ 12월 11일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이 실태조사표 송부 전 사전설명 및 협조 당부 - 실태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첨부하여 실태조사표 어촌계별로 송부 (해당 어촌계의 어가수 대비 10% 추가로 송부) - 실태조사표 작성 시 문제점 및 질의에 대해 응답
조사기관	- (주) 피플리서치센터
조사대상	- 233개 도서 / 354개 어촌계 / 23,510 어가

⑦ DB 구축 및 활용

- 실태조사는 전국 어촌계단위로 송부되고 회신받기 때문에 일괄적인 취합이 어려워 취합결과만 확인 후 바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DB 구축은 (주)씨앤닷컴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집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함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의 DB 구축이 이루어지면 행정기관, 연구자 등 관계자가 해당정보에 접속하여 어촌계장, 어업인 DB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



[그림 2-5] DB 입력 구조 및 개요

⑦ 검증조사

- 검증조사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실태조사 작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관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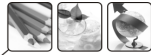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집계 결과

- 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어촌계장용(A type)과 어업인용(B type)으로 구분하였으며, 어촌계장의 경우 어촌계장용과 어업인용 각각 1부씩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어업인은 한 어가당 1부씩 작성하도록 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은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조사 대상보다 다소 증가한 233개 도서, 354개 어촌계, 23,510어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 의 응답율은 어촌계의 경우 100% 이루어졌으며, 어가의 경우는 73.5% 의 회수율을 나타냈음. 이 중 한 어가당 2인 이상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522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16,748개의 데이터를 DB화하였음

[표 2-10]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집계결과

지역 대분류	지역 중분류	지역 소분류	도서수	어촌계수	어가수	어촌계원수	집계결과		
							회신 어촌계수	회신 어가수	DB 입력 어가수
경남	통영시	산양읍	1	1	42	34	1	30	30
		한산면	7	26	995	905	26	744	741
		사랑면	3	14	756	768	14	367	361
		육지면	5	18	516	629	18	393	383
	소계	16	59	2,309	2,336	59	1,534	1,515	
경북	울릉군	북면	1	3	115	118	3	43	42
		서면		4	164	167	4	51	51
		울릉읍		4	445	369	4	7	7
	소계	1	11	724	654	11	101	100	
전북	군산시	옥도면	14	11	1,388	1,289	11	602	523
	부안군	위도면	5	6	520	343	6	382	363
	소계	19	17	1,908	1,632	17	984	886	
충남	보령시	오천면	8	11	994	887	11	913	869
	서천군	장항읍	1	1	64	37	1	45	44
	소계	9	12	1,058	924	12	958	9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2	1	75	75	1	67	67
	화성시	우정읍	1	1	39	26	1	23	23
	소계	3	2	114	101	2	90	90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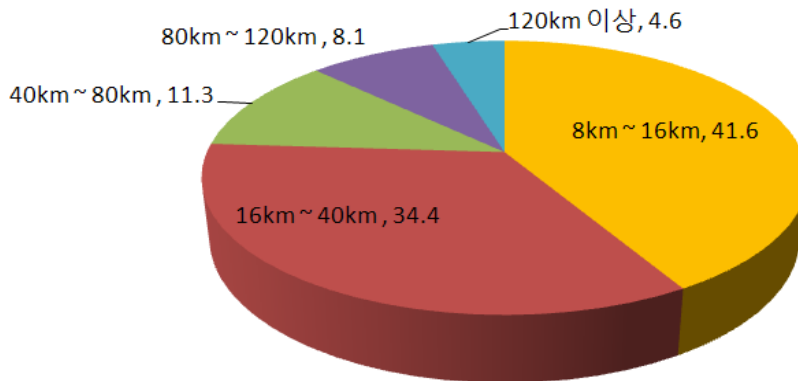
지역 대분류	지역 중분류	지역 소분류	도서수	어촌계수	어가수	어촌계원수	집계결과		
							회신 어촌계수	회신 어가수	DB 입력 어가수
제주	제주시	추자면	4	5	377	369	5	134	134
	서귀포시	대정읍	1	1	68	130	1	107	104
	소계		5	6	445	499	6	241	238
인천	강화군	-	4	3	113	113	3	205	205
	옹진군	-	19	21	2298	1973	21	1575	1500
	중구	-	2	4	230	212	4	169	167
	소계		25	28	2,641	2,298	28	1,949	1,872
전남	고흥군	-	2	2	184	184	2	72	59
	신안군	도초면	4	3	172	169	3	240	231
		비금면	3	3	188	186	3	958	954
		신의면	4	3	152	146	3	470	467
		안좌면	5	7	388	331	7	604	602
		암태면	4	5	245	234	5	181	179
		압해면	5	3	109	102	3	291	288
		자은면	1	2	109	108	2	155	155
		장산면	2	4	251	238	4	111	109
		증도면	4	1	55	56	1	56	56
		임자면	1	1	58	56	1	62	41
		팔금면	1	1	48	48	1	145	145
		하의면	9	4	214	209	4	619	615
	흑산면	10	19	1,384	1,384	19	594	579	
	여수시	남면	9	15	776	837	15	869	835
		삼산면	7	11	704	624	11	377	346
		화정면	3	3	231	231	3	147	147
	영광군	낙월면	7	4	103	248	4	317	263
	완도군	금당면	3	10	597	226	10	332	331
		금일읍	10	23	1,827	1,481	23	738	720
		노화읍	12	18	1,189	1,189	18	745	719
		보길면	2	12	814	814	12	506	502
		생일면	2	6	491	276	6	274	274
소안면		4	15	1,003	583	15	589	586	
신지면		1	1	1	1	1	13	13	
진도군	창산면	5	19	1,224	1,224	19	792	784	
	의신면	2	1	10	10	1	11	11	
	조도면	33	23	1,784	1,784	23	1,145	1,123	
소계		155	219	14,311	12,979	219	11,413	11,134	
총계			233	354	23,510	21,423	354	17,270	16,748

2. 실태조사 내용

- 회수된 실태조사표를 토대로 육지와 도서와의 이격거리, 1일 여객선 운항 빈도, 어업 종사기간, 생산자조직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육지와의 이격거리

- 어촌계가 속한 도서와 육지와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 어촌계의 41.6%가 8km~16km 떨어져 있다고 응답하였음. 16km~40km 떨어져 있다고 응답한 어촌계는 34.4%로 나타나 응답 어촌계가 속한 도서의 76%가 육지와의 이격거리가 40km 미만으로 나타났음
- 이 외에도 40km~80km인 어촌계는 11.3%, 80km~120km인 어촌계는 8.1%로 나타났으며,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어촌계도 4.6%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6] 육지와의 이격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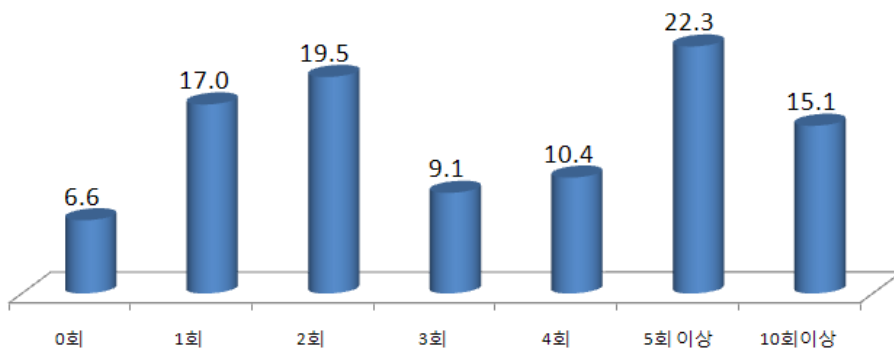
나. 1일 여객선 운항 빈도

- 다음은 어촌계가 속해있는 도서의 1일 여객선(철부선, 쾌속선, 기타 포함) 운항 빈도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하루에 여객선이 한번도 운항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촌계가 6.6%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한번 운항된다는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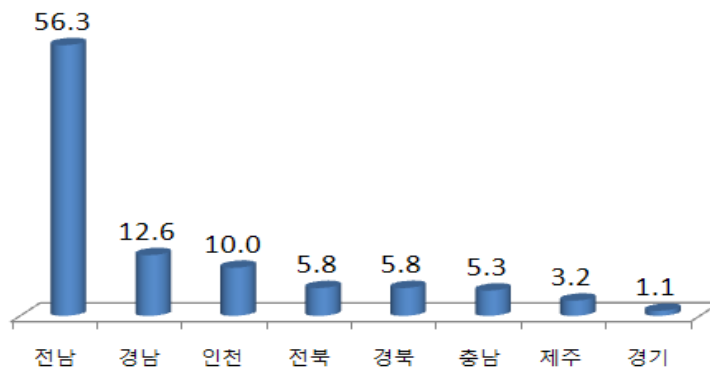
계는 17%로 나타나 도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음

- 여객선이 1일 2회 운항된다고 응답한 어촌계는 19.5%, 1일 3회 운항된다고 응답한 어촌계는 9.1%, 1일 4회 운항되는 어촌계는 10.4%에 불과했음
- 그러나 1일 5회 이상 여객선이 운항되는 어촌계는 22.3%, 10회 이상 운항되는 어촌계도 15.1%로 조건불리지역 대상 도서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1일 여객선 운항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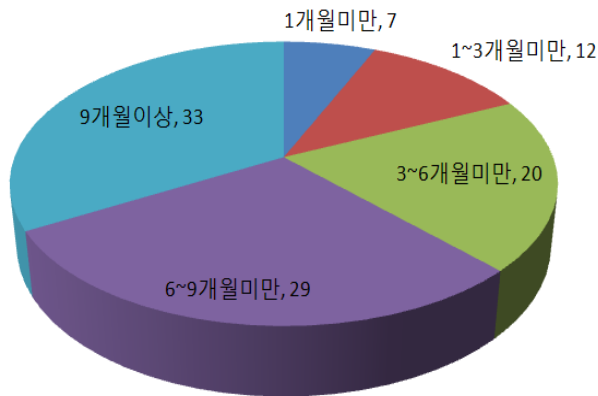
- 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운항된다고 응답한 어촌계들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전남이 5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도서가 많은 전남 지역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8] 여객선 1일 3회 이하 운항 어촌계의 지역별 비중

다. 연중 어업 종사기간

- 다음은 지난 1년간(2008.1.1~12.31) 어업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중 9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9개월 가량 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29%, 3~6개월 가량 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20%로 나타나 응답자의 82%가 연중 3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어업종사기간이 1~3개월 미만인 경우는 12%, 1개월 미만인 경우는 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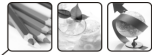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그림 2-9] 연중 어업 종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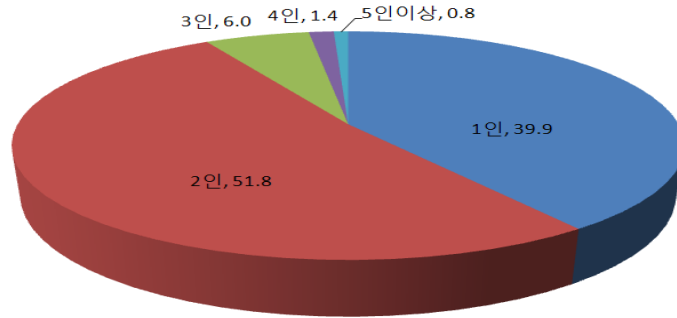
- 그리고 맨손어업 종사자 중 연중 어업종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응답자의 11.5%가 연중 조업일수가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라. 어업종사 가구원 수

- 다음은 가족 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인 가족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견이 51.8%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는 39.9%로 나타났으며, 3인 6%, 4인 1.4%, 5인 이상은 0.8%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음
- 1명 혹은 2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91.7%로 나타나, 조건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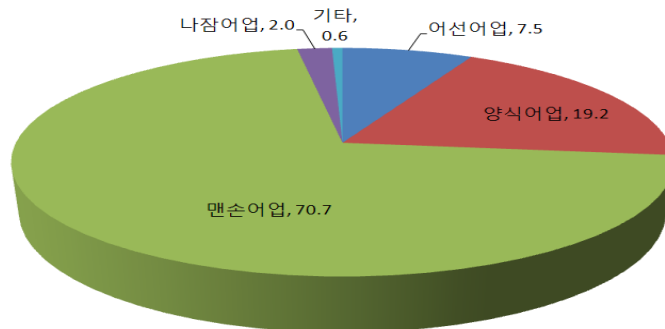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가구원 수는 대부분 2명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0] 어업종사 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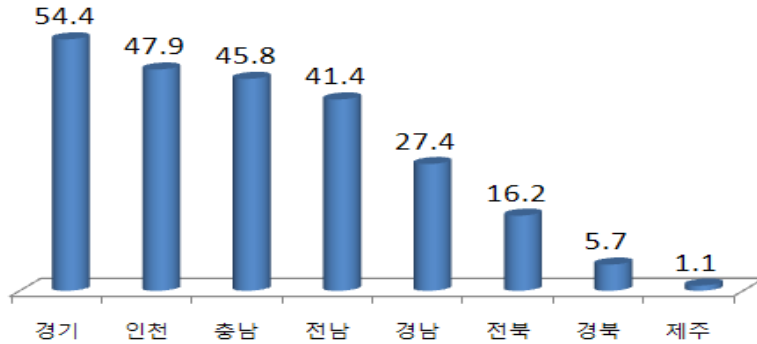
마. 종사 업종

- 다음은 지난 1년간(2008. 1. 1~2008. 12. 31) 주로 종사한 어업에 대한 질문으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식어업 19.2%, 어선어업 7.5%, 나잠어업 2.0%, 기타 0.6%로 나타나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대부분은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지역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전체 실태조사자 대비 맨손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60.9%로 절반이상이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종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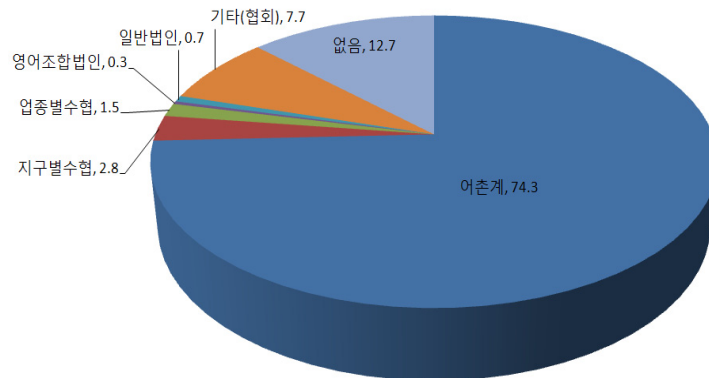
- 다음은 지역별 응답자 중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응답자의 54.4%가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인천이 47.9%로 나타났으며, 충남이 45.8%, 전남이 41.4%로 나타나 주로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의 맨손어업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2] 지역별 맨손어업자 비중

바. 참여 조직

- 다음은 어업활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질문으로 어촌계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촌계의 역할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느 생산자 조직에도 속해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2.7%로 나타났음



[그림 2-13] 참여 조직



사. 실태조사 내용 요약

-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력된 DB를 통해 실태조사 집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하루에 여객선(철부선, 쾌속선, 기타 포함)이 3회 이하 운항되는 어촌계는 전체의 42.2%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 지역의 도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연중 조업 기간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2%가 3개월 이상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맨손어업자의 11.5%는 연중 1개월 이하로 조업한다고 응답하였음
 - 셋째,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 수는 1인 혹은 2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7%로 나타나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대부분은 2인 이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응답자 중 맨손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70%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54.4%가 맨손어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정책대상에 맨손어업자 포함여부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제3절 실태조사 검증

-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실제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 방식을 택하고 있음. 연구과정 및 실태조사 과정 중 도출된 도서 비(非)거주 어업인 혹은 도서 거주 비(非)어업인이 실태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어촌계들 중 무작위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어가를 방문하는 검증조사를 실시함
- 검증을 위한 조사항목
 - 어촌계장용 : 여객선 운항 빈도, 생필품 판매 여부 등
 - 어업인용 : 도서 거주여부, 어업 종사 여부, 연간 조업일수 등
- 대상지역의 선정 및 방법

- 검증조사를 위한 대상지역은 회수된 실태조사표 중 랜덤추출 방식을 택함
-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 유부도와 전남 신안군 병풍도 2개 지역이 선정됨
- 검증 방법은 실태조사 참여 어가를 방문하여 검증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어가의 10~15%를 방문하는 것으로 함

1. 충남 서천군 유부도

가. 검증 지역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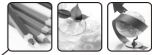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유부도는 갯벌이 발달한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여객선이 없어 주민들은 자기 어선으로 이동하며 생활하고 있음
- 생필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도서에 물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는 실정임

[표 2-11] 충남 서천군 유부도 검증조사 개요

구분	현황	비고
어촌계명	송림어촌계	-
어촌계장명	김귀태	어촌계장 도서 비거주
어가수	44가구	실제 35가구
여객선 운항 빈도	없음	선착장 없음
생필품 판매	없음	-

나. 검증 조사 결과

- 유부도의 어촌계장은 도서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마을 반장의 도움을 받아 검증 작업 실시한 결과, 실태조사에는 총 44개 가구가 참여하였으나, 검증조사 결과 실제 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검증을 위해 5개 가구를 방문하였으며, 4가구는 실제 도서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개 가구는 도서에 거주하지 않고 육지와 도서를 오가며 생활하며 어업활동만 도서에서 하는 것으로 드러남



2. 전남 신안군 병풍도

가. 검증 지역의 개요

- 병풍도는 대기섬도, 소기섬도, 소악도와 연도되어 4개 도서가 하나의 어촌계로 운영되고 있음
- 병풍도를 가기 위해서는 신안군 증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철부선을 타고 30여분 가량 들어가야 함
-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55가구로 김 양식을 주업으로 하며 김 양식장 및 김 가공공장에 고용된 임금종사자 50여명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
- 연중 낙지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 종사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음

[표 2-12] 전남 신안군 병풍도 검증조사 개요

구분	현황	비고
어촌계명	병풍어촌계	-
어촌계장명	오영춘	-
어가 수	55가구	농업 비중 높음
여객선 운항 빈도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부선을 타고 증도로 이동 후 증도에서 육지로 이동	1시간 간격 운행
생필품 판매	없음	-

나. 검증 조사 결과

- 전체 55개 어가 중 7개 가구를 방문하여 검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증 방문을 한 7개 어가 모두 실제 도서에 거주하며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김 양식과 김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어가의 경우 청장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사의 어려움, 어업인들의 질문과 의문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으며,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가. 조사대상 정보 변동

-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도서와 각 소속 어촌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어촌계분류평정을 기초로 하고, 해당 지자체, 어촌계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확인하였음
 - 어촌계명 변동, 어촌계장 변동 및 부재
 - 어촌계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 어촌계의 통폐합 또는 분리
-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부정확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였음
- 하지만, 조업시기에 따른 조사 불응, 단순 거부 등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서 조사대상의 명확화가 추후 더 검토되어야 함

나. 대상어가의 개념

- 실태조사의 대상은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이지만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어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음
 - 낚시, 맨손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 맨손어업이지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가
 - 육지와 도서를 오가며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
 - 염산업에 종사하는 어가



-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대상어가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상어가의 개념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어업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염산업의 경우 최근 관련 법 개정예 따라 어업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목적은 수산업 및 어촌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원적 기능의 유지·확산인 만큼 육지와 도서를 오가며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도 포함하도록 하였음
- 또한 맨손어업과 같은 신고어업의 경우 비(非)어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어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일부 도서의 경우 맨손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들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맨손어가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다. 대상어가 판정 여부

-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상 어가로 판정이 필요한 도서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소멸 보상을 받아 면허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태풍, 해양오염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
 - 어촌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
 - 어촌계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어가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는 불법어가와 실제로 어업활동을 중단한 어가의 경우 대상 어업인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비(非) 어촌계원의 대상어가들을 판정하기 위해 개인별로 신청한 어가들에 대해 대상어가임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 운영 및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면허 및 허가증, 위판실적, 어구 구입 영수증 등)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Chapter

03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제1절 개요

제2절 자료처리 및 DB 구축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제1절 개요

1. DB 구축의 목적

- 수산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
- 조건불리지역의 어가 및 어촌공동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활용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
- 어업경영체등록제 등록항목 등을 반영한 조사세부계획을 수립함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활용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2. 대상 및 규모

[표 3-1] 대상 및 규모

시도	시군구	어촌계	어가	비고
인천	종구	4	151	
	강화군	3	203	
	옹진군	21	1,447	
경기	안산시 단원구	1	64	
	화성시	1	23	
충남	보령시	11	865	
	서천군	1	44	
전북	군산시	11	515	
	부안군	6	338	
전남	여수시	29	1,303	
	고흥군	2	58	
	영광군	4	251	
	완도군	109	3,886	
	진도군	30	1,122	
	신안군	56	4,117	
경북	울릉군	11	96	
경남	통영시	59	1,482	
제주	제주시	5	127	
	서귀포시	1	90	
합계		365	16,182	



3. DB 구축범위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통계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DB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함
 - 어가정보 : 어업인·경영주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종사유형(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등), 소득수준 등
 - 어촌계 정보 : 어촌계(어촌계명,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등), 계원수, 입지유형 등
 - 생산정보 : 생산품목, 경영형태 및 규모,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등
- 조사된 실태조사 정보는 정제를 통해 색인화 및 코드화 작업 수행
 - 입력 후 검색이 빠르고 정보의 변환이 용이한 색인화 된 DB 구축
-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의 DB화 자료는 수산분야 다른 DB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4. DB 구축방법

-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되는 PC 입력방법을 적용함

[표 3-2] DB 구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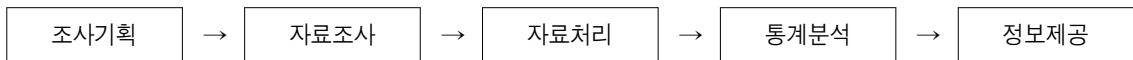
구분	진행내용
자료의 수집계획 수립	- 원시자료 수집절차, 방법, 준비사항 등
자료분석	- 자료의 내용, 범위, 형태, 크기 파악 - 자료 분류 - 코드화 여부 검토
DB 구축	- Data Base, Table - Data Base 구축(자료입력프로그램)
DB 구축 및 자료제공	

제2절 자료처리 및 DB구축

1. 자료처리

가. 자료처리의 개요

-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 수집은 직접조사, 기존자료 조사 등이 있으며, 이를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나눌 수 있음.
- 조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보제공이 되는 단계까지의 과정은 [그림 3-1]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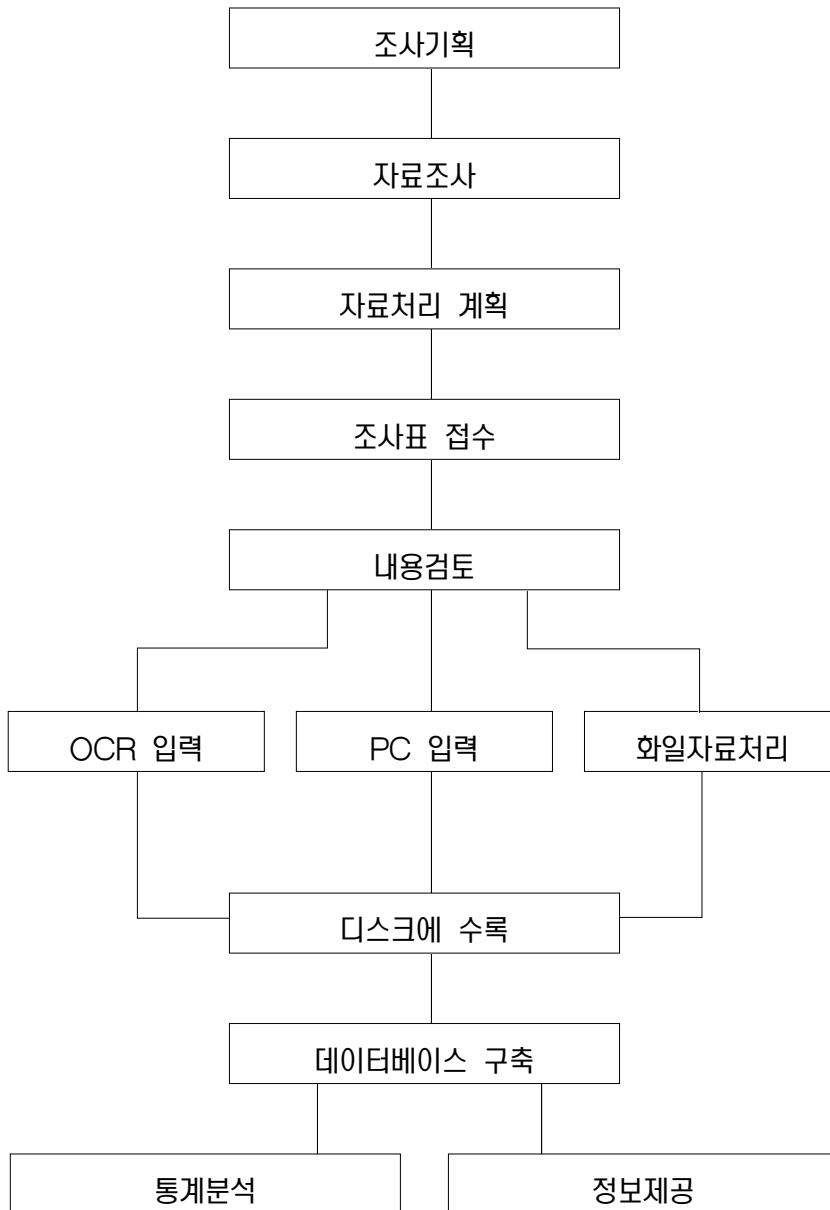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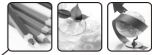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그림 3-1] 자료처리 개요

- 통계조사의 기획을 수립하여 실지조사가 완료되면 기입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결과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을 자료처리라고 함
 - 이 과정에는 조사표 접수 및 검토, 조사표 입력, 입력자료 오류검사 및 수정, 통계분석까지 일련의 업무로 연결됨
 - 자료처리는 통계조사 결과의 신속·정확성을 기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조사기획부터 통계분석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나. 단계별 자료처리

- 자료처리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처리 계획수립에서부터 통계분석까지의 단계가 해당됨



[그림 3-2] 자료처리 흐름도

① 자료처리 계획수립

-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조사표에 의한 자료조사 및 기존 자료파일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자료조사가 끝나면 해당 자료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함
 - i) 입력요원이 조사표의 내용을 PC에 입력하는 방법
 - ii) OCR기계로 조사표 자료의 내용을 읽는 방법
 - iii) 파일로 접수된 자료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
- 자료조사기간, 조사표 내용검토기간, 자료입력기간, 통계분석자료 출력 기간 등 각 작업별 세부 일정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② 조사표 접수

- 조사표 접수는 조사기획 부서에서 접수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가 이루어져야 함

③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표 내용검토는 조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조사기획부서에서는 실사부서와 자료처리 부서 등의 관련자와 협의하여 비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함
 - i) 조사상 부실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질적 수준 향상
 - ii) 내용검토 결과를 향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 문제발생소지를 사전예방
 - iii) 조사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결과분석이 좋은 샘플을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
 - iv) 실사기관이나 조사담당자의 조사능력 및 정확도 측정이 가능
- 내용검토 시기는 조사표를 입력하기 전에 수행하는 사전 내용점검과 입력한 후에 컴퓨터로 하는 사후 점검이 있는데 이 때 범할 수 있는 착오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음

- i) 조사는 정확하나 이기가 잘못된 경우
- ii) 수량, 금액 등의 단위가 잘못 기입된 경우
- iii) 조사한 내용을 해당항목이 아닌 곳에 기입하여 해당항목이 누락된 경우

④ 조사표 입력

-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요원이 PC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기록하는 과정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자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이 방법을 선택함. 이 경우 입력요원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입력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후점검이 필요함

다. 파일로 자료처리

- 파일로 접수된 조사내용을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으로 입력과정에서 오류체크 등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자료를 기록할 수 있음

라. 통계분석

- 자료입력이 끝나면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계분석 자료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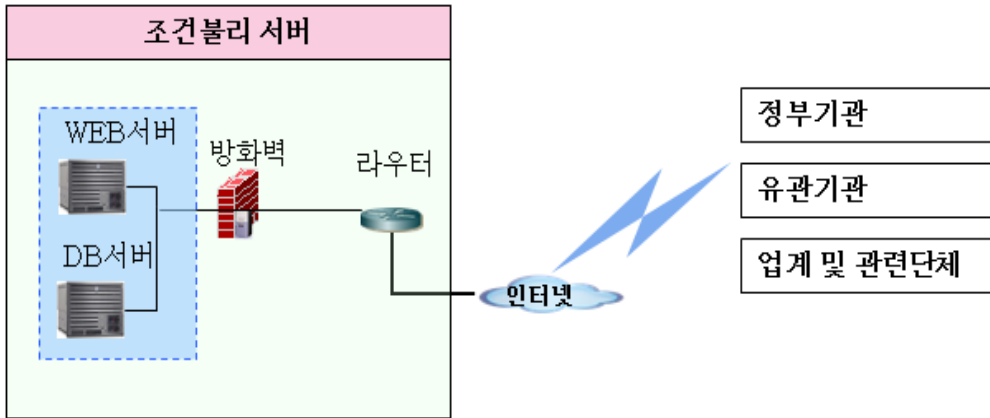
2. DB 구축

가. DB 구축 방향

- 최근 인터넷은 사용자와 서비스 업체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많은 곳에서 기존의 온라인서비스 개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DB를 구

축하고자 함

-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3-3]과 같음



[그림 3-3] 정보제공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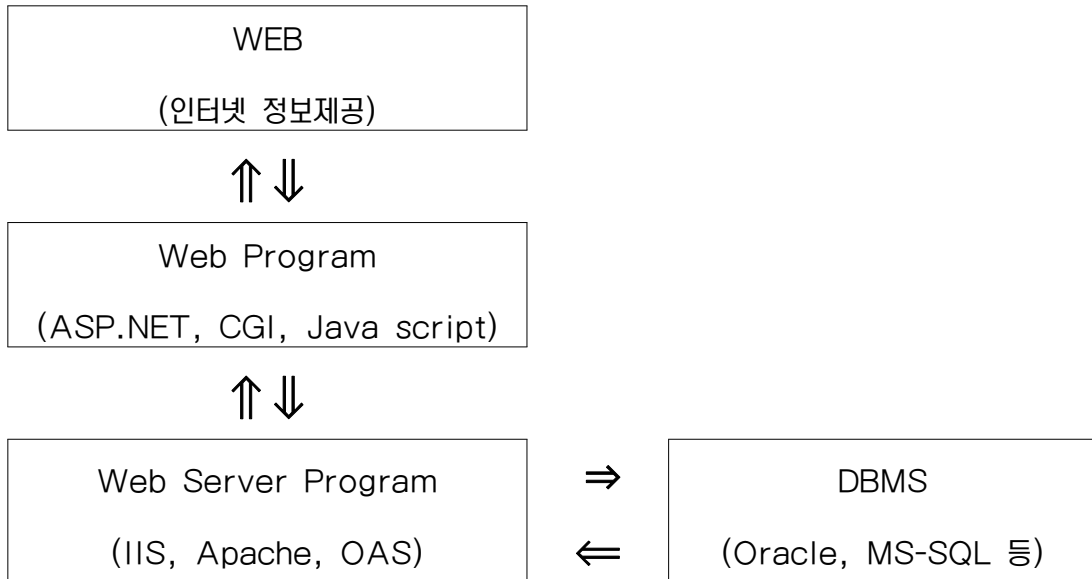
나. DB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를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표 3-3]과 같으며, 이는 인터넷의 Web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임

[표 3-3]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분류 및 적용

구분	종류	특성	비고
DBMS	Oracle	UNIX 및 NT 시스템	적용대상
	MS-SQL Server	NT 시스템	
Web Server	OAS	DBMS가 Oracle 인 경우에	
	Apache	OS가 UNIX인 경우	
	IIS	OS가 NT인 경우	적용대상
Web Program	ASP.NET	Web Server가 IIS인 경우	적용대상
	CGI	Web Server가 Apache, OAS	
개발언어	C#		적용대상

- [그림 3-4]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DBMS와 Web Server 그리고 Web Program과의 상호연관성 및 제어,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4] 소프트웨어의 interface 관계

① DBMS

- DBMS는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그 중복성을 통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자료구조를 제어하고, 여러 계층의 데이터 독립성을 구현시키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요구의 응답을 위해 데이터를 조직, 조작,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임

② WEB SERVER 프로그램

- Web Server 프로그램은 인터넷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DBMS와 Web Program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IIS, Apache, OAS 등이 주로 사용됨

③ WEB 프로그램

- Web 프로그램은 Web Serve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Web상에서 자료를

보여 주기만 하는 HTML에 비하여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Web Server에 전달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를 인터넷의 Web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표준으로 HTML 코드에 포함되어 기능을 수행하며, ASP.NET, CGI 등이 있음

④ 개발언어

- 개발언어는 CGI를 개발하는 언어로 Visual Basic, C/ C++ 등이 있음. 모든 프로그램이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며, 현재는 닷넷 환경의 C#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다. DB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요구조건

- DB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안정성과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환경을 구축함. 이를 위해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통신 회선을 확보하여야 함

① DB Server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DB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방대한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보함
- 많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므로 장시간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없도록 항상 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백업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② Web Server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한 화면구성자료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서비스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의 작업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DB 보완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함
-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하므로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시스템을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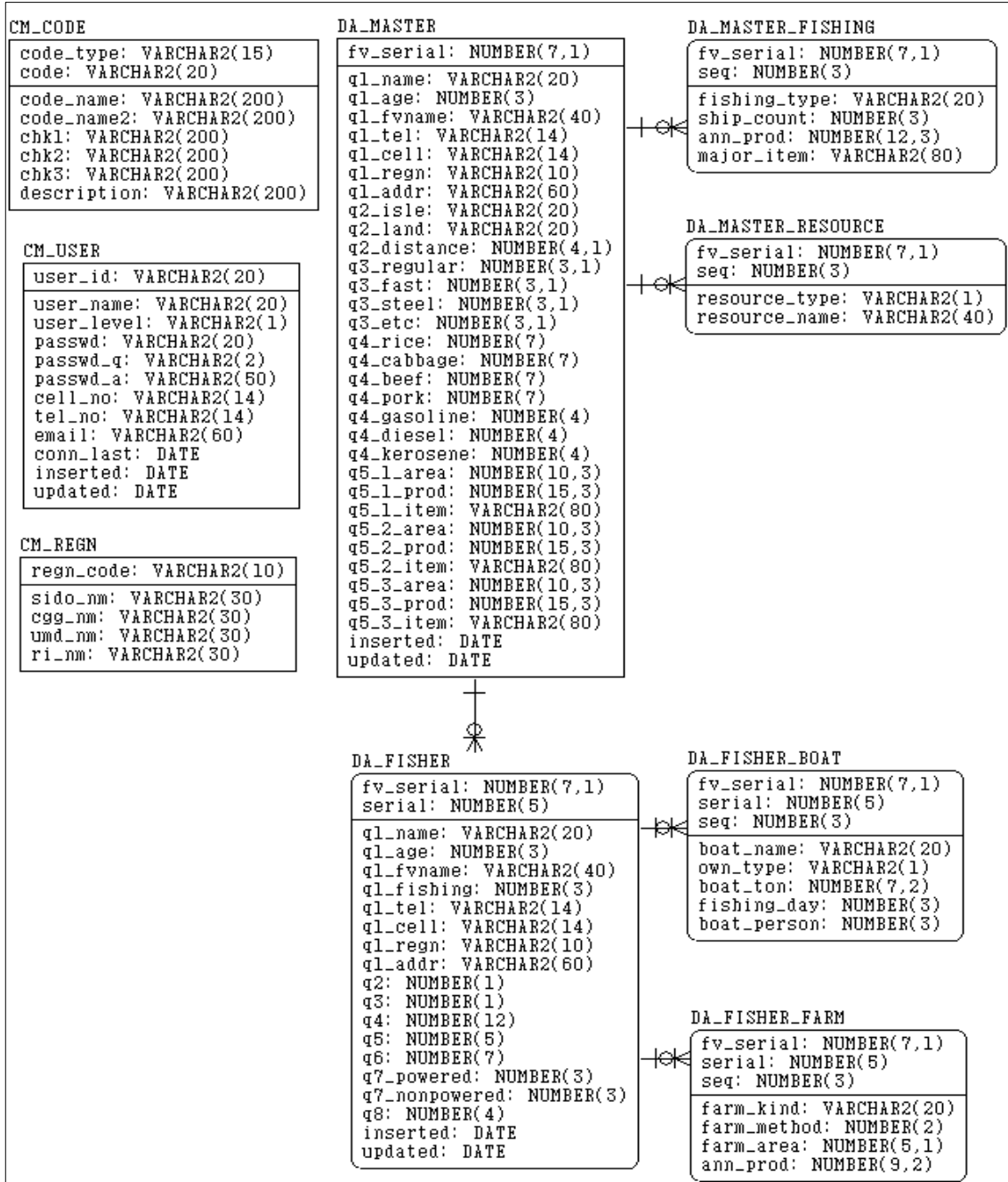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1. DB의 구분

가. 논리 ERD

-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로 개체관계도라고 지칭함
 - ERD는 말로서 되어있는 요구분석사항을 그림으로 그려내어 그 관계를 도출하는 것으로 하향식 계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임
- 정보자원을 전반적으로 계획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유용한 도구로 ERD는 개발되고 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 모델로 분해될 수도 있음
- 엔터티란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에 관해 무언가 실제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엔터티의 형태는 어촌계, 어업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나. 물리 ERD



[그림 3-6] 물리 ERD



다. 테이블 목록

[표 3-4] 테이블 목록

번호	테이블명	엔티티명	정의	비고
1	DA_MASTER	조건불리_어촌계장	어촌계장 정보를 저장하는 마스터 테이블	
2	DA_MASTER_FISHING	조건불리_어촌계장_어선어업	어촌계의 어선어업 내역 저장	
3	DA_MASTER_RESOURCE	조건불리_어촌계장_지역자원	어촌계의 지역자원 내역 저장	
4	DA_FISHER	조건불리_어업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정보를 저장하는 디테일 테이블	
5	DA_FISHER_BOAT	조건불리_어업인_동력선	어업인이 소유한 동력선의 내역 저장	
6	DA_FISHER_FARM	조건불리_어업인_양식	어업인이 소유한 양식장 내역 저장	
7	CM_USER	사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 관리	
8	CM_CODE	공통코드	공통코드를 저장	
9	CM_REGN	지역코드	행정안전부 관리 전국 지역코드 정의	

라. 테이블 정의서

① 조건불리 어촌계장

[표 3-5] 조건불리_어촌계장

엔티티 명칭	조건불리_어촌계장_어선어업		엔티티 ID	DA_MASTER_FISHING		
엔티티 정의	어촌계의 어선어업 내역을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fv_serial	어촌계일련번호	PK FK	NUMBER(7,1)	No	
2	seq	일련번호	PK	NUMBER(3)	No	
3	fishing_type	구분		VARCHAR2(20)	Yes	
4	ship_count	척수		NUMBER(3)	Yes	
5	ann_prod	연간생산량		NUMBER(10,3)	Yes	
6	major_item	주요품목		VARCHAR2(80)	Yes	

② 조건불리 어촌계장 어선어업

[표 3-6] 조건불리_어촌계장_어선어업

엔터티 명칭	조건불리_어촌계장_어선어업			엔터티 ID	DA_MASTER_FISHING	
엔터티 정의	어촌계의 어선어업 내역을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fv_serial	어촌계일련번호	PK FK	NUMBER(7,1)	No	
2	seq	일련번호	PK	NUMBER(3)	No	
3	fishing_type	구분		VARCHAR2(20)	Yes	
4	ship_count	척수		NUMBER(3)	Yes	
5	ann_prod	연간생산량		NUMBER(10,3)	Yes	
6	major_item	주요품목		VARCHAR2(80)	Yes	

③ 조건불리 어촌계장 지역자원

[표 3-7] 조건불리_어촌계장_지역자원

엔터티 명칭	조건불리_어촌계장_지역자원			엔터티 ID	DA_MASTER_RESOURCE	
엔터티 정의	어촌계의 지역자원 내역을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fv_serial	어촌계일련번호	PK FK	NUMBER(7,1)	No	
2	seq	일련번호	PK	NUMBER(3)	No	
3	resource_type	자원구분		VARCHAR2(1)	Yes	자원구분(1:수산특산품, 2:관광자원, 3:축제)
4	resource_name	자원명		VARCHAR2(40)	Yes	

⑤ 조건불리 어업인 동력선

[표 3-9] 조건불리_어업인_동력선

엔터티 명칭	조건불리_어업인_동력선			엔터티 ID	DA_FISHER_BOAT	
엔터티 정의	어업인이 소유한 동력선의 내역을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fv_serial	어촌계일련번호	PK FK	NUMBER(7,1)	No	
2	serial	일련번호	PK FK	NUMBER(5)	No	
3	boat_name	동력선명		VARCHAR2(20)	Yes	
4	own_type	소유형태		VARCHAR2(1)	Yes	소유형태 1:자가 2:임차
5	boat_ton	어선톤수		NUMBER(7,2)	Yes	
6	fishing_day	출어일수		NUMBER(3)	Yes	
7	boat_person	평균승선인원		NUMBER(3)	Yes	

⑥ 조건불리 어업인 양식

[표 3-10] 조건불리_어업인_양식

엔터티 명칭	조건불리_어업인_양식			엔터티 ID	DA_FISHER_FARM	
엔터티 정의	어업인이 소유한 양식장 내역을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fv_serial	어촌계일련번호	PK FK	NUMBER(7,1)	No	
2	serial	일련번호	PK FK	NUMBER(5)	No	
3	farm_kind	양식품종		VARCHAR2(20)	Yes	
4	farm_method	양식방법		NUMBER(2)	Yes	양식방법(공통코드)
5	farm_area	양식면적		NUMBER(5,1)	Yes	
6	ann_prod	연간생산량		NUMBER(9,2)	Yes	



⑦ 사용자

[표 3-11] 사용자

엔터티 명칭	사용자			엔터티 ID	CM_USER	
엔터티 정의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관리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user_id	사용자아이디	PK	VARCHAR2(20)	No	사용자아이디
2	user_name	성명		VARCHAR2(20)	No	성명
3	user_level	레벨		VARCHAR2(1)	No	레벨 (0:미승인, 1:일반, 8:업무담당자, 9:관리자)
4	passwd	비밀번호		VARCHAR2(20)	No	비밀번호
5	passwd_q	비밀번호질문		VARCHAR2(2)	Yes	비밀번호질문
6	passwd_a	비밀번호답변		VARCHAR2(50)	Yes	비밀번호답변
7	cell_no	휴대폰		VARCHAR2(14)	Yes	휴대폰
8	tel_no	전화번호		VARCHAR2(14)	Yes	전화번호
9	email	전자우편		VARCHAR2(60)	Yes	전자우편
10	conn_last	최종접속일		DATE	Yes	최종접속일
11	inserted	입력일자		DATE	Yes	입력일자
12	updated	수정일자		DATE	Yes	수정일자

⑧ 공통코드

[표 3-12] 공통코드

엔터티 명칭	공통코드			엔터티 ID	CM_CODE	
엔터티 정의	공통코드를 저장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code_type	코드분류	PK	VARCHAR2(15)	No	코드의 대분류
2	code	코드	PK	VARCHAR2(20)	Yes	코드 값
3	code_name	코드명		VARCHAR2(200)	Yes	코드값에 대한 코드명
4	code_name2	코드명2		VARCHAR2(200)	Yes	코드명을 보조하는 추가적인 이름
5	chk1	체크정보1		VARCHAR2(200)	Yes	코드에 대한 부가정보 표시
6	chk2	체크정보2		VARCHAR2(200)	Yes	코드에 대한 부가정보 표시
7	chk3	체크정보3		VARCHAR2(200)	Yes	코드에 대한 부가정보 표시
8	description	코드설명		VARCHAR2(200)	Yes	코드설명

⑨ 지역코드

[표 3-13] 지역코드

엔터티 명칭	지역코드			엔터티 ID	CML_REGN	
엔터티 정의	행정안전부 관리 전국 지역코드를 정의한다					
순서	컬럼명	컬럼명 한글	키구분	데이터형(길이)	널허용	비고
1	regn_code	지역코드	PK	VARCHAR2(10)	No	지역코드
2	sido_nm	시도명		VARCHAR2(30)	Yes	시도명
3	cgg_nm	시군구명		VARCHAR2(30)	Yes	시군구명
4	umd_nm	읍면동명		VARCHAR2(30)	Yes	읍면동명
5	ri_nm	리명		VARCHAR2(30)	Yes	리명

2. DB의 활용

- 최신 정보, 좋은 정보, 사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홍보력 등이 활용 촉진의 근간이 됨
 - 사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은 시스템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은 접속이 잦은 곳에서 노출 강화
 - 최신 정보와 좋은 정보는 조건불리지역통계의 생성과 활용과 직접 관계 되어 전문적인 인력과 관리체제로 가능함
- 조건불리통계 DB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들의 Web 접근정보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에 따라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생성과 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자료의 새로운 생성과 메뉴 재구성을 통한 GUI를 최적화 함
- 정책적 활용사례 제공, 학습자료 제공과 홍보(논문공모 등) 그리고 주제의 검색자료 제공 등을 운영 관리함
- 전문가, 민간부문 조건불리통계 관련 정보 검색 등을 통한 지속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

Chapter

0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안) 및 시행지침(안)

제1절 세부시행방안(안)

제2절 시행지침(안)

제3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

제1절 세부시행방안(안)

- 2008년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기준, 이번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층 검토한 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준(안)을 제시해 보면 [표 4-1]과 같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본(안)과 고려 사항을 비교란에 적시함

[표 4-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본(안)

구 분	기 본(안)	비 고
조건불리 지역 선정기준	·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	·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다음 조건 포함 여부 - 정기여객선 운항빈도 1일 3회 미만 도서 - 정기여객선 운항하지 않는 도서
지원대상	·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 -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 나목 및 동시행령 제3조 2항 1호 및 2호에 의거	·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어업인(고용인 제외) ·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둠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 (20~31만 원)	·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자료를 활용 · 3년 평균 어업소득 차액의 일부(1/3-1/2)지원
지급내용	· 생산자 직접소득 + 마을사업 지원	· 마을사업지원의 경우 마을협약 체결
지급방법	· 어가 및 어촌계	· 어가 : 개인별 거래 구좌 · 어촌계 : 어촌계 거래 구좌

1.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이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어업과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의함
- 따라서 이러한 정의개념에 적합한 수산부문에 있어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⁷⁾으로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육지와와의 이

7)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2008년도에 수행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참조 바람



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⁸⁾어촌'을 기본기준으로 설정함

- 그리고 추가 고려사항은 실태조사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으로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미만 일지라도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거나 또는 1일 3회 미만 운항되는 도서의 경우 어업활동 및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건불리지역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4-2]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른 도서 및 어촌계 수(추정)

구 분	도서 수	어촌계 수	어가 수
(1)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	248	366	23,510
(2)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정기 여객선 운항되지 않는 도서	102	53	-
(3)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미만 도서 중 1일 3회 미만 운항되는 도서	65	21	-
(1) + (2)	350	419	
(1) + (2)	313	387	

-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의 기본(안)인 육지와와의 이격거리 8km 이상의 도서에 해당하는 도서 수와 해당 어촌계 수는 각각 248개 도서, 366개 어촌계로 추정되었음
- 추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8km 미만 도서 중에서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수와 어촌계 수는 각각 102개 도서, 53개 어촌계로 추정됨
- 아울러 8km 미만 도서 중에서 정기 여객선이 1일 3회 미만 운항되는 도서 수와 어촌계 수는 각각 65개 도서, 21개 어촌계로 추정됨

8)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 중 육지와 연륙 및 연도되지 아니한 섬

2. 지급대상어가 및 확인방법

가. 지급대상어가

-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로 어업인의 개념정의가 중요함. 따라서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의 나목의 어업인 중에서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2의 나목의 어업인임. 즉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제2항 제1조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어업법인 포함)
 - 농업의 경우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단, 염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포함하도록 함
 - 맨손어업의 경우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의 규정 어업인의 조건에 해당하면 굳이 별도로 맨손어업을 명기할 필요가 없음
 - 농업의 경우 0.1ha, 즉 1000㎡ 이하의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음

나. 확인방법

- 어촌계 명부에 등록된 어업인
- 어촌계에 소속되지 아니한 어업인은 면허, 허가, 신고 등 등록자로 관련



등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업활동 유무 판단이 중요한데 지역별 판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활용함
-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원 : 어촌계장, 이장 및 읍·면장 각 1인으로 구성

3. 지원기준과 지원수준(단가)

가.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기준은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임
 - 어업활동의 불리성으로 인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가 전체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경작지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인 농업과 달리 정액 지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어장의 면적 및 풍도 등은 주어진 것이므로 차등지급은 역차별의 우려가 있음
 - 농업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발농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 약 336억 원에서 지급단가 상향조정으로 2010년 417억 원으로 81억 원 정도 예산 증액됨

나. 지원기준 산정 근거자료의 활용 한계

- 수협중앙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를 활용하여 어업소득차액을 산정하였는데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의 정확 및 신뢰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렇다고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행정력이 소요되어 실시가 용이하지 않음
- 하지만 직불금 산정 근거자료로 활용에는 어촌계 분류평정 자료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어촌계분류평정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해야 함

다. 산정한 직불금 적용 및 기간

- 직불금은 한 번 산정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하도록 함
 - 그리고 3년 또는 5년마다 새로이 산정하여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지원수준(단가)

① 어업소득 차액 추정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을 추정하여 제시한 것이 [표 3-19]와 같음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간의 어업소득 차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자료임
 - 즉 ‘어촌계 분류평정’자료를 통하여 어촌계의 평균 소득을 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평균소득 그리고 비조건불리지역 어촌계의 평균 소득 등을 알 수 있음
 - 어촌계의 평균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추정함
 - 어업소득의 비중은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에서 구함
-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소득 차액이 2004년에는 -85천원으로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이 비조건불리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06년 및 2008년의 경우는 어업소득 차액이 171천원, 979천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소득양극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어업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어촌의 소득저위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렇게 어업소득 차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했을 때 직불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과제임. 예산제약 등을 고려하여 함



리적으로 직불금 지원수준(단가)은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건의 불리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표 4-3] 비조건불리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 산정

단위 : %, 천원

연도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 비중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소득	조건불리지역 어업소득	차액
2004년	45.7%	9,334	9,420	-85
2005년	43.0%	8,905	8,885	19
2006년	39.0%	8,904	8,733	171
2007년	39.0%	9,718	9,005	713
2008년	44.3%	11,078	10,098	979

자료: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각 년도

주: 어업소득 비중은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에 의함

- 농업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단가 설정의 사례를 보면 경사지 밭과 평지와의 3년간 평균 농업소득차액의 약 30%로 정함

② 지원수준(단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최근 3개년 (2006-2008) 평균 어업소득 차인인 62만원의 1/3~1/2인 20~31만원의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어업소득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⁹⁾
 - 첫째, 도서라는 자연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소득차이를 공공부문에서 모두 보전하여야 하는 가임.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과 달리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 둘째, 예산상의 제약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특히 직접지불이 시행되면 지급수준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낮은 수준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9) 오내원 외 4인,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 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셋째,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직접지불액 수준을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평균 어업소득 차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임. 어업소득 차이 전부를 직접지불액의 지원수준으로 하게 되면 양 지역의 경계 부근에서 소득의 역전이 심하게 발생하게 됨.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된 조건불리지역 경계지역의 생산자 들이 정책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음

4. 지급내용 및 방법

- 직불금은 생산자 직접 소득지원과 마을공동사업지원을 병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이에 지급방법은 생산자 직접 소득지원의 측면에서는 개별 어가이며, 마을공동사업 지원의 경우는 어촌계에 지원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직불금을 농가와 마을의 분배가 7:3으로 직불금의 30%는 농촌마을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2절 시행지침(안)

1. 목적

-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제2항 :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호 :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제40조 : ①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4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해당지역 과소화 예방 등 그 성과를 정략적 지표로 제시

[표 4-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어가유지비율(%)	12월 말	$\text{어가유지비율} = (\text{11년 어가수} / \text{최근 3년간 평균 어가수}) \times 100$ ※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제3절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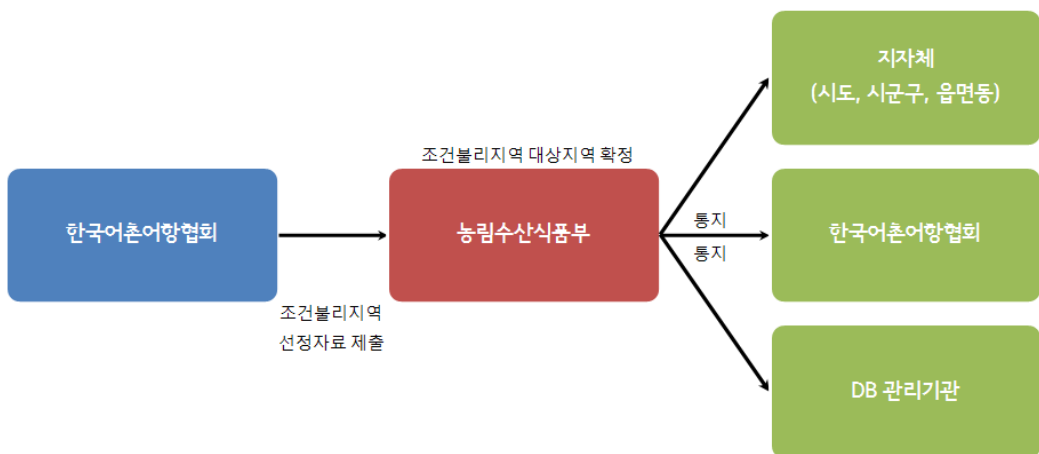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단계

가. 한국어촌어항협회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의 육지까지 이격거리, 해당 어촌계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그 근거자료는 보관토록 함
 - 육지와 도서의 이격거리는 육지쪽 선착장에서 도서지역까지의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
 - 추진과정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 뿐만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등 타 공공기관도 검토될 수 있음

나.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근거로 조건불리지역을 도서, 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 DB 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함



[그림 4-1] 조건불리지역 대상 선정 및 통보 단계의 기관별 역할



다. DB 관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지받은 대상지역(도서명, 어촌계)에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신청서 전산화를 준비함

라.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지된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을 시·군·구, 읍·면에 통지하고, 시·군·구 및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해당지역의 읍·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공고에 포함할 내용>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도서명, 어촌계)
- 직불금 신청대상자,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직불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가. 어촌계, 읍·면·동

-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직불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운용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어촌계장을 원칙으로 하되, 어촌계장이 공석이거나 어촌계장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역의 읍·면장은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이하 “직불금신청서”라 한다)와 어촌발전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읍·면장은 어촌계 단위로 직불금신청서와 어촌발전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하여야 함

나. 시·군·구

- 시장·군수는 읍·면에서 제출한 직불금신청서와 마을활성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운영위원회에 통지함
- 마을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공익성, 구성원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된 경우, 사업의 참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마을사업추진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어촌계(어가단위)

- 지원대상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서명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날인하여야 함)



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함

-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일련번호대로 정리하고, 기재항목 누락 및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촌계 명부, 허가·면허·신고어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위원장은 취합하여 정리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어가선정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자가 실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어가 여부를 검증토록 함

<어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어가 검증>

- 어가선정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어촌계장, 마을이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
- 어가선정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 지역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그 경비는 어촌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어가선정 심의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읍면에 제출

나. 읍·면

- 읍·면에서는 어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장과 동행하여 실제 대상자임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토록 함
-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는 DB로 구축하여 전산화를 완료하고 이를 시·군에 다시 제출함

다. 시·군

- 시·군에서는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자 DB자료 결과를 토대로 무작위로 5%를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 5% 범위로 추출된 무작위 현장조사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부적격 사례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따른 어가, 어촌계의 이행요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나. 시·도

- 시·도는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되,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보고하여야 함

다. 시·군

- 시·군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이행여부를 확인함
 - 대상어가 : 어장관리의무(필수의무)
 - 어촌계 : 마을활성화사업(필수의무) 등 이행여부 확인
- 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은 어장관리의무, 마을활성화 사업에 따라 구별하여 점검토록 함
 - 어장관리의무 : 의무 불이행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대상어가 확인서 징구하며, 불이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마을활성화 사업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의무 불이행 발견 시 운영위원회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그 불이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라. 읍·면

- 이행점검 확인 결과에 따른 불이행 대상어가 또는 어촌계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이를 DB자료에 입력토록 함

5.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가. 이행요건 이행 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가가 지급요건을 이행 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불금을 지급

나. 이행요건 불이행 시

- 시장·군수는 이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어가 및 어촌계에 대해서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이행요건 불이행이 누적된 대상어가 및 어촌계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함

[표 4-5] 이행요건 불이행 시 제재기준

이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어장관리업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에 따른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5년 간)
마을활성화 사업 이행업무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취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발전기금액 지급 중단(5년 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또는 어촌계가 불이행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자연재해의 경우
- 어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Chapter

05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향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어가실태 및 현황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제1절 도입배경

- 수산부문에서도 농업부문에서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직접지불제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개별 어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므로 어가 관련 자료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필요함
 - 향후 수립될 수산부문의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는 총판매수입 및 소득 자료를 기초로 지불액이 결정됨
 - 따라서 어가의 경영규모, 어획 또는 양식되는 품종, 어획량 및 양식 생산량 등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어가의 어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별 어가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확인되어야 함
- 최근 수산부문에서도 어가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학적 구조가 이질화 되면서 어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어가 유형별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어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어가소득이 주·부업별, 어업형태별, 연령별, 가구 구성원별로 상이한 형태를 나타냄
 - 어업경영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가소득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업어가 중 전문어가의 어가소득이 일반어가와 부업어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 어가의 “평균적 지원”에서 “어가유형별 정책 차별화”가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9. 11. 28 시행)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국내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농가등록제 실시를 위해 농관원을 통해서 농가의 기초정보를 등록하고 있음
- 최종적인 어가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개념과 목적, 등록 대상과 항목,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별 어가의 경영정보 파악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어가들이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경영·회계장부 미



- 기장으로 인해 경영 정보 파악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어가소득안정제 등 제도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어업경영체가 어업·어촌 관련 용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제도도입 초기의 등록내용은 어업경영체의 경우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도록 함
 - 그러나 수산부문에 어업인의 상호의무조건을 강화한 직불금 지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적합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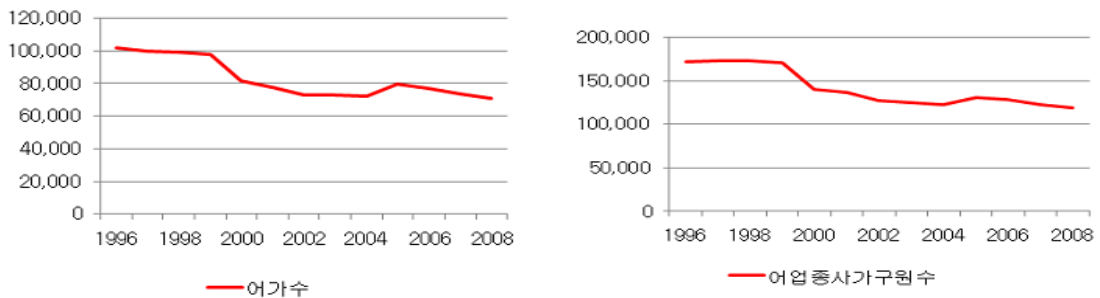
제2절 어가 실태 및 현황

1. 어가 및 어업경영체 현황

가. 어가수 및 어업종사가구원수

- 최근 10년간 어가수 및 어업종사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08년 현재 어가수는 71,046 가구이며, 어업종사가구원수는 118,879명임

[그림 5-1] 어가수 및 어업종사가구원수 추이



나. 어가 분류

- 어가는 주업어가(전문어가, 일반어가), 부업어가, 자급어가로 구분됨
 - 주업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수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어가 중에서 어업총수입이 어업외수입 보다 많은 어가임. 주업어가는 전체 어가의 약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업어가 중 전문어가는 수산물 판매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어가이며, 일반어가는 2천만 원 미만의 어가임. 전문어가는 주업어가의 약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어가는 주업어가의 34.9%를 차지하고 있음
 - 부업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액이 200만 원 이상인 어가 중에서 어업외수입이 어업총수입 보다 많은 어가임. 전체 어가의 약 29.8%를 차지하고 있음



- 자급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어가로서 전체 어가의 1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5-1] 어가유형별 어가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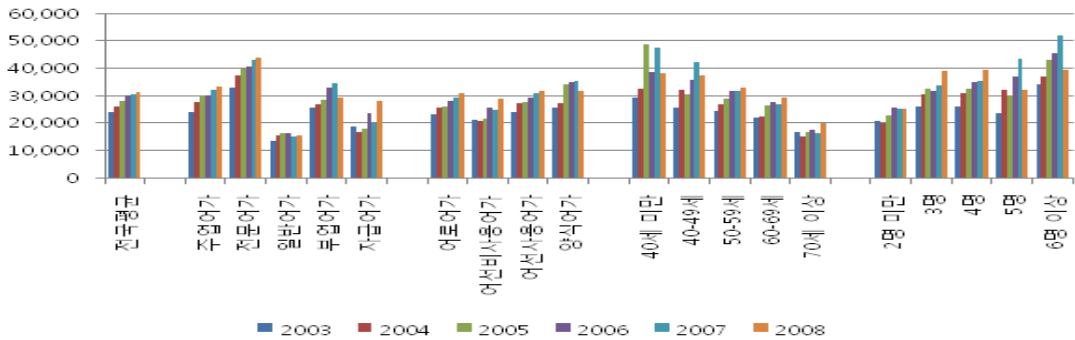
어가구분	어가수	%
주업어가	36,034	50.7
전문어가	23,448	(65.1)
일반어가	12,586	(34.9)
부업어가	21,148	29.8
자급어가	13,864	19.5

자료 : 어업총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함

다. 어가소득

- 어가의 소득은 주·부업별, 어업형태별, 연령별, 가구구성원별로 상이한 형태를 나타냄
 - 2008년 현재 어가소득은 31백만 원으로 최근 상승 추세에 있으나 이는 '06년 이후 주업어가 중 전문어가의 어가소득(40백만 원 이상) 상승에 기인한 것임
 - 주업어가 중 일반어가와 부업어가의 경우 어가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주업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수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어가 중 어업총수입이 어업외수입보다 많은 어가임
 - 전문 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 수입이 2천만 원 이상 어가
- 어업형태별로는 양식어가의 소득 상승이 전체 어가소득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업 경영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가소득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70세 이상 고령어가의 어가소득은 20백만 원 이하)

[그림 5-2] 어업형태별 어가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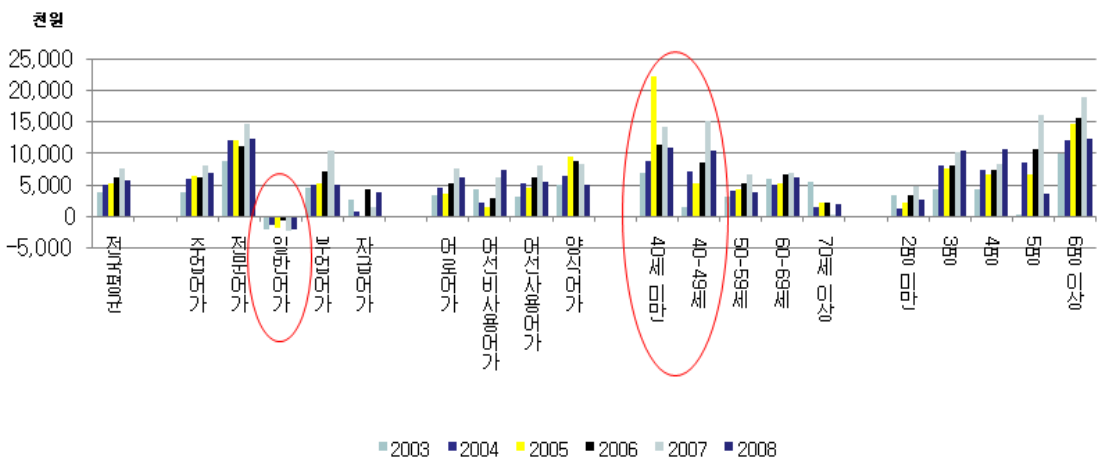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3~2007년)

라. 어가경제잉여

- 2008년의 경우에는 어가소득이 최대였지만 어가경제잉여¹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가소득의 상승을 견인한 전문어가의 경우에도 최근 5개 년 간 15백만 원을 넘지 못하였음
- 주업어가 중 일반어가는 최근 5년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경영자는 연간 흑자 규모가 5백만 원 이하임. 단, 50세 미만의 젊은 경영자만 10백만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함

[그림 5-3] 어업형태별 어가경제잉여 추이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2003~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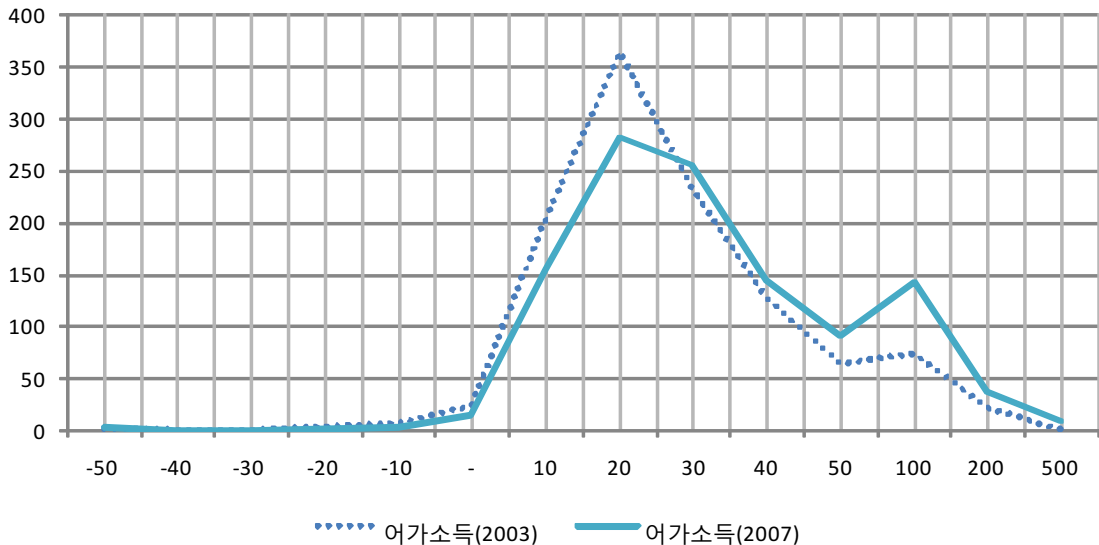
10) 어가경제잉여는 어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마. 실질어가소득과 실질어업소득의 분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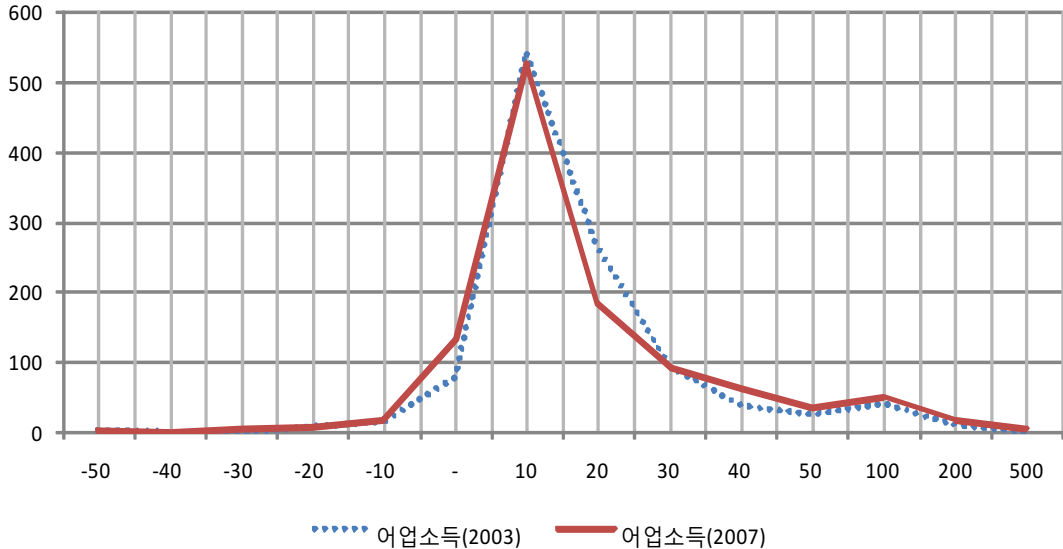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실질어가소득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어가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어가소득 20백만 원대의 어가수가 약 22.6% 감소하였으며, 30백만 원~500백만 원까지의 어가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어가소득 1억 원대의 어가수가 약 93.2% 증가한 것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실질어업소득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계층의 어가가 늘고, 상위계층의 어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실질어업소득 10백만 원~30백만 원까지의 어가수는 감소하였으며, 0~10백만 원까지의 어가 수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 실질어가소득 분포변화



주 : 횡축은 실질어가소득(백만원), 종축은 표본의 수(어가)
 자료 :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그림 5-5] 실질어업소득 분포변화



주 : 횡축은 실질어가소득(백만원), 종축은 표본의 수(어가)
 자료 :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 소득계층별 어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약 70백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5-2] 소득계층별 어가소득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감율
하위20%(A)	4.1	4.2	5.4	4.8	4.9	0.05
20-40%	13.5	14.6	15.3	15.3	14.8	0.02
40-60%	20.1	21.5	22.6	22.1	22.8	0.03
60-80%	29.4	30.8	33.1	33.1	33.8	0.04
상위 20%(B)	61.7	67.2	68.8	70.6	74.8	0.05
어가소득격차(B-A)	57.6	63.0	63.4	65.8	70.0	0.05

자료 :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이용



- 최근 5년간 상위 20%를 제외한 어가의 80% 정도가 연평균 어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어업소득이 14.7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 소득계층별 어업소득현황

(단위 :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감율
하위20%	-3.8	-3.8	-3.0	-5.0	-4.7	-0.06
20-40%	3.9	3.8	3.2	2.5	2.2	-0.14
40-60%	8.4	8.4	7.5	6.8	6.4	-0.07
60-80%	15.2	15.6	15.1	14.3	14.7	-0.01
상위 20%	44.1	48.6	47.4	45.9	49.0	0.03
어가소득격차(B-A)	47.9	52.4	50.4	51.0	53.8	0.03

자료 :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이용

바. 소득원천별 불안정성

- 전반적으로 어가소득원천별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어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수입 등 전반적인 소득원천의 안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함

[표 5-4] 어가소득원천별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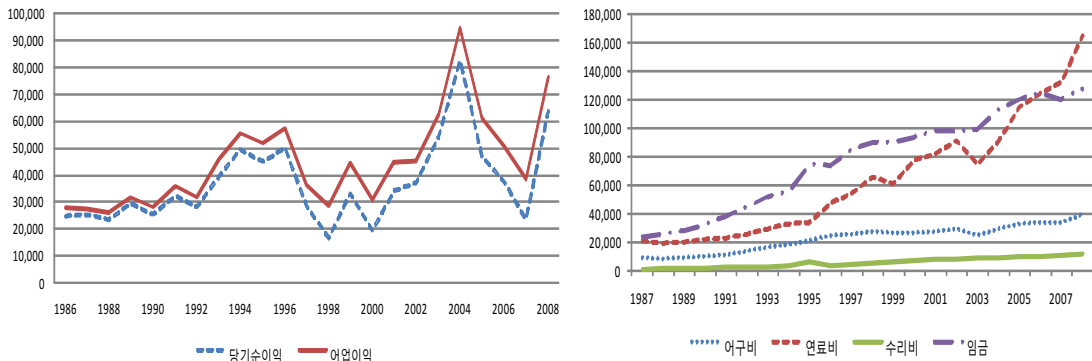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수입
2003년	95.8	163.8	135.8	222.7
2004년	108.3	190.5	159.9	202.7
2005년	107.9	192.6	160.1	188.4
2006년	105.5	187.5	162.3	210.3
2007년	109.9	199.7	174.3	233.3

자료 :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이용

2. 근해어업 경영실태

- 수산업에서 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어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대규모 수산회사의 경영성과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근해어업은 자원 및 어획량에 큰 영향을 받지만 비용의 측면에서는 유가와 임금의 상승이 어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근해어업 경영실태 및 출어비용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 년도.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1. 농업경영체 등록

가. 한국의 농업경영체 등록

① 등록목적

- ‘농가단위’의 직불제 및 경영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가별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적어도 5년간 개별 농가별로 품목별 식부면적, 단수, 축종별 사육 두수 및 판매 두수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농가별 자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장기적으로 관리됨
- FTA/DDA 영향으로 정부의 가격지지나 시장개입 정책이 축소되는 반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 FTA 피해보전 등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농가별 경지면적, 재배 품목, 가축 사육두수 등 경영규모가 먼저 파악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정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지원하는 체계이며, 농가의 경영정보가 파악되면 농가별 지원 방법,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짐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를 경영여건별로 유형화한 후, 그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 단지 경영체 유형은 주 생산품목, 조수입규모, 전업화 정도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하여 결정됨
 -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농정의 추진이 가능해짐. 미래 농업의 핵심인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경영컨설팅 가능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도 가능해짐
 - 정책자금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신청, 부당신청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② 도입경과

- 2004. 2,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등록제’, ‘소득안정계정’ 도입 검토
- 2006. 12,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안’
 - 기본정보(주민, 농지, 축산 등)와 상세정보(소득, 교육 등) 등록
 - 적용사업은 3단계(정비기, 성숙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직불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2011년 이후 모든 농림사업에 적용
- 2007. 7,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 시행지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2007. 8~11)
- 2008. 5,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사업 추진방안 확정
 - 일괄등록(2009. 12. 31까지)과 상시관리(2010년부터) 체제로 구분, 추진
- 2008. 6,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 사업 세부추진계획’
 -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실시

③ 등록절차

- 등록대상
 -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중에서 개별농가는 경영주, 농업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등록
- 등록대상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



-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
 - 일괄등록 기간(2008. 6~2009. 12. 31) 중 예비신청서는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예비신청서의 배부 및 회수는 농업인의 등록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 아래 추진
- 등록 내용 :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 인력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업종사 여부 등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농작물·임산물의 종류와 면적 등
 - 축산정보 :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연간 출하량 등
 - 재배품목수는 쌀(논벼, 밭벼 등 2개), 일반작물(21개), 채소(57개), 과수(17개), 화훼(17개), 특용(19개), 약용(39개), 임산물(12개) 등 184개 품목에 달하며, 가축사양수는 31개 축종임.
- 등록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관원은 제출한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농지, 축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전산처리
 - 농관원에서 보낸 '전산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본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관원에 제출
 - 농관원은 '본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한 후 결과를 농가별로 통보
 - 단,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절차 없이 농관원에서 보낸 본신청서를 작성, 제출

나. 영국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¹¹⁾

① IACS의 구성체계

- 영국의 IACS 체제는 농지등록(rural land register)¹²⁾, 농업경영체 등록(customer register)¹³⁾, 가축 등록 등 3가지 요소가 결합된 형태임

② 등록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 주접촉인(main business contact) : 식별번호(PI),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 사업상세내역(business details) : 주사업내용, 법적지위, CPH번호, 다른 제도관련 등록번호(부가세 등록번호, IACS번호, 관세 및 상품세납세자 번호 등)
 - 대표자(people representing your business) : 식별번호(PI),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 타사업장(other places business) : 주사업내용, 토지상세내역(land details)
 - 지급관련내용(payment details):은행계좌번호 등
- 농지등록
 - 등록자 인적사항 및 농지관련 사항 : 성명, 경영체명, 주소, CPH번호, Ordnance Survey(공적기능을 가진 지도회사임) 지도번호, National Grid field 번호, 면적,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 경영체 번호, 직전 소유자/점유자 성명, 변화이유
 - 등록관련 법적 사항에 대한 언명(조사협조 의무 등)
- 가축등록

11) 농림부,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1

12) 농가가 이용하는 모든 필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함.

13) 2005년부터 모든 경영체에 단일업체번호(single business identifier)라는 번호가 부여됨.



- 등록대상과 등록방법은 EU에 대한 것과 동일함.
- 등록이 되면 농림부 표식과 등록번호를 부여함.

③ 관리기관 :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 EU에서 영국에 지불하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의 보증부분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농가등록을 포함한 제반 등록업무를 관장함

④ 등록정보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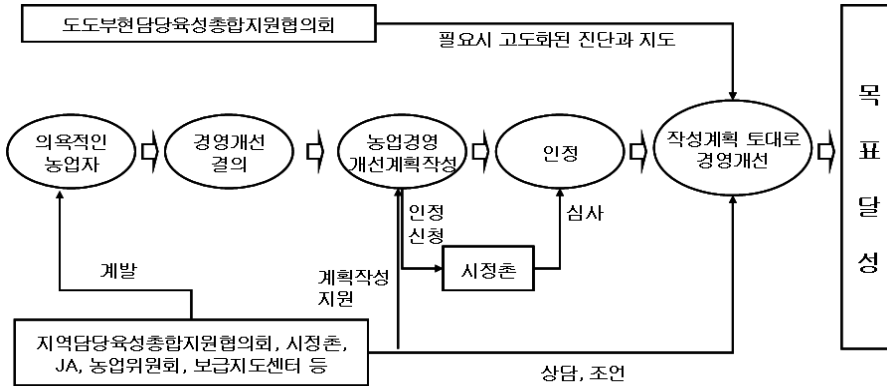
- IACS 정보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평가와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고 있음.
- 과세당국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농촌지불청(RPA)이 판단하여 정보를 전달하여 왔으며 최근의 입법추세는 이것을 보다 의무화하는 있음

다. 일본의 인정농업자제도

① 개요

- 농가나 법인이 작성한 5개년후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의욕있는 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인정농업자제도를 도입함
-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를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함
 - 자연인이나 법인, 신규취농자, 겸업농가, 일반 농업, 축산, 시설원예, 공동경영(부부)

[그림 5-7] 인정농업자제도 개요



자료 : 농림부,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1

② 신청절차(신청내용) 및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지역차원에서 의욕적인 농업자가 경영개선의 필요성과 실천을 결심하게 됨
- 5개년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함.
- 시정촌에 인정 신청을 하게 되고, 시정촌은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여 인정을 하게 됨.
- 인정된 농업자는 작성된 계획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경영개선을 실천하게 됨
- 5개년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이 시정촌 농정담당자에 의해 실시됨

○ 신청 내용

- 목표 영농유형
- 경영개선방향의 개요
- 농업경영규모 확대 목표 (현황/목표) : 작목, 부문명/경영면적/경영경지(지목, 소재지, 현황, 목표, 소유지/차입지 등)/작업수탁(단순계, 환산계)
- 생산방식의 합리화 목표 : 기계, 시설(형식, 성능 등)의 현황과 목표/ 농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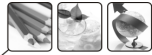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지 이용 조건/작목 · 부문별 합리화의 방향
 - 경영관리의 합리화 목표
 - 농업종사의 태양(態樣) 개선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조치
- 지원 내용
 - 농업위원회 : 농용지의 이용집중 지원
 - 세제상 특례(할증상각제도 등)
 - 농림어업금융공고 등 융자 배려
 - 경영상담, 경영분석, 인정농업자들 간의 교류 지원
 - 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강습회 개최
 - 경영개선에 유익한 정보 제공
 - 농업생산기반 · 기계설비 정비, 경영안정대책, 농업자연금 등

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가. 도입의 필요성

- 직접지불제란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미국 · EU · 일본 · 캐나다 · 우리나라 등에서 농정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
 - 단지 생산자가 직접지불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이행조건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때문에 정부는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행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
- 주요 국가에서 직접지불제도는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음
 - 먼저 가격지지정책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서 직접지불제도를 도

- 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1950년대 영국에서 가격지지는 농산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제약 때문에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고, 이후 영국에서 1950년대 말 직불제가 도입된 것이 최초임. 미국에서 가격지지는 생산과 무역을 왜곡한다는 비판에서 1970년초 직접직불제가 도입되었음
 - 이것이 WTO 농업협정으로 승계되어 가격지지는 감축대상정책(amber box), 직불제는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구분함에 따라 WTO 체제에서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음
- 가격지지에서 직접직불로 전환된 것 이외에 새로운 정책목적에 따라 직불제가 도입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이다. 조건불리지역과 평지지역과의 생산조건의 불리성을 직접직불로 보전함으로써 조건불리지역농업 유지가 목적임
 - 또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이나 다원적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 직불제, 농업자원의 보전을 위한 직불제도 최근 확산되고 있음
 - 그리고 농업구조 개선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선형 직불제,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에 의한 경영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경영안정 직불제 등도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세계화 속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에 의한 가격 하락과 기상재해에 의한 가격변동이 심해지는 여건에서 경영안정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이 필요함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소득이나 수입(판매수입)의 변동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임
 -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과거 일정기간의 기준수입 또는 기준소득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 또는 소득이 이를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직접직불하는 방식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직불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 직불제가 확산되면서 논·밭간 불균형 완화, 이행조건 강화에 의한 정책 효과 제고, 특정 품목중심에서 해방, 구조개혁 촉진, WTO 농업협정과의 합치성 유지 등의 방향으로 개편이 요구되고 있고 농가단위 직불제의 기본적인 골자와 도입방향에 대해 검토함

나.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동향

① 전반적인 동향

- 직불제는 확대되면서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음. 주요 국가의 직불제 실시 과정을 보면, 각국의 정책과제 및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정지불의 경우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지불방식에서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되고 있음
 - 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동지불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불기준은 가격보전에서 수입보전(판매금액)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행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EU와 일본 등에서는 농업생산조건의 불리성을 보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도 이행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직불제 실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EU는 품목별로 실시하던 소득보상지불을 농가단위의 단일직불제(SFP)로 전환하되, 이행조건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그동안의 고정지불, 변동지불 성격의 ‘가격보전 직접지불’(CCP)에서 2008년 농업법에서 판매수입 하락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2007년부터 그동안의 품목별 대책에서 고정지불과 변동지불로 구성되는 농가단위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고, 민주당 정권이

2010년부터 호별소득보상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함

[표 5-5] 주요 국가의 직불제 실시 동향

	구조개선	경영안정 소득보전	친환경확산 다원적기능발휘 농업자원보전	조건불리보전
EU		단일직불(SFP)	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미국		고정직불(DP)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보전유보계획(CRP) 환경증진계획(EQIP) 보전보증계획(CSP)	
캐나다		소득안정계정(AgriSta.) 농업투자계정(AgrInv.)		
일본	전략작물증산직불 품목횡단직불	품목횡단직불	자원환경보전직불	증산간직불
한국	경영이양직불	쌀소득등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직불	조건불리발직불
비고	○규모확대 ○증산·고품질 ○동물복지 실현	○‘품목별’에서 ‘경영단위’로 전환 ○지불방식 -고정지불(과거실적) -변동지불(격차보전)	○새로운 보호수단	○조건외 불리성 -생산조건 -정주조건 ○일반지역과의 격차 보전

- 이행조건(cross compliance)이란 직불제의 실시과정에서 생산자가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의미임. 미국에서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휴경과 연계한 보전유보계획(CRP)의 경우 휴경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불한 것이 최초임
-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EU,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이행조건 강화와 연계하여 보조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업보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② 미국

(1)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 미국의 직불제 시초는 1973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부족불제도임. 이것이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는 대신 고정직불이 도입되었고, 부족불제도는 2002년 농업법에서 CCP로 부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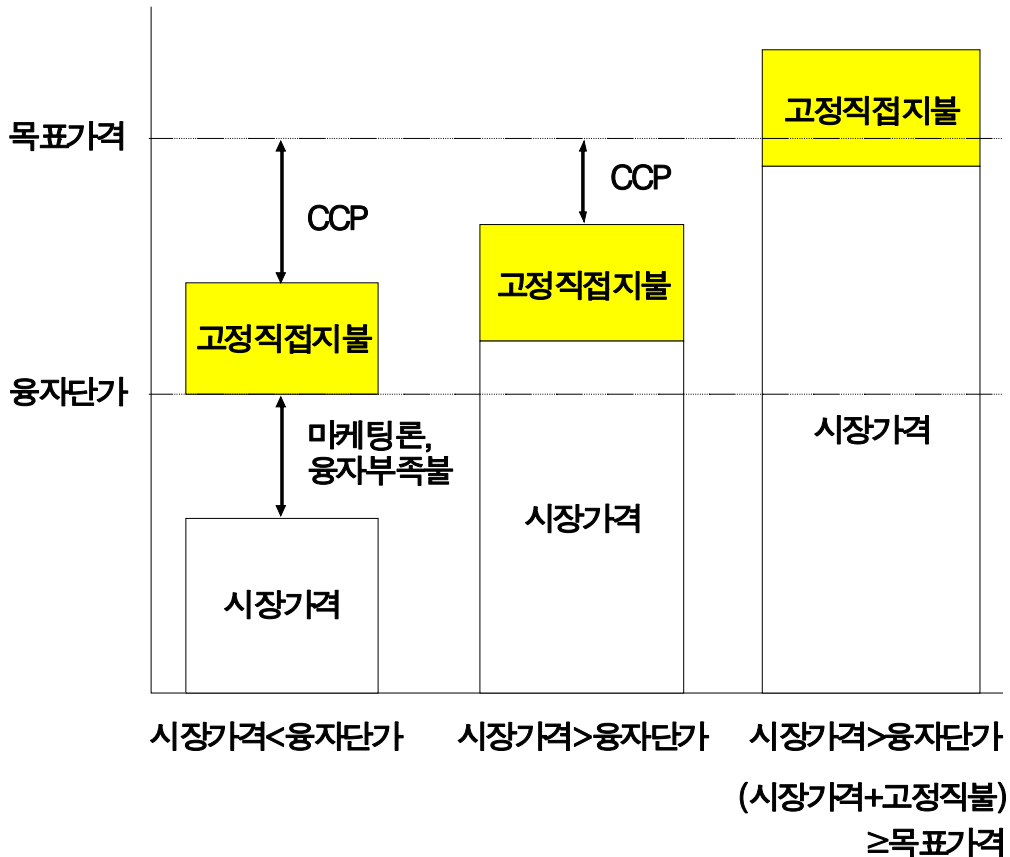
- CCP는 생산량과 단수는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단가는 현재 가격에 연계하고 있음. 즉, '과거'의 생산량에 '현재'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됨. 미국은 지불금액이 농업생산액의 5%를 하회하는 이유로 최소허용보조(de-minimis)로 분류함
- CCP는 목표가격에 연계되어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단지 재해 등에 의한 생산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실제 생산자는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라는 요인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농업법에서 수입(판매수입)기준의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이 도입되었음

(2)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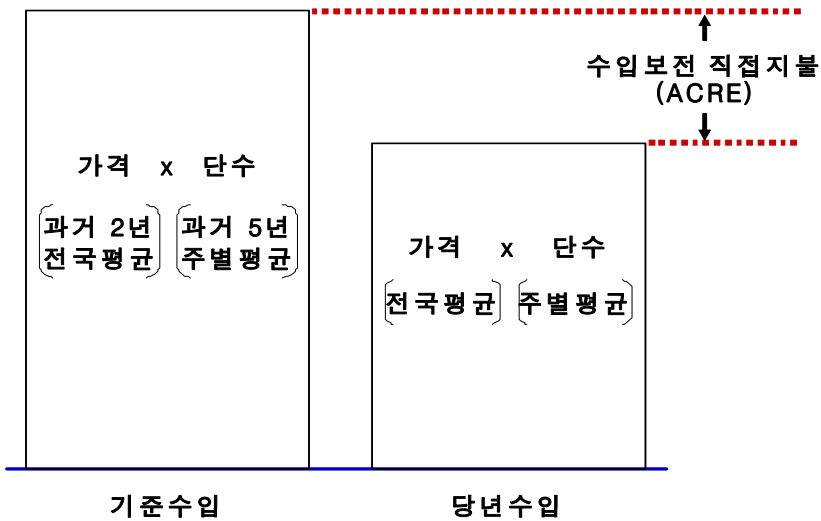
- ACRE는 2008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됨. CCP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서 가격하락이나 생산감소에 대응한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ACRE는 CCP의 현행 '가격기준' 보전방식에서 '수입기준(판매금액)' 보전방식을 추가하여 생산자가 CCP나 ACRE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ACRE는 2009년부터 실시되며 일단 선택한 경우는 2012년까지 계속 적용됨
- 보전방법은 당해 작물의 '주별 수입'이 '주별 기준수입'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함. 단지 기준수입은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단수'×'최근 2년간 전국평균가격'×0.9로서 계산하며, 당년수입은 '작물별 주의 평균단수'×'전국 평균가격'으로 계산함
- 보전기준은 개별 농장에서 당해 작물의 농장수입이 농장의 기준수입에 미달하면 당해농장에 대한 지불이 행해짐
 - 지불금액은, ① (주의 보증액-주의 실수입),
 - ② 상기 보증액의 25%, 중 적은 금액이며, 대상면적은 2009~2011년은 식부면적의 83.3%, 2012년은 동 85%에 상당하는 면적이다. 생산자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 당해 작물의 고정직불을 20% 삭감, 동 융자단가를 30%

인하됨

- ACRE는 지금까지의 보조금과는 달리 ‘가격’만이 아니라 ‘단수’의 변동에도 대응하는 제도임. 즉 ‘가격’과 ‘단수’로 결정되는 ‘수입’을 일정수준으로 보증함. 기준액을 주의 기준수입으로 하고, 수입보증기준의 가격은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음
- 2006년 가을이후, 곡물의 시장가격이 상승, 목표가격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CCP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ACRE는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보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보증수준의 실질적인 현저한 상승을 의미함



[그림 5-8] 미국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개념도



[그림 5-9] 미국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 개념도

③ EU의 농정전개와 특징

(1) 소득보상 직접제의 개혁

- 1962년 CAP이 형성된 이후 EU는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음. 우선, 1992년 CAP 개혁은 생산조정에 의한 과잉재고 축소, 가격안정에 의한 시장균형, UR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단행되었음. 개혁의 요지는 지지가격의 인하, 소득보상 직불제 도입, 그리고 생산조정 의무화 등임
-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추가적인 시장개방, 수급불균형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한 것이 1999년의 ‘아젠다 2000’임. 개혁의 요지는 개입가격의 추가적 인하, 직접지불 단가 인상, 직접지불에 대한 의무준수사항 도입, 그리고 농촌개발정책을 가격소득정책과 병행하는 제2의 축으로 위치 설정한 것 등임
- ‘2003년 CAP 개혁’에서는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 도입, 축산물과 쌀에 대한 개입가격 인하, 농촌개발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단행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직불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

여 지급금액을 과거의 수급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단일직불제를 도입한 점임

- EU의 CAP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책이 개입가격에 의한 정부수매임.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개입가격을 설정, 시장가격이 개입가격을 하회하면 각국별로 관련기관이 농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입가격으로 전량 수매함¹⁴⁾. 수매한 농산물은 수출보조금을 부과, 역외로 수출하여 재고를 처리한다. 대상작물은 소맥, 대맥, 옥수수, 대두, 쌀, 우유·유제품 등임
- 단지 지지가격의 수준은 계속 인하되고 있음. 1992년 개혁시에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을 29% 인하, 1999년 개혁시에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을 15% 인하, 그리고 2003년 개혁시에는 이를 동결하였음. 소맥, 대맥, 옥수수, 호밀 등을 포함하는 곡물은 2003년 현재 톤당 개입가격이 101유로로 인하되었음. 이것은 1992년 개입가격(163유로)의 62% 수준이다. 대신에 직접지불은 당초 54유로에서 63유로로 인상되었음
- EU 소득보상 직불제는 생산조정을 요건으로 매년도 식부면적에 연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WTO 농업협정상의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에 해당되는 보조금임. EU가 지지가격을 인하하고 직접지불로 전환한 배경에는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증대, WTO 농업협상에서의 국내보조 감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소득보상 직접지불 금액은 ‘기준면적×단수×지불단가’로 결정함.
 - 먼저, 지불단가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곡물의 경우 2003년 현재 톤당 63유로임
 - 둘째, 단수는 가맹국의 ‘지역별’로 결정된 과거의 기준단수를 적용함. 가맹국은 단수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생산지역을 확정하고, 각 지역별로 단수를 산정함
 - 셋째, 기준면적은 ‘농가별’로 실제 식부한 면적과 의무적으로 휴경한 면적을 합계한 것으로 함. 그러나 당년도의 식부면적이거나 휴경면적이 기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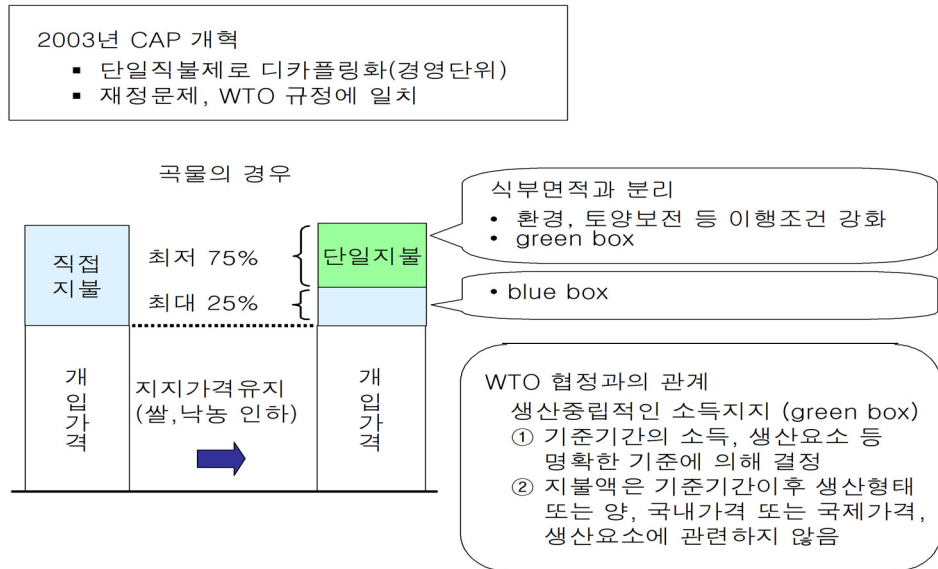
14) 수매는 역내 동일가격으로 하며, 수매기관은 예를 들면 연방식량농업사업단(독일), 전국곡물국(프랑스), 개입위원회(영국) 등이 있다.



기 때문에 증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¹⁵⁾

(2) 생산중립적인 단일직불제 도입

- 소득보상 직접지불은 생산조정과 연계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에 해당됨¹⁶⁾. EU는 곡물을 비롯하여, 쇠고기, 양, 낙농제품, 감자, 두류, 쌀, 종자, 조사료 등 품목별로 다양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직불제는 생산과잉을 초래, 재정부담을 과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2003년 CAP 개혁시에는 단일직불제로 통합하였음



[그림 5-10] EU 단일직불제 개요

- 15) 생산량 단위당 단가가 고정되고, 기준단수는 품목별이 아니라 곡물전체의 평균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생산자는 조방화하여 단수를 감축하는 것으로는 지불액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토지면적이라는 형태로 생산요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증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EU의 소득보상 직불은 미국의 부작불제도와 고정직접지불의 중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 16) EU에서 생산조정은 1980년대말부터 자주적으로 실시되었다. 의무적인 휴경(set-aside)은 1992년 개혁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휴경률 15%이었으며 아젠다 2000에서 10%로 인하되었다. 단일직불제에서도 10%(약 380만ha)의 의무적인 휴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단지 92톤의 곡물생산에 필요한 면적(20ha)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생산자는 휴경의무가 면제되고, 바이오연료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유채 등 연료용 작물재배는 허용하고 있다. 최근 긴박한 세계 곡물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적인 휴경제 폐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 생산을 왜곡하지 않는 단일직불제는 농가별로 2000~02년간 실제로 수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임. 단지, 이 경우 경작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곡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5%는 종전방식과 병행하는 등 별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과잉생산국면에서 단일직불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실제 단일직불제의 실시는 구체적인 실시방법, 즉 디카플링 대상품목 선정, 실시 시기, 디카플링의 배분방식, 이행조건의 기준 등은 가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수급액 결정은 ① EU ‘표준모델’과 ② ‘지역모델’ 등 2가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EU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모델은 기준년도(2000~02)의 수급 평균액(즉 과거의 수급실적)을 계산 근거로 하며, 이것은 실적이 큰 농가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지역모델은 지역내에서 과거 경영규모나 집약도(단수, 가축두수)가 아니라 디카플링 개시시에 수급권이 있는 토지면적에 동액이 지불되는 방식임
- 이행조건은 ① 환경보호(야생조류 보호, 지하수 수질보호, 질소 저투입,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식량·사료 안전, 동물건강 등에 관한 EU 지침에 관한 19 EU 규정 준수, ② 양호한 농경상태와 농지 보전, ③ 영년초지 보전 등으로 이행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실제 독일 적용사례를 보면, 표준모델과 지역모델이 혼합된 복합모델로 2005년부터 시작하였음
 - 번식모우지불(200유로/두) 등 축산관련은 과거 실적기준
 - 기타는 지역모델
 - 곡물 등 주요 작물의 작물별 면적지불(3,531유로/ha)은 통합하여 경지 1ha 당 전국 평균으로 301유로(종전에 비해 14.7% 인하)
 - 단지, 호프를 제외한 영년생 작물, 과실, 채소, 식용 감자 등의 재배지는 지불대상에서 제외하되, 영년생 초지는 지불대상
- 따라서 농장별 지불액은 다음의 합계액이 됨



- 디카플링 발동 시 경영경지·영년초지에 대한 지역통일 지불액과 과거 실적에 근거한 가축지불 농지(경지·영년생 초지)에 대한 대체금액의 합계액
- 가축부문에 의해 개별농장의 수급권은 지역평균액과의 차이 발생
- 농장간의 수급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모델’은 지역모델로 이행한다는 방침에서 각 지역에서 경지·영년생 초지가 다른 지불수급권의 균형화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단계로 실시됨. 2013년 이후는 모든 디카플링된 지불은 각 주내에서는 경지와 영년생 초지에 동일 금액(전국평균 328유로)이 지불됨
- 이행조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양호한 농경상태’에 관해서는, ① 토양 부식질 균형 보전, ② 수확한 농지에서의 소각금지, ③ 휴경지에 대한 목초파종·자연초생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지를 최소한 유지관리가 조건, 예를 들면 매년 1회 피복(목초를 절단, 표토에 피복하여 토양침식 방지) 정도임
- 의무적인 휴경에 대해서는, 단일직불제는 휴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의무휴경지(전국 8.17%)도 지불대상에 포함됨. 단지 소규모 생산자(약 20ha이하)는 종래대로 휴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단일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지가 지배적인 평지농업지역에서는 디카플링에 의한 지지수준 인하의 영향이 적지 않음. 규모가 큰 구동독은 물론이고 구 서독의 가축경영은 곡물의 자급 사료화에 의한 비육우·양돈 등의 확대에 소득감소에 대응하고 있음

④ 일본

(1)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고정지불)

- 일본은 경영단위 직불제로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이 대책은 구조개혁 가속화, 수요에 대응한 생산 촉진, WTO 농업협정과의 합치성 유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전함. 다양한 작물을

조합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 농업과 밭 농업에 대해서 전업농의 경영 전체에 주목하여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①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개선하는 방식(생산조건격차 개선지불(고정지불)), ② 판매수입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그 영향을 완화하는 방식(수입변동영향 완화지불(변동지불)) 등임

- 먼저, 생산조건격차 개선지불은 향후 시장개방과 관세감축에 의하여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가 현저한 품목에 대해서 그 격차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임. 생산조건격차의 파악방법은 수입 농산물의 일본 국내가격과 일본산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산과 일본산과의 품질격차라고 보고, 또 일본 국내산 판매가격과 일본의 전업적 농가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생산조건격차로 파악하고 있음
-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은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①전업농의 생산비와 판매금액과의 차액에 주목하여 각 경영체의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과 ②매년 생산량·품질에 근거한 지불 등 두 가지 지불을 실시함
 -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 : 허용대상정책(green box)
 - 매년 생산량·품질에 근거한 지불 : 감축대상정책(amber box)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농가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임. ‘일정 규모’ 이상의 ① 인정농업자와 ② 마을영농을 대상으로 하되, 마을영농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 일정 규모란 ① 인정농업자의 경우 홋카이도(北海道) 10ha, 도부현(都府縣) 4ha, ② 마을영농은 20ha로 하고, 제도 시행후 구조개혁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실현한다는 의도임
- 대상품목은 시장개방에 의한 관세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생산조건격차 개선지불은, ①맥류, ②대두, ③사탕무, ④전분원료용 감자 등 4개 품목으로 하고, 쌀은 현재 고율 관세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직불제를 통한 구조개혁의 논리는 직불제를 실시하면 농지임대



차시장에서 상층농의 지대 지불능력이 높아지고, 이에 의하여 상층농으로 농지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

(2)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변동지불)

- 수입변동영향 완화지불은 가격변동에 의해 수입(소득) 변동이 현저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 일정한 기준 수입을 설정하여 당해년도 수입이 그것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수입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임
- 수입변동영향 완화지불은 대상 품목별로 당해년도의 수입(조수입)과 기준기간(과거 5년 중 중간 3년)의 평균 수입과의 차액을 농가별로 합산·상쇄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90%에 대해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보전함
- 기준수입은 지역별(현별)로 설정함. 적립금은 대상 품목의 기준기간 평균 수입의 10%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정부 3, 생산자 1의 비율로 각출함. 대상 품목은 국내가격 변동에 의하여 경영상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 대상이 되며, ①쌀, ②맥류, ③대두, ④사탕무, ⑤전분원료용 감자 등 5대 품목으로 ‘농가단위’로 하고 있음

(3)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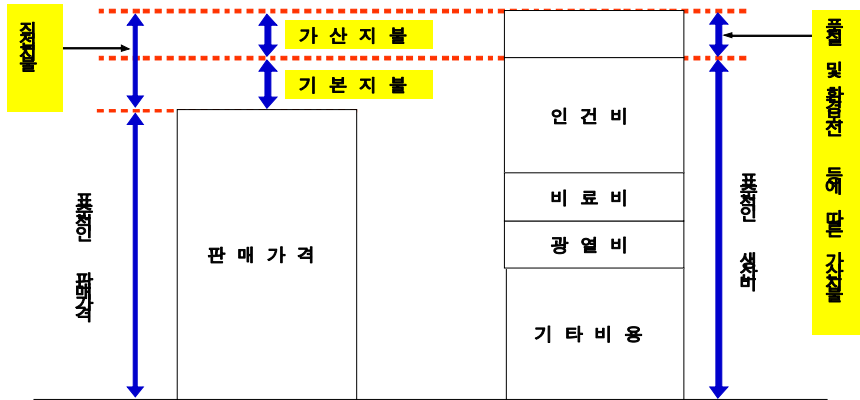
-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됨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와 관련하여서는 상기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호별소득보상제도’(‘소득보상’)로 전환됨
- ‘호별보상’은 판매농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상을 통하여 자급률을 향상하고, 생산자의 소득확보, 다원적 기능발휘, 지역사회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역사회 유지와 식량생산 증대를 중시하여 종전의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품목횡단)에서 ‘판매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 대상품목은 시장개방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쌀, 맥류, 대두를 비롯하여,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생산능력을 가진 품목으로서 잡곡, 유지작물, 사료작물 등임. 채소는 판매가격과 생산비 간의 차가 적기 때문에 제외함

- 지불방식은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차액을 기본으로 하여 지불하는 ‘기본지불’과 특정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지불하는 ‘가산지불’로 구성되며, 전국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함
- 기본지불의 지불단가는 품목별 ‘표준적인 생산비’와 ‘표준적인 판매가격’의 차액을 기본으로,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함. ‘표준적인 생산비’는 과거 수년간 평균 경영비와 가족노동비의 8할로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전기준가격’을 결정함
- ‘표준적인 판매가격’은 과거 수년간 평균으로 산정함. ‘표준적인 생산비’와 ‘표준적인 판매가격’의 차액이 ‘기본지불’이 되며, 기본지불은 고정지불로서 당년도 판매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지불됨. 판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상회해도 기본지불은 고정지불로서 매년 지불됨
- 이상을 근거로 하여 기본단가를 산정하되, ‘수요와 공급 동향을 고려하여 조정’을 거침. 이것은 쌀 단가를 낮게 하고 전작작물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쌀 감산을 유도한다는 의도임. 쌀 생산을 감소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증산함으로써 자급률을 향상할 수 있음
- 기본지불에 추가하여 구조개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지불’을 실시함
 - ①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쌀을 대체하는 작물재배나 주식용 쌀 이외의 쌀을 생산하는 경우 ‘쌀 대체’ 가산지불을 실시함
 - ② 농산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품질 향상’ 가산지불을 실시함
 - ③ 환경부하를 경감하거나 환경편익을 증진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보전’ 가산지불을 실시함
 - ④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거래·직판 등의 판매활동, 미분 등의 형태나 농산물 가공 등의 판매활동에 대해서 ‘소득향상’ 가산지불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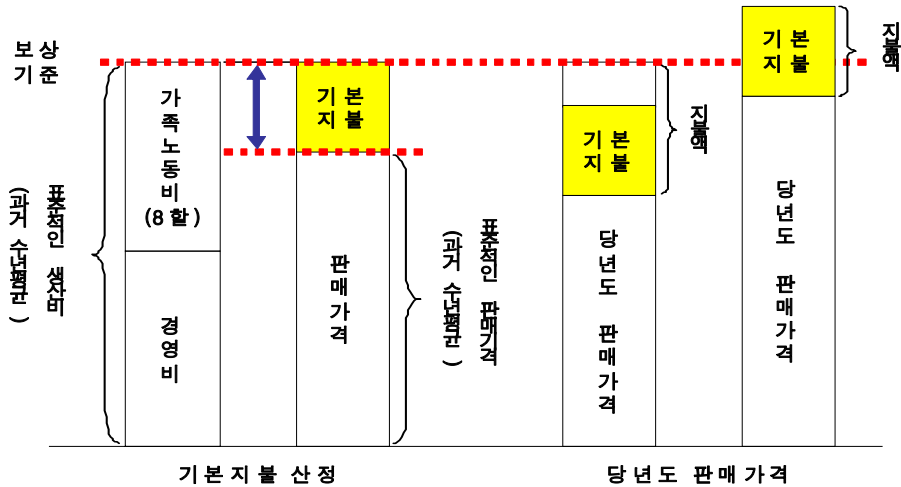


⑤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등 구조개선을 하는 경우 ‘구조개선’ 가산지불을 실시함



[그림 5-11]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개념도

자료 : 농림수산성



[그림 5-12]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기본지불

자료 : 농림수산성

- ‘소득보상’의 소요예산은 연간 1조엔(어업어촌·임업산촌 포함 1.4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9년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예산이 1,700억엔임. 이에 비하면 5배 이상의 예산이 직접지불로서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셈임

다. 현행 직접지불제의 개편

① 개편방향

(1)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직불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직불제, 조건불지역직불제, 경관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도입목적에 따라 다양한 직불제가 실시하고 있어 종류는 다양하나 논농업 또는 쌀 중심으로 실시되어 지자체에 따라서는 논·밭간 불균형이라는 지적과 쌀에 대한 생산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2007년 국가시행 직불금의 94%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 차지하고 있음
- 직불제 예산의 증액되는 가운데 직불제의 정책효과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개별 직불제 별로 이행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인력제약 등으로 현장에서 이행조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성실하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임
-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직불금의 부당수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농지법에서 농지소유자격이 완화함에 따른 비농민 농지소유가 늘어나고, 이에 의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사례와 같은 부당수령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 엄격한 확인·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음
- 직불제의 확대과정에서 농지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는 농지임대차가 논 농업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45%에 달함. 임대차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소유와 이용이 분리됨에 따라 부당수령이나 지불대상 제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 직불제 개편방향

- 다양한 직불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직불간의 목적의 상충성이나 쌀에 대한 과도한 집중, 농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에 대해 ① 목적에 따른 유형화, ② 밭농업 직



불제 도입, ③ 농가단위로의 전환(③-1 농가단위 고정지불제, ③-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으로의 개편이 요구됨

- 현행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① ‘공익형 직불’과 ② ‘경영안정형 직불’로 구분할 수 있음. 공익형은 고정지불로 통합하고, 경영안정형은 최종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전환됨
- 농가단위 직불제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는 발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가 선행되어야 함
 - 현행 논농업 중심에서 발농업으로 확대함(‘발농업직불제’ 도입)
 - 판매농가 전부, 전체농지(논·밭·초지) 대상의 ‘고정형’을 기본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행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불하는 ‘가산형’을 추가함
- 최종적으로는 이상의 논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직불제(고정지불)의 기반위에서 소득 또는 판매수입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변동지불)이 도입되어야 함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가격 및 수량변동의 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표 5-6] 공익형 직불과 경영안정형 직불의 비교

구 분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
목적	다원적 기능 제고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허용보조(green box)	감축보조(amber box)
대상농가	프로그램 참가자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해당직불	쌀소득보전직불(고정지불) 조건불리직불 경관직불 친환경직불	쌀소득보전직불(변동지불) FTA 피해보상직불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
2009년 예산	7,943억원	1,076억원
지불방식	고정지불	변동지불
외국사례	EU, 일본	미국, 일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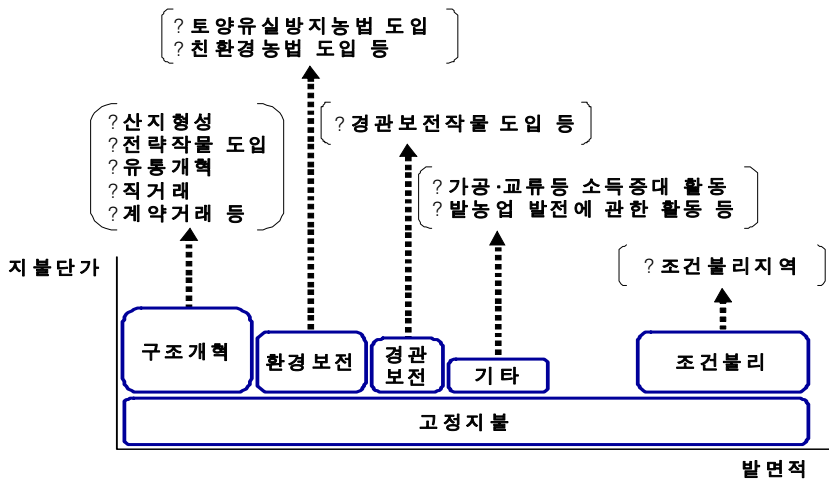
② 발농업 직불제 도입

(1) 필요성

- 발농업 직불제는 WTO 및 FTA 등에 의해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민감품목에 대응하고,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하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발농업 직불제는 현행 논농업의 쌀 중심에서 농가들에게 작목선택의 자유도를 높여서 쌀 과잉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발농업 구조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발농업 직불제는 이러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2) 기본 골격

- 지불방식은 현행 직불제의 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개편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지불의 고정지불을 준용하는 ① ‘고정형’, 그리고 발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구조개혁을 실현하는 ② ‘가산형’으로 함



자료 : 김태곤 외(2005. 11)

[그림 5-13] 발농업 직불제 개념도(가산형 예시)



- 지불단가는 고정형의 경우 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적절히 평가하여 설정하되,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지불함. 가산형의 단가는 개별 프로그램의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분 또는 소득 감소분을 한도로 하여 설정함

③ 농가단위 직불제(고정지불)

- 발농업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별 대상면적이나 가산형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가단위 직불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 농가단위 직불제는 기존의 품목별이나 논밭으로 실시하는 것을 농가별로 통합한 형태임
 - 기본 틀은 식부면적기준의 ① ‘고정형’과 개별 프로그램의 이행을 근거로 지불하는 ② ‘가산형’으로 구성됨
- 가산형 프로그램은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설정이 가능해짐
 - ① 친환경 프로그램
 - ② 경관 프로그램
 - ③ 조건불리 프로그램
 - ④ 경영이양 및 구조개선 프로그램
 - ⑤ 기타 농업발전 또는 소득증대 프로그램

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① 대상농가

-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가격이나 수량 등으로 구성되는 소득 또는 판매수입 등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는 경영안정제가 필요해짐
 - 지불방식은 쌀소득등보전직불의 변동지불과 유사한 방식이며, 차이점은 가격기준에서 소득 또는 수입기준으로, 대상품목은 쌀에서 농가단위 개념

의 다수의 품목으로 확대한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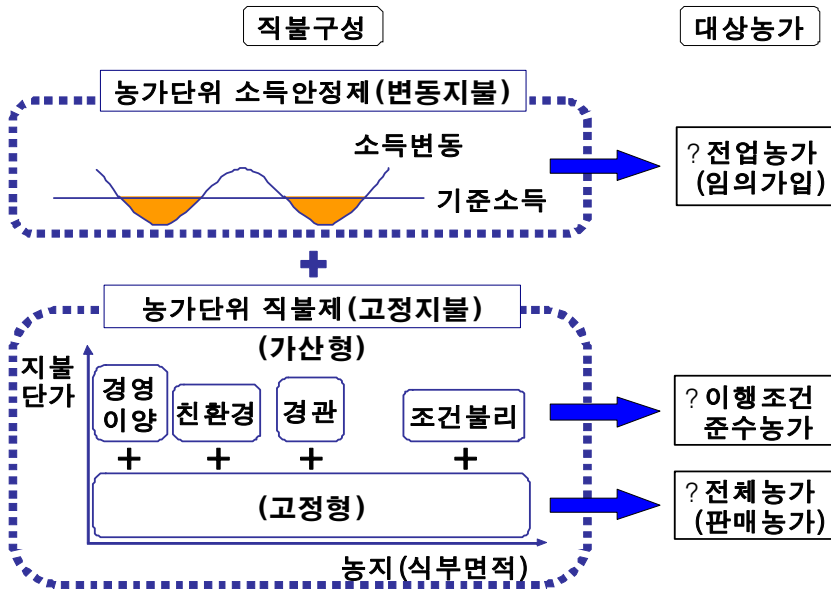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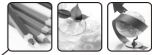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변동지불과 미국의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이 대표적인 사례임. 최근 가격하락이나 수량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전업농의 경영안정을 보장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목적임
-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임

② 대상품목

- 대상품목은 농가단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 전체 품목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비용이나 직불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품목구성을 설정할 수 있음
- 1안 : 쌀, 기타곡물, 두류, 서류, 채소, 과수 등 대상(축산은 품목별 시행)
- 2안 : 쌀, 기타곡물, 두류, 서류 등 대상(채소, 과수, 축산은 품목별 시행)

③ 지급기준

- 농업경영에서 리스크를 파악하는 지표는 가격, 수량, 판매수입, 소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경영안정의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함
- 1안 : 농업소득
- 2안 : 판매수입(조수입)



자료 : 김태곤 외(2008. 2)

[그림 5-14]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

④ 보전수준(예)

- 보전수준은 기준소득이나 기준 판매수입(예, 과거 5개년 중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에 비해 당년소득 또는 당년 판매수입이 하락한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85%, 90% 등)을 보전함. 쌀의 경우는 가격기준으로 85% 수준임

⑤ 농가별 경영정보 파악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행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5년간 대상농가별 대상 품목에 관한 식부면적, 산지가격, 가축 사육두수·판매두수 등의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함
- 대상농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농가별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 경종농가 : 품목별 식부면적, 품목별 생산량, 판매금액, 품목별 생산비
 - 축산농가 : 축종별 사육두수, 판매두수, 축종별 생산비 등

- 단지 '소득' 기준의 경우는 판매수입(식부면적×단수×가격)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음. 또한 가격이나 단수는 전국평균, 시도평균, 시군평균, 농가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도 검토 과제임

마. 관련제도 정비

① 통계자료 확충

- 개별 농가별 자료와는 별도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시도별 또는 시군별 단수, 가격 등에 관한 통계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실시가 가능함

② 농지제도 정비

-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 부당수령문제가 발생하고,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임대차 농지 중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지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직불제가 확대되고 지급단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불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한 농지제도의 정비 또는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됨

③ 지방단계의 행정조직 개편

- 직불제에 대해서는 국가는 기획, 감독,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시군·읍면단계)는 대상지역 지정 및 신청자 선정, 직불금 지급, 이행조건 준수여부 확인, 직불금 지급, 위법사례에 대한 벌칙적용 또는 직불금 환수 등으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불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단계에서 직불제를 담당하는 직불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함. 특히 읍면단계에서 신청시의 적격성 파악, 실시이후 이행조건 등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정비가 직불제의 정책효과 제고하는데 필요조건임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1. 필요성

가. 어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 최근 수산부문도 농업에서와 같이 개별 어가를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는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표방하고 있음. 이러한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과거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한 기준소득의 설정과 현재의 소득과약 및 검증이 핵심이 되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여 기초데이터 파악이 필요함

나. 어가유형별 차별적인 정책 시행

- 어가는 업종, 겸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고, 어가들의 인적 조건과 경영능력, 경영체로의 발전가능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어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며 어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의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은 경쟁이 가능한 전업농(또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집중하고,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대상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그러나, 정책 대상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위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 지표에 의한 획일적 구분의 적합성 문제, 제외된 어민의 반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메뉴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일정한 의무를 지는 계약 형태의 수산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음
- 외국의 직불제는 경영주의 연령이나 경영규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EU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서 최소 3ha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기은퇴지원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쌀소득 보전대책에서 인증농가를 우대하고

있음¹⁷⁾

다. 어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자료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요 정책 사업에서 요구되는 어가의 기본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대외 개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

-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수산물의 가격변화에 따른 품목별 피해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총괄적 피해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피해정도를 어가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대외 개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마. 효율적인 수산인력 육성

- 수산부문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경영 교육, 투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통해 어가의 경영·교육 이력 등을 관리해야 함

2. 기본방향

가. 도입 목적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가의 기본정보 등록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어가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17) 농림부,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1



- 어가의 경영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 신청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경영체 정보의 등록은 상시적, 체계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함

나. 정책적 활용 가능성¹⁸⁾

① 직접지불제의 근거

- 수산부문에 도입되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어업경영체 등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어가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또한 현재의 등록제는 사업자 등록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소득 노출을 꺼리는 어업경영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급될 직접지불제와 연계된 등록제가 필요함
- 또한 직접지불제 등 정책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부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현재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IACS)도 직접지불금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어가 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위한 기반

- 어가 유형별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어가가 유형화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파악되어야 함
 - 한 예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업농 등에 집중하고, 고령층과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어가 유형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가의 개념적 유형구분이 이루어지고 유형별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이 개

18)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2006.1)의 농업부문 내용을 토대로 수산부문에 적용해서 작성함

발되어야 함. 이와 함께 개별 어가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용함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다음의 정책과정에서 유효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연구자에게는 어느 유형의 어가가 얼마만큼 존재하며, 정책 실행 시 예산과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됨
 - 개별 어가는 경영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어느 정책에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 줌
 - 개별 정책 집행과정에서 대상자를 추출하고 지원규모와 방식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③ 전업어가의 육성 기반

- 어가단위로 등록된 정보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업어가의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업적 어가의 인건사항, 경영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개별 어가에 필요한 경영·기술 교육과 자금지원, 경영컨설팅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④ 소득안정정책의 기반

- 농가 수준의 어가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문에서도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가의 소득을 파악하여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그 기반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개별 어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개별 어가의 생산량과 판매가격, 출하기록, 각종 투입재의 영수증 거래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고, 모든 어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득안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가단위 소득안정정책이 도입될 경우에는 대상 어가에 대한 소득 파악을 어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1. 등록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어업경영체”로서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함
 - “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고, “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함
 -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임
 -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어업경영체에서 어업인은 시행령상에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임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

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따라서 등록대상은 법률상 어업관련 종사자 전체가 해당되므로 어가등록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자발적인 등록에 있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한 정책의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어업인”의 정의를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 방법

- 등록방법은 먼저 등록대상 어가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이러한 등록방법은 등록대상 전체를 등록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어가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음
- 어가들의 미등록으로 인해 미등록 어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의 홍보를 통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등록방법의 다른 대안으로 센서스 형식의 어업총조사를 통하는 방법과 임의등록의 방법, 정책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무등록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어업총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방식은 어가에 대해 일종의 사업자 등록에 해당하는 어가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별 어가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등록제의 취지에 맞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수조사에 많은 비용과 노력



- 이 소요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임의등록제 방식은 어가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하지 않는 어가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조건부 등록방식은 기본적으로 임의등록 방식을 유지하면서 임의등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가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임. 외국 사례에서도 축산등록제는 의무등록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등록제는 임의등록 내지 조건부 의무등록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방법은 임의등록의 원칙하에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정책사업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은 뒤, 그 번호를 계속 정책사업을 신청하게 함
- 이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록내용도 정책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초등록과 상세등록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등록하게 함. 기초등록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누구나 등록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상세등록은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어가만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됨

3. 등록내용 및 절차

가. 개요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위해 수산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산사업 중 어업경영체 등록과 연계할 사업을 분류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직불제를 고려하여 등록 정보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일반 수산사업 등록정보 현황

- 고밀도 부표보급지원사업
 - 어업의 종류/어장 면적/어업자 성명/어업자 주소/어장의 위치/총부표사용량(종류, 용량, 수량)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 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번호/업체 주소/양식품종/수조면적/연간생산량/연간수출량/양식형태(육상수조식, 순환경과식 등)/수조수/허가등록번호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정치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명/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생산자단체형태
 - 선명(업종)/톤급(선질)/진수년월일/어업허가번호(어선번호)/최종선박검사/설치장비명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명/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생산자단체형태/참여 어가수/어업면허(종류, 허가번호)
 - 선명(업종)/톤급(선질)/진수 년월일/어업허가번호(어선번호)/최종선박검사/설치장비명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어촌계명/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영어종사경력/학력/조직형태/참여가구
 - 영어규모 :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 재산상태 : 동산, 부동산, 현금(저축포함)
 -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관련자격증 취득 : 자격증명, 발급기관



다. 소득보전사업 등록정보 현황

-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품목/소재지(시군, 읍면,리동)/면허번호/허가번호/면허면적(m²)/생산기간/생산품목별 생산량/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

라. 어류양식현황조사

- 일반현황
 - 어가 또는 사업체명/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체사육가능 시설면적(시설방법에 따라 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축제식 등 m²와 ha)
- 시설현황
 - 양식어종별 시설방법, 시설면적(가로(m), 세로(m), 시설갯수, m², ha)
- 종사자수
 - 가족종사자(경영주, 처, 자녀, 동거친인척 등), 상시종사자(1개월 이상 고용), 임시종사자(1개월 미만 고용된자) 구분
- 양식어종 현황
 -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판매금액, 폐사량, 현사육량(크기별 구분), 사료투입량(생사료, 배합사료 구분)

마. 수산부문 직불제 시행시 등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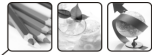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내 어가정보
- 고령어가은퇴직불제
 - 양식어종(어류, 패류, 해조류 등), 양식품종, 경영주 연령, 양식어업 종사기간, 면허취득 일자, 면허유형(개인, 어촌계),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부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 휴어직불제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 어종, 월별 생산량
- 어장휴식직불제
 -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 재해피해정보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혜액

바. 일반 등록사항 제안

- 기초등록사항
 - 기초등록에 속하는 사항은 수산부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서 주된 정보를 추출함
 - 기초등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경영주 성명, 사업장명, 주민번호, 신고거소지, 실거주지, 어촌계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번호, 배우자 관련(성명, 주민번호), 경영주 외 세대원 중 어업종사자(이름, 경영주와의 관계), 경영주의 어업인 해당 여부(1년 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여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어업현황 및 업종(어업구분, 종류, 명칭, 어업종류¹⁹⁾)
- 양식수산물 생산시설
 - 양식수산물 생산시설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어장소재지(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경영형태(자경, 임차), 공부상 어장면적, 실제 사용중인 어장면적(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축제식, 기타)
- 양식어업 생산규모
 - 어류양식 : 양식어종, 사육량(크기별), 지난해 총생산규모(생산량, 생산금액)
 - 기타양식 : 양식품목, 현사육량, 지난해 총생산규모(생산량, 생산금액)

19) 어업종류는 정치망어업(어업형태, 종류), 양식어업(대표품목, 면허면적), 근해어업(어업형태, 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연안어업(어업형태, 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구획어업(어업형태, 어선척수, 어구종류), 신고어업(어업형태, 어구종류), 내수면어업(대표품목, 어장면적)으로 분류함



- 어선어업 생산
 - 어선선적지(시도, 시군), 동력구분, 어업구분, 총톤수, 주요어종, 생산량, 생산금액
- 기타 정치망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내수면어업, 염산업
 - 대표품목 또는 대표어종, 지난해 총생산 규모(생산량, 생산금액)

사. 상세 등록사항 제안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 수산계 학교 졸업여부, 재산상태(동산, 부동산, 현금(저축포함)),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관련자격증 취득 여부(자격증명, 발급기관)

[표 5-7] 상세등록사항(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재산상태				자격증 취득 여부		관련 교육 이수 실적	
	합계	동산	부동산	현금	자격증명	발급기관	교육명	기간

- 경영관련 사항
 - 수산업 관련 자산과 경영성과를 등록하고 매년 갱신하여 어가의 경영이력으로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경영성과로서 조수입이나 매출액, 어업부채 등)
- 기타 등록사항
 - 과거 정책자금 등의 수혜 여부나 재해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등록함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혜액 등
- 직불제 대비 등록 사항
 -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부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판매금액, 폐사량, 현사육량(크기별 구분), 사료투입량(생사료, 배합사료 구분)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 어종, 월별 생산량

아.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사전확보자료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한 정보로 어가단위소득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품종별 표준어업소득 자료와 같은 사전확보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 고령어가는퇴직불제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표준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자. 등록절차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동일한 등록절차를 따름
 - ①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② 농관원은 제출한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농지, 축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전산처리
 - ③ 농관원에서 보낸 ‘전산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본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관원에 제출
 - ④ 농관원은 ‘본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한 후 그 결과를 농가별로 통보
- 단,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절차 없이 농관원에서 보낸 본신청서를 작성, 제출

4.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관리는 등록내용을 확인하는 검증시스템과 변경된 내용을 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등록과 갱신을 수행하고 검증하는 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가. 검증 체계 검토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정보는 정책사업 신청서와의 대조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현장 실사를 통한 검증을 병행함
 - 수산업과 달리 농업은 농업관련 전산시스템인 농지원부와 AGRIX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지만 수산부문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내부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정책사업 신청서와의 대조에 의한 검증과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장실사는 실사를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별도의 막대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것 보다는 표본조사 형태로 현장실사를 하고, 현장실사 결과가 등록내용과 다를 경우 향후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상 하자가 있는 등록정보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사업 신청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실사를 실시함
 - 현장 실사 표본의 크기는 정책사업 신청건의 5% 이상으로 하고, 부정확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삭감하고,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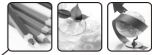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나. 갱신 방법

- 등록내용에 대한 갱신체계는 어업경영체가 자진 신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함
 - 등록내용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에 의한 내용갱신은 상시로 가능하게 하고, 자진신고 시기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최초로 신청하는 정책사업의 신청 전까지로 함
-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년도 12월 말을 정기적 업데이트 기준시기

로 정할 수 있음

다. 관리기구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구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 기구는 기존의 정책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기존 조직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할 조직으로는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관련 정책 신청서를 지자체가 일선에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어가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등록내용의 검증 및 현지실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지자체 관리는 등록기관의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업경영체 등록의 총괄적 관리가 어렵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등록실태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려움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기관으로서 정보 등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농관원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어업경영체 등록 결과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농관원이 기존에 농업관련 친환경농가인증, 재배면적 및 생산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수산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시군별 1개에 못 미치는 전국 94개 출장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어업경영체의 불편이 증대되는 단점도 있음



라. 등록번호 체제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향후 수산물이력제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으며 수산물의 세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 EU 국가들에서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15자리 숫자 체제를 사용하고 있음

[표 5-8] EU의 농가등록번호 체계

<국가번호>			<주 번호>			<광역지자체 번호>			<농가 개별번호>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EU 국가들이 사용하는 15자리 숫자 체계로 도입함
- 3자리 국가 번호 (당분간 공란)
- 2자리 도 번호
- 3자리 시군 번호
- 3자리 읍면 번호
- 4자리 어업경영체 개별번호

[표 5-9] 우리나라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국가번호>			<도 번호>		<시군 번호>			<읍면 번호>		<어업경영체 개별번호>		

5. 향후 추진 과제

가. 관리 조직의 선정, 인력과 예산 배정 필요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관리

하는 조직을 선정하고, 그 관리 조직에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도록 함

나. 직불제 실시에 대비한 등록체계 마련

- 향후 실시하게 될 수산부문 직불제의 추진경과에 맞추어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다.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등록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라.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 직불제의 단계적 도입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공익형 직불제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마. 실질적인 어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

- 어가별 등록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어가단위 소득안정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6. 어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

가.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① 어업·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

- 어업·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부문과 같은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보호, 어장환경개선, 어로문화의 계승, 지구온난화 방지 등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대책 시행을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함(『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제47조의 공익기능 증진)



- 농업부문에서는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 2009.1.6))

② 경영위기 및 자원보호 노력으로 어업소득이 감소한 어가를 위한 경영안정형직불제 도입

-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어가의 경영위험을 막기 위해 어가소득안정대책 마련 필요
- WTO 협상 및 FTA 확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가격하락, 유류비, 사료비 급등에 따른 생산비의 폭등으로 어가의 어업소득의 하락 대비한 어가소득 안정 대책 마련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FTA로 인한 품목별 피해대책을 어가단위의 소득 지원으로 전환하여 피해대책의 실효성을 높임
 - 특정품목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물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및 경영비 변동으로 인한 소득 증감까지 보전하여 어가의 실질적 소득·경영안정 도모
- 또한 TAC 참여어가 및 자율관리어업 참여어가의 어업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통해 자원보호형 지원을 확대함
 - 2009년 현재 TAC 참여어가는 1,500어가이며,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가는 732개소 54천 어가임

③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농업부문은 소득안정 정책으로 복지대책과 직불대책으로 접근
 - 농업부문에서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대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의 공익형 직불, 농가별 경영위험 관리 목적의 경영안정형 직불을 주업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주업농가는 『경지규모가 30a(3,000㎡)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

업 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임. 주업어가도 경지규모를 제외하고 같은 기준임

④ 수산부문에는 직불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안정 대책의 부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8)」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으로 어업경영체가 제외되어 있음
- 향후 동법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수산부문의 직접지불제를 개발하여 포함시키거나 별개의 장에서 수산부문의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직접지불제는 농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조의 수단으로서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법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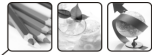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나. 추진 목표 및 방향

-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으로 소득안정망 체계 구축 및 공익기능을 증진시킴
- 경영 리스크가 큰 어가와 자원회복 노력 어가에 대한 어가별 경영위험을 관리함
- 농가 수준의 어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

다. 공익형 직불제

① 추진 가능한 공익형(가산형) 보조금의 마련

- 공익형 보조금은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개선, 어로문화의 계승, 지역사회 유지,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수산부문의 공익형 보조금은 농업부문의 공익형 기본직불에 상호준수의무 요건을 강화한 (가칭) 가산형 직불 방식에 해당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휴어제 및 어장휴식년제의 실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휴어 및 어장휴식에 따른 소득보전을 통해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도서지역 등 수산부문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공도화(空島化)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지구온난화 방지, 어로문화의 개선 등과 같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함

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개념 : 수산업의 물적 토대인 어장이 위치한 지형적·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사회생활의 전반적 발전과정에 영향을 받는 개념이 포함됨
 - 조건불리지역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
- 사업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어가경제 안정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으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 육지로부터 8km 이하 떨어져 있어도 선박운항 횟수가 하루 3회 미만인 도서
- 지원방법 및 수준 : 지원기준으로는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을 지원하거나 도서 정주여건의 조건불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
- 지원조건(이행조건) : 조건불리지역 지원을 위한 이행조건으로 대상 어촌계는 어업 및 어장관리, 종묘방류, 경관보전, 재난구호, 어장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③ 휴어직불제

- 개념 : 수산자원의 보존 및 자원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중 특정 어종에 대한 어업활동을 금지함으로 이로 인해 상실되는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지원함
- 사업목적 : 어업활동 제한에 따라 상실되는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업경영안정 및 어촌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수산자원회복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자 또는 미성어 또는 소형어를 어획하는 어업자가 지원대상이 됨
- 지원방법 및 수준 : 휴어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수산자원감소에 대한 책임론에 입각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등이 각각 1/3씩 균등 부담하도록 함
 - 휴어수준은 휴어기간 중 상실되는 어업이익과 변동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감소책임론에 입각하여 일부 어업인도 부담하고, 고정비에 대해서는 전액지원하도록 함
- 지원조건(이행조건) : 일정 기간 동안 휴어를 실시함

④ 어장휴식직불제

- 개념 : 어장휴식직불제는 어장휴식기간 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 손실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제도임
 - 어업소득 손실분은 어장휴식을 하지 않고 어업을 계속할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임
- 사업목적 : 어장휴식에 대한 지원으로 어업인의 적극적인 어장휴식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환경을 복원함
- 지원대상 : 어장휴식제에 참여하는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어업인은 어장휴식 직전에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실제로 양식어업을 하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및 수준 : 어업소득의 50%를 기본적인 지원수준으로 설정함
- 지원조건(이행조건) : 어장휴식 기간 동안 해당 양식어장에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어장휴식제의 관리가 쉽도록 면허권 단위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고, 지분권자가 여럿이면 이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면허권으로 신청해야 함

⑤ 고령어가은퇴직불제

- 개념 : 고령어가은퇴직불제는 양식면허를 국가에 반납하고 어업현장에서 은퇴하는 어업인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함
- 사업목적 : 고령어가 은퇴 어업인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고령어가 은퇴의 대상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전체 양식어가의 25.5%인 5,909어가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80세까지로 하여 어가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개인면허를 보유하거나 어촌계 내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동 사업의 신청자는 어업경영 은퇴의 조건으로 어업면허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기존 면허권의 재취득 및 신규 면허의 취득은 금지됨
- 지원방법 및 수준
 - 고령어가 은퇴에 대한 지원은 지원 총 금액을 일시불 보다는 매월 또는 분기별 연금형식으로 분할 지급함

⑥ 기타 직불제 및 추진로드맵

- 위에 언급된 직불제 이외에 검토되는 직불제로는 어촌경관직불제와 친환경어업직불제 등이 있음

[표 5-10] 직불제 추진 로드맵

직불제 명칭		'10	'11	'12	'13	'14~
공익형	조건불리지역	- 도입방안 마련 - 시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본 사업	본 사업
	휴어	- 도입검토				
	어장휴식	- 도입검토				
	어촌경관		- 도입검토	-도입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		
	고령어가은퇴		- 도입검토	- 도입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		
	친환경어업		- 도입검토			
경영안정형		- 도입방안 검토	- 시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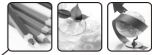
라. 어가경영안정형 직불제

① 개념

-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바탕 위에 어가별 경영위험까지 관리하는 직불제임
 - 현재 추진 가능한 공익형 직불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휴어직불제, 어장 휴식직불제, 고령어가은퇴직불제 등은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유지와 대부분의 어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어가별 경영위험까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어가당 생산되는 품목의 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증감으로 인해 어가별 어업소득이 기준소득 이하로 하락시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임

② 보조금 지원의 원칙

- 수산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무역왜곡, 가격왜곡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자원남획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금지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감안하여 어가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③ 대상어가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 중 전문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양식어업 어가는 전문어가면 가능하지만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TAC 참여어가에 한정함
 - 전문어가는 '06년 이후 어가소득이 40백만 원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주업 어가 중 일반어가는 어가소득이 20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전문어가는 어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 수입 2,000만 원 이상 어가임)
 - 수산업의 여건상 보조금의 조건이 생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TAC 참여 어가 및 자율관리어업 참여어가를 대상으로 함
 - 현재 TAC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임

④ 대상품목 및 업종

- 대상품목은 지원 대상 어가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전 품목 대상을 원칙으로 함
 - 어선어업의 경우 TAC 참여 어가 및 자율관리어업 참여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양식어업의 경우 FTA 등의 체결에 따른 과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생산금액이 가장 많은 넙치, 조피볼락, 김, 전복, 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함('08년 기준으로 5개 양식품목의 생산금액은 총 양식생산금액의 72.3%를 차지함)
 - 품목별 생산비·소득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산출 방식으로 어가별 소득과약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통계가 완비되는 조건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감

⑤ 지급기준

- 경영비 변동을 고려한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어업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 어업소득은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임

⑥ 보전수준

- 소득 감소분의 85% 수준으로 설정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맞춤
 - 농업의 경우 85% 수준으로의 설정을 검토 중이며, 쌀변동직불 85%, FTA피해보전직불 80%임

⑦ 발동기준 및 지급한도

- 어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소득 대비 당해소득이 일정수준으로 하락 시 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 상한을 설정함
 - 당해소득이 기준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 시 발동하면, 어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소득감소가 있을 경우 보상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어업 내 양극화 심화, 저소득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지급한도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⑧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의 관계

- 우선은 자연재해에 의한 소득하락분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어가단위 소득안정제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산물 품목별 표준 소득을 산출하여 이를 지표로 할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어업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해보험제도가 필요함
 - 또한, 직불금 지급시 재해보험 수혜액을 제외할 경우 재해보험 가입 및 미가입 어가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⑨ 전제조건-어가 및 어업경영체의 소득정보 파악 필요

-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가의 소득정보 파악이 필수이나 어가별 경영정보 파악 및 확인을 위한 통계기반이 매우 취약함



- 농업에서는 지역, 품종, 면적, 가격 등의 정보를 통해 농가의 평균적인 소득 추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산부문은 현재까지 등록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인 소득을 도출하기 어려움
- 농업의 경우 통계청(13품목) 및 농진청(52품목)에서 매년 품목별 표준소득자료(조수입, 경영비, 소득 등)를 생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간접적인 농가별 소득 파악이 가능함
- 소득에 대한 신고는 지원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부문에서는 품목별 전국평균가격을 면적에 적용하여 판매수입을 산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품목별 표준 소득율을 감안하여 소득을 산출함
- 수산업의 경우 품목별 표준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간접적 어가별 소득 파악이 어려움
 - 수산부문의 공익형 소득안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득자료 도출을 위해 품목별 표준소득자료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수산부문은 어가별로 생산하는 품목이 다양하고, 톤수, 생산량, 생산지 면적 등의 등록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
 -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면적 및 생산량, 가격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소득 자료 도출이 용이한 양식어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어선어업은 소득산출에 관한 표준화 작업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Chapter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본 연구는 조건불리지역 실태 조사 및 DB 구축과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향의 2개의 주제 하에서 추진됨
- 우선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는 2011년 시범사업 실시에 대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준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선행연구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2008. 12)』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도입 및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 또한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타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그리고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는 이미 농업분야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직불제사업의 수산부문 실시와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음
 -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등 향후 효율적인 수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필요하며
 - 수산정책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과 검증자료로 활용의 가치가 많음
 - 특히 도입 예정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또는 다양한 수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업경영체 단위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부정·중복 수혜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함
-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함



제2절 정책제언

1.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직불제는 수산분야에서 새로이 도입·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어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시행 방안을 토대로 행정상의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2011년 시범사업에 임해야 할 것임
 -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선정기준, 대상어가, 지원기준 및 단가, 실제 어업경영자 판단방법 등 조건불리지역 기준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함
-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별 업무 및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함
 - 지자체, DB관리기관, 지역 및 대상어가 판단 기관 등에 대한 역할과 업무 분담이 필요함
- 지원기준인 어업소득 차액을 산정하는 근거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분류평정' 자료임. 이 자료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은 정도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관리하는 조직을 선정하고, 그 관리 조직에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도록 함
- 향후 실시하게 될 수산부문 직불제의 추진경과에 맞추어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등록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기반으로 공익형 직불제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어가별 등록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어가단위 소득안정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참 고 문 헌

- 김태곤,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농정연구속보 제61권), 2009. 10.
- 김태곤, “직접지불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전망 2006 : 세계속의 한국농촌』, 2006.1
- 농림부,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1
- 농림수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2008. 12.
-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2009. 6.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각 년도.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각 년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영체별 소득안정화 방안 연구”, 2001.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2204.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정책연구보고), 2005. 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2002. 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발농업 직접지불제 연구」(정책연구보고), 2008. 2.
- 행정자치부, 전국도서현황, 2000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부록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2. 조건불리지역 리스트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4. 지자체 제안의견
5. 도상연습
6. 도서 공(空)도화방지대책
7.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표 1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현황

지역대분류	지역중분류	지역소분류	도서수	어촌계수	어가수
경남	통영시	산양읍	1	1	42
		한산면	7	26	995
		사랑면	3	14	756
		욕지면	5	18	516
경북	울릉군	북면	1	3	115
		서면		4	164
		울릉읍		4	445
전북	군산시	옥도면	14	11	1388
	부안군	위도면	5	6	5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8	11	994
	서천군	장항읍	1	1	64
경기	안산시	단원구	2	1	75
	화성시	우정읍	1	1	39
제주	제주시	추지면	4	5	377
	서귀포시	대정읍	1	1	68
인천	강화군	-	4	3	113
	옹진군	-	18	21	2298
	종구	-	2	4	230
전남	고흥군		2	2	184
	신안군	도초면	4	3	172
		비금면	3	3	188
		신의면	4	3	152
		안좌면	6	8	436
		암태면	4	5	245
		압해면	5	3	109
		자은면	1	2	109
		장산면	1	4	251
		증도면	4	1	55
		임자면	1	1	58
		하의면	9	4	214
	흑산면	10	19	1,384	
	여수시	남면	9	15	776
		삼산면	7	11	704
		화정면	3	3	231
	영광군	낙월면	7	4	103
	완도군	금당면	3	10	597
		금일읍	10	23	1,827
		노화읍	11	18	1,189
보길면		2	12	814	
생일면		2	6	491	
소안면		4	15	1,003	
신지면		1	1	1	
청산면		5	19	1,224	
진도군	의신면	2	1	10	
	조도면	33	23	1,784	
총계			230	354	23510

2.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1	인천	강화군	서검도	사하	16	42	0
2	인천	강화군	아차도, 주문도	서도	66	105	0
3	인천	강화군	볼음도	볼음	31	56	0
4	전남	고흥군	연흥도	연흥	64	22	0
5	전남	고흥군	시산도	시산	120	36	33
6	전북	군산시	연도	연도	74	48	0
7	전북	군산시	말도	말도	31	13	0
8	전북	군산시	비안도, 두리도	비안	175	52	0
9	전북	군산시	방축도	방축	65	55	0
10	전북	군산시	장자도, 대장도	장자	60	29	0
11	전북	군산시	명도	명도	34	21	0
12	전북	군산시	어청도	어청	184	87	13
13	전북	군산시	관리도	관리도	47	29	2
14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유	220	1	150
15	전북	군산시	무녀도	무녀도	179	65	100
16	전북	군산시	개야도, 죽도	개야도	319	115	50
17	충남	보령시	원산도	점치	120	120	0
18	충남	보령시	장고도	장고도	85	73	5
19	충남	보령시	고대도	고대도	54	48	0
20	충남	보령시	효자도	효자도	65	62	3
21	충남	보령시	효자도	육소	62	45	6
22	충남	보령시	외연도	외연도	132	113	17
23	충남	보령시	호도	호도	40	49	0
24	충남	보령시	삼시도	삼시도	145	128	5
25	충남	보령시	녹도	녹도	50	40	10
26	충남	보령시	원산도	선진	98	61	-
27	충남	보령시	원산도	진창	143	126	0
28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하왕등도	왕등	25	23	0
29	전북	부안군	위도	진리	135	105	0
30	전북	부안군	위도	치도	104	65	0
31	전북	부안군	위도	벌금	76	63	2
32	전북	부안군	식도	식도	77	51	0
33	전북	부안군	위도, 거륵도	대리	103	31	30
34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가파도	68	90	0
35	충남	서천군	유부도	송림	64	44	0
36	전남	신안군	상사치도, 하사치도	사치	22	23	0
37	전남	신안군	신도, 장재도, 대야도	신도	13	17	0
38	전남	신안군	흥도	흥도1구	98	75	2
39	전남	신안군	비금도	수대	64	20	1
40	전남	신안군	자은도	육지	68	135	0
41	전남	신안군	안좌도	우목	29	30	0
42	전남	신안군	대둔도	도목리	50	28	10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43	전남	신안군	평사도,고사도	고평사	27	19	0
44	전남	신안군	영산도	영산리	44	16	0
45	전남	신안군	다물도	다물도리	102	39	30
46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가거1구	169	91	0
47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2구	97	23	17
48	전남	신안군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57	66	25
49	전남	신안군	반월도	반월	99	45	0
50	전남	신안군	가란도	가란	33	43	0
51	전남	신안군	자라도	자라	101	69	15
52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가거2구	20	25	0
53	전남	신안군	흑산도	비리	28	9	21
54	전남	신안군	대둔도	수리	88	27	30
55	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상	49	23	3
56	전남	신안군	매화도,황마도,마산도	매화	42	111	0
57	전남	신안군	하태도	하태	57	29	15
58	전남	신안군	고이도	고이	34	102	0
59	전남	신안군	상하태도, 기도	상태	68	240	100
60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익금	67	53	17
61	전남	신안군	장산도	오음	30	28	1
62	전남	신안군	안좌도	마진	-	85	25
63	전남	신안군	흑산도	진리1구	181	97	0
64	전남	신안군	수치도, 상수치도	수치	48	47	0
65	전남	신안군	마진도	마진	51	16	14
66	전남	신안군	옥도	옥도	37	15	25
67	전남	신안군	장산도	다수	92	31	19
68	전남	신안군	재원도	재원	58	41	0
69	전남	신안군	자은도	고장	41	16	15
70	전남	신안군	안좌도	구대	50	95	30
71	전남	신안군	추포도	추포	25	36	2
72	전남	신안군	흑산도	진리2구	40	10	0
73	전남	신안군	흑산도	심리	27	8	37
74	전남	신안군	팔금도	안창	48	114	0
75	전남	신안군	도초도	죽련	55	67	0
76	전남	신안군	안좌도	안창	87	241	0
77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1구	176	41	69
78	전남	신안군	비금도	원평	76	816	400
79	전남	신안군	암태도	송곡	10	33	0
80	전남	신안군	흑산도	사리	43	13	2
81	전남	신안군	병풍도,소악도, 소기점도,대기점도	병풍	55	56	30
82	전남	신안군	도초도	이곡	60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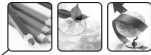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83	전남	신안군	하의도, 개도	대리	135	442	0
84	전남	신안군	상하태도	노은	57	190	10
85	전남	신안군	당사도, 초란도	당사	94	33	0
86	전남	신안군	홍도	홍도2구	45	25	0
87	전남	신안군	장산도	팽진	78	33	-
88	전남	신안군	만재도	만재도	41	4	26
89	전남	신안군	상태도, 중태도	상중태	40	7	28
90	전남	신안군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병	29	19	0
91	전남	신안군	대둔도	오리	38	9	25
92	경기	안산시	풍도, 육도	풍도	75	64	0
93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함구미	27	30	0
94	전남	여수시	초도	진막	35	27	0
95	전남	여수시	금오도	장지	30	74	5
96	전남	여수시	안도, 부도	서고지	47	29	17
97	전남	여수시	초도	의성	49	45	8
98	전남	여수시	동도	유촌	61	39	4
99	전남	여수시	둔병도	둔병	27	24	0
100	전남	여수시	소두리도, 나발도	나발	20	22	0
101	전남	여수시	금오도	송고	34	30	0
102	전남	여수시	연도	역포	68	61	0
103	전남	여수시	소거문	소거문	8	11	0
104	전남	여수시	초도	대동	50	36	8
105	전남	여수시	금오도	두모	47	21	0
106	전남	여수시	연도	연도	137	129	0
107	전남	여수시	금오도	심미	23	84	0
108	전남	여수시	금오도	대소여	57	53	0
109	전남	여수시	손죽도	손죽	15	11	5
110	전남	여수시	대횡간도, 소횡간도	횡간	48	36	6
111	전남	여수시	여자도	여자	129	86	0
112	전남	여수시	서도	서도	151	63	-
113	전남	여수시	동도	죽촌	63	43	4
114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원포	46	19	0
115	전남	여수시	안도	안도	120	98	15
116	전남	여수시	대두리도	두라	49	59	0
117	전남	여수시	거문도	거문	170	26	2
118	전남	여수시	금오도	우학	23	76	0
119	전남	여수시	적금도	적금	75	33	25
120	전남	여수시	서도	덕촌리	80	33	100
121	전남	여수시	평도	평도	22	5	11
122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석만도, 오도	안마	22	82	0
123	전남	영광군	송이도	송각	40	57	3
124	전남	영광군	하낙월도	하낙월	12	46	0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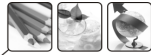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125	전남	영광군	상낙월도, 대각시도	상낙월	29	66	76
126	인천	옹진군	울도	울도	43	23	0
127	인천	옹진군	백아도	백아	49	20	0
128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	소이작	47	34	5
129	인천	옹진군	백령도	연지	70	79	14
130	인천	옹진군	문갑도	문갑	52	20	5
131	인천	옹진군	지도	지도	20	5	0
132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3리	62	106	30
133	인천	옹진군	이작도	이작	77	52	25
134	인천	옹진군	모도	모도	27	25	10
135	인천	옹진군	승봉도	승봉리	69	69	8
136	인천	옹진군	소청도	소청	116	65	0
137	인천	옹진군	덕적도	덕적	305	98	202
138	인천	옹진군	소야도	소야	82	28	112
139	인천	옹진군	신도, 시도	신시	148	125	0
140	인천	옹진군	장봉도	장봉	217	186	50
141	인천	옹진군	대청도	옥죽	85	17	40
142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선진	161	18	10
143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	60	327	0
144	인천	옹진군	자월도	자월	147	30	190
145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소연평	57	10	3
146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연평	404	110	40
147	전남	완도군	소모도	모북리	30	21	0
148	전남	완도군	대모도	모동리	41	33	0
149	전남	완도군	금당도	세포	20	14	1
150	전남	완도군	대장구도	내리	2	2	0
151	전남	완도군	대제원도	내리	2	2	0
152	전남	완도군	후장구도	내리	6	4	2
153	전남	완도군	마안도	내리	6	5	0
154	전남	완도군	어룡도	내리	-	12	0
155	전남	완도군	넙도	내리	126	44	10
156	전남	완도군	황간도	황간도	70	65	0
157	전남	완도군	평일도	척치리	151	94	0
158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장리	30	4	0
159	전남	완도군	소안도	동진리	42	75	5
160	전남	완도군	노화도	삼마리	49	33	0
161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읍리	60	51	0
162	전남	완도군	우도	우도	27	9	0
163	전남	완도군	소안도	맹선리	82	77	0
164	전남	완도군	소안도	북암리	29	32	0
165	전남	완도군	구도	구도	18	23	0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166	전남	완도군	보길도	월송리	30	30	0
167	전남	완도군	다량도	다량도	35	12	0
168	전남	완도군	청산도	신흥리	50	38	1
169	전남	완도군	청산도	중흥리	19	17	0
170	전남	완도군	장도	장도	14	7	0
171	전남	완도군	당사도	당사	53	25	0
172	전남	완도군	보길도	정자리	89	34	10
173	전남	완도군	모항도	동촌	1	13	7
174	전남	완도군	노화도	구목리	28	10	0
175	전남	완도군	청산도	당리	71	64	0
176	전남	완도군	보길도	백도리	64	41	8
177	전남	완도군	금당도	육동	68	36	0
178	전남	완도군	청산도	상서리	30	31	0
179	전남	완도군	황제도	황제도	13	8	0
180	전남	완도군	소안도	소진	52	43	0
181	전남	완도군	보길도	여항	38	21	12
182	전남	완도군	신도	신도	11	11	0
183	전남	완도군	보길도	통 리	85	75	4
184	전남	완도군	청산도	진산	43	37	0
185	전남	완도군	생일도	금곡리	86	53	0
186	전남	완도군	금당도	가학	105	59	30
187	전남	완도군	생일도	유촌리	73	53	12
188	전남	완도군	청산도	원동리	17	10	0
189	전남	완도군	보길도	예송리	98	70	30
190	전남	완도군	보길도	보옥리	38	20	1
191	전남	완도군	소안도	부상리	29	29	5
192	전남	완도군	보길도	정동리	59	46	0
193	전남	완도군	비견도	비견리	39	10	0
194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도청리	340	161	4
195	전남	완도군	소량도	소량	52	48	0
196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국화리	30	25	0
197	전남	완도군	원도	원도	20	7	0
198	전남	완도군	노화도	미라리	99	41	35
199	전남	완도군	노화도	충도리	88	112	0
200	전남	완도군	금당도	울포	102	23	1
201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리	31	19	0
202	전남	완도군	소안도	서중리	24	11	40
203	전남	완도군	대모도	모서리	65	33	7
204	전남	완도군	금당도	차우	92	75	15
205	전남	완도군	청산도, 장도	지리	124	98	0
206	전남	완도군	예작도	예작	19	14	10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207	전남	완도군	노화도	북고리	94	39	30
208	전남	완도군	평일도	일정리	77	48	17
209	전남	완도군	노화도	당산리	138	73	57
210	전남	완도군	섬도	섬도	8	0	0
211	전남	완도군	총도	총도	77	29	16
212	전남	완도군	평일도	감목리	164	1	39
213	전남	완도군	평일도	상화전	33	9	0
214	전남	완도군	노화도	포전리	97	0	100
215	전남	완도군	생일도	서성리	155	89	0
216	전남	완도군	생일도	용출리	66	35	0
217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서리	118	19	14
218	전남	완도군	노록도	노록리(당산 어촌계소속)	12	10	0
219	전남	완도군	금당도	봉동	30	23	0
220	전남	완도군	노화도, 장사도	이목리	84	15	75
221	전남	완도군	허우도	허우	7	7	0
222	전남	완도군	노화도	동고리	34	79	0
223	전남	완도군	평일도	구동리	127	52	0
224	전남	완도군	마삭도	마삭리	10	5	0
225	전남	완도군	소안도	이목	39	11	2
226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동촌리	44	1	39
227	전남	완도군	생일도	굴전리	38	15	0
228	전남	완도군	금당도	삼산리	63	37	0
229	전남	완도군	소안도	월항리	72	31	22
230	전남	완도군	보길도	선창리	89	78	0
231	전남	완도군	청산도	권덕	27	17	4
232	전남	완도군	평일도	사동	112	38	50
233	전남	완도군	보길도	중리	150	54	44
234	전남	완도군	평일도	궁항리	58	23	0
235	전남	완도군	청산도	청계리	51	47	0
236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도락	95	79	0
237	전남	완도군	여서도	여서리	57	10	33
238	전남	완도군	평일도	월송리	180	74	0
239	전남	완도군	소안도	가학	106	21	55
240	전남	완도군	노화도	신목리	10	2	0
241	전남	완도군	노화도	잘포	77	24	27
242	전남	완도군	노화도	천구	12	55	1
243	전남	완도군	덕우도	덕우리	73	26	42
244	전남	완도군	평일도	하화전	77	14	0
245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리리	172	26	128
246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부황리	55	15	20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247	전남	완도군	금당도	신흥	71	46	0
248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도장리	187	99	37
249	전남	완도군	평일도	신평리	111	15	45
250	전남	완도군	노화도	신리	40	61	0
251	전남	완도군	서넙도, 죽굴도	서리	74	49	5
252	전남	완도군	넙도	방축리	98	31	44
253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동백리	172	54	121
254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동리	97	88	0
255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동송리	90	42	-
256	전남	완도군	구룡도	포전리	3		0
257	경북	울릉군	울릉도	남양	65	6	0
258	경북	울릉군	울릉도	사동	16	4	0
259	경북	울릉군	울릉도	학포	16	18	0
260	경북	울릉군	울릉도	통구미	34	25	0
261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도동	98	1	98
262	경북	울릉군	울릉도	천부	54	21	0
263	경북	울릉군	울릉도	죽암	17	11	2
264	경북	울릉군	울릉도	신흥	50	1	47
265	경북	울릉군	울릉도	저동	281	1	180
266	경북	울릉군	울릉도	현포	44	7	46
267	경북	울릉군	울릉도	태하	49	1	50
268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목리	19	24	4
269	제주	제주시	상추자도	영흥	120	36	60
270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추포도	예초	20	11	24
271	제주	제주시	횡간도, 상추자도	대서	159	35	95
272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신양	59	21	-
273	인천	중구	무의도	큰무리	87	48	29
274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	40	49	0
275	인천	중구	소무의도	소무의	30	22	0
276	인천	중구	무의도	포내	73	32	30
277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동막	0	24	0
278	전남	진도군	죽향도	죽향도	0	16	0
279	전남	진도군	소마도	중도	30	21	0
280	전남	진도군	갈목도, 진목도	중도	76	15	0
281	전남	진도군	관사도	중도		15	0
282	전남	진도군	상하죽도, 서거차도	서거차	80	49	8
283	전남	진도군	맹골도, 죽도, 광도	맹골도 (서거차소속)	41	32	0
284	전남	진도군	하조도	읍구	18	69	0
285	전남	진도군	청등도	읍구	0	10	3
286	전남	진도군	나배도	나배	53	20	0
287	전남	진도군	모도	나배(모도리)	12	7	1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288	전남	진도군	상조도	맹성	164	47	0
289	전남	진도군	상조도	동구(여미리 어촌계 소속)	0	53	0
290	전남	진도군	대마도	대마	77	60	0
291	전남	진도군	상조도	여미	0	16	0
292	전남	진도군	관매도	관호리	-	46	4
293	전남	진도군	하조도	유토(창유리 어촌계소속)	0	33	0
294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동육(동거차 어촌계소속)	89	39	0
295	전남	진도군	상조도	당도	0	20	0
296	전남	진도군	하조도	창리	617	121	8
297	전남	진도군	상조도	울목	0	10	0
298	전남	진도군	하조도	산행	0	70	20
299	전남	진도군	관매도	관매	184	53	7
300	전남	진도군	죽향도	신전	19	41	3
301	전남	진도군	하조도	명지	0	28	10
302	전남	진도군	가사도,가사혈도, 광도, 성남도, 송도, 소성남도, 양덕도	가사	192	107	30
303	전남	진도군	상구자도, 하구자도	구자	10	11	0
304	전남	진도군	독거도, 독거혈도, 탄향도, 슬도	육동	46	50	0
305	전남	진도군	내병도	옥도		14	0
306	전남	진도군	눌옥도, 옥도, 외병도	옥도	86	25	0
307	경남	통영시	상도	답포	31	29	0
308	경남	통영시	상도	내지	68	32	0
309	경남	통영시	비진도	외항	40	37	0
310	경남	통영시	하도	읍포	78	15	0
311	경남	통영시	하노대도	하노대	17	14	0
312	경남	통영시	상노대도	상노대	20	13	3
313	경남	통영시	하도	능양	52	53	0
314	경남	통영시	한산도	호두	77	65	0
315	경남	통영시	욕지도	불곡	20	21	2
316	경남	통영시	한산도	두역	35	27	0
317	경남	통영시	하도	먹방	21	11	6
318	경남	통영시	한산도	창좌	67	68	0
319	경남	통영시	하도	백학	24	13	0
320	경남	통영시	상도	대항	46	31	0
321	경남	통영시	욕지도	육동 산외	7	15	0
322	경남	통영시	용호도	용초	75	25	0
323	경남	통영시	한산도	장작지	18	11	0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324	경남	통영시	추도	추도	42	30	0
325	경남	통영시	한산도	염호	55	21	10
326	경남	통영시	추봉도	곡용포	30	23	1
327	경남	통영시	욕지도	도동	10	20	0
328	경남	통영시	죽도	죽도	40	30	2
329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야암	55	65	0
330	경남	통영시	상도	사금	16	13	0
331	경남	통영시	비진도	내항	46	40	0
332	경남	통영시	욕지도	자부	29	22	0
333	경남	통영시	매물도	매죽	47	41	0
334	경남	통영시	한산도	소고포	31	20	4
335	경남	통영시	추봉도	추원	30	33	7
336	경남	통영시	한산도	관암	29	29	0
337	경남	통영시	한산도	하전	55	42	0
338	경남	통영시	욕지도	유동	21	19	0
339	경남	통영시	상노대도	산등	20	10	0
340	경남	통영시	욕지도	목청송	20	16	0
341	경남	통영시	두미도	두미 북구	17	16	0
342	경남	통영시	하도	외지	39	26	0
343	경남	통영시	한산도	두억1구	22	19	0
344	경남	통영시	한산도	고포	38	23	3
345	경남	통영시	한산도	서좌	22	16	0
346	경남	통영시	욕지도	옥동 산내	65	39	16
347	경남	통영시	상도	옥동	63	8	4
348	경남	통영시	추봉도	예곡	35	32	0
349	경남	통영시	추봉도	봉암	43	42	0
350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	소매물도	13	13	0
351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서부	65	32	6
352	경남	통영시	두미도	두미 남구	16	23	0
353	경남	통영시	수우도	수우도	24	22	0
354	경남	통영시	연화도	연화	65	38	6
355	경남	통영시	연화도	우도	10	8	0
356	경남	통영시	하도	덕동	78	46	0
357	경남	통영시	욕지도	덕동	23	7	0
358	경남	통영시	상노대도	탄항	21	15	11
359	경남	통영시	욕지도	동제	70	43	0
360	경남	통영시	상도	진촌	148	23	7
361	경남	통영시	상도	돈지	68	25	-
362	경남	통영시	한산도	비산도	15	1	14
363	경남	통영시	한산도	동좌	30	2	4
364	경남	통영시	한산도	입정포	18	0	0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연번	지역대분류	시군구	관할도서	어촌계명	어가수	총 유효 데이터	누락 어가 수
365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29	9	0
366	경기	화성시	국화도	국화리	39	23	0

3.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type A

조건불리지역 실태에 관한 조사표(어촌계장용)

본 조사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시행에 앞서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및 생활상에 있어 조건불리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건불리지역이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어촌지역이 해당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조건불리지역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선진국(EU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75),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00)에서도 널리 시행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인적사항

성명 :

나이 :

어촌계명 :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 -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 지
현 거주지 주소					

2. 귀 어촌계에서 육지로 갈 때 이용하는 항과 그 직선거리는 몇 km입니까?

항 명		육지와의 직선거리 (km)
도서항	육지항	

3. 귀 어촌계가 위치한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의 1일 운항횟수는 몇 회입니까?

일반여객선	쾌속선	철부선	기타
(회/일)	(회/일)	(회/일)	(회/일)

4. 다음은 생필품 가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도서에서 다음의 품목이 거래되고 있다면 평균가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 격
항목	품목	규격	단위	
농축산물	쌀	일반미	20kg	(원)
	배추	가을배추	1kg	(원)
	쇠고기	한우 불고기용	500g	(원)
	돼지고기	국산 삼겹살	500g	(원)
연료유	무연 휘발유	-	1ℓ	(원)
	경 유	-	1ℓ	(원)
	등 유	실내용	1ℓ	(원)

5. 다음은 어촌계 면허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면 적	연간 생산량	주요품목 (3 가지)
마을어장	(ha)	(kg)	
협동양식어장	(ha)	(kg)	

6. 다음은 어선어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척수	연간 생산량	주요품목 (3가지)
	(척)	(kg)	
	(척)	(kg)	
	(척)	(kg)	
	(척)	(kg)	
	(척)	(kg)	

7. 다음은 귀 어촌계와 관련된 지역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특산품		관광자원 (자연/문화/역사)	축제
예시	굴 비	가마미해수욕장	영광갯벌마라톤축제
1			
2			
3			
4			
5			

type B

조건불리지역 실태에 관한 조사표(어업인용)

본 조사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시행에 앞서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및 생활상에 있어 조건불리성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건불리지역이란?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이 불리하여 어업소득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유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어촌지역이 해당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조건불리지역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선진국(EU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75),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00)에서도 널리 시행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1. 인적사항

성 명 :

연 령 :

어촌계명 :

어업 종사년수 :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 -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 지
현 거주지 주소					

2. 지난 1년간(2008. 1. 1~2008. 12. 31)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① 없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④ 3~6개월

⑤ 6~9 개월

⑥ 9개월 이상

3. 귀하를 포함하여 가족 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4. 지자체 제안의견

-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쟁점 사항들에 관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쟁점사항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음²⁰⁾

1. 조건불리지역의 기준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의 기준은 육지와 이격거리가 8km 이상인 도서 중 연륙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를 대상으로 함
- 하지만, 육지와 이격거리가 8km 이내인 도서일지라도,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도서는 조건불리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선행연구 결과, 육지와 도서간의 여객선 평균 운항횟수는 3.4회로, 평균 여객선 운항횟수에 미달하는 도서를 포함하는 경우 조건불리지역 대상도서는 20%(252개에서 350개 도서로 증가) 가량 증가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를 포함할 경우 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향후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거나 평균 운항 횟수 미만으로 운항되는 도서는 조건불리지역으로 간주하여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2. 조건불리지역의 등급화

- 조건불리지역간에도 어업형태별, 이격거리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등급화 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조건불리지역을 이격거리에 따라 등급화할 수 있지만, 한 도서에 어선, 양식, 맨손어업을 하는 가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구별로도 하나의 어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어업형태별 차별화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이격거리에 따라 등급화를 할 경우, 이격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의 불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차별화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0) 일시 : 2009. 11. 05(목) 대전역, 참석자 : 실무진, 연구진, 시도 및 시군 공무원



3. 직불금의 수령 주체

-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직불금을 어가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지, 어촌계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이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각 의견에 따른 장단점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대안별 검토

구분	수령 주체	직불금 사용	장단점
1안	어가 및 어촌계	어가소득 안정과 어촌계 사업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을 어가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직불금의 규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음.
2안	어가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함. • 행정비용과 절차가 간단함.
3안	어촌계	어촌계사업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어업여건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여러 도서가 하나의 어촌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비(非)어촌계 어가의 경우 직불금의 수혜를 받기 어려움.

-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중 어촌계에 지급하여 어가 및 어촌계에 7 대 3의 비율로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고, 어촌계 사업도 실시하여 어업여건 향상을 위해 사용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4. 제안 의견

주 제	토론자	내 용
조건불리지역의 대상	신안군, 통영시	해상의 모든 도서를 포함해야 한다.
	서천군	어업조건은 도서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자.
	인천시	여객선 미취항 도서를 포함해야 한다.
	진도군	도선이 다니지 않는 섬을 포함해야 한다.
직불금액의 차별화	전라북도	조건불리지역이라도 가구별, 어업형태별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금액을 차별화해야 한다.
	울릉군	조건불리지역이라도 이격거리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화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지자체	개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업보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촌계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신안군	지자체에 지급하여 지자체가 어촌계를 지원해야 한다.
	경상북도	어촌계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진도군	어촌계 단위로 지급하여 어촌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	어촌계 단위로 지원하여 어업여건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기본원칙은 개인지급이 맞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촌계 지급으로 해야 한다. 개인지급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촌계에 지급하면 최소한의 부정수급자는 걸러질 것이다. 실제 어촌계의 20%는 비어업인이다. 이는 어촌계장이 필터링할 것이다. 어촌계에 지급하여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전남도	개인보다 어촌계 단위의 지급이 필요하다. 기관별 소득측정기준이 틀리다. 소득분석을 위한 객관적 방법 필요하다. 또한 고소득 어가에 대한 지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광군, 보령시	개인지급이 적절하다.
	고흥군	어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정기준만 명확하다면 개인 지급 해야 한다. 또한, 맨손어업자들과 비거주어업인들은 제외해야 한다.
충남도	어촌계 혹은 개인지급은 각 지자체가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하자.	

주 제		토론자	내 용
지원 대상		경상북도	어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가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용진군	비어촌계원이 어업인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맨손어업자 포함여부	영광군	맨손어업자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어촌계장과 이장이 증명하도록 하자.
		경북도청	어촌계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어촌지도소이다. 이를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	맨손어업자들을 포함하면 비어업인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 한 가구당 한명씩 인정해 주자.
		경상북도	지역유지 기능을 하는 고령자들의 대부분이 맨손어업종사자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맨손어업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어가 뿐만 아니라 선원과 같은 어업종사자도 지원해야 한다.
	어업종사자 포함여부	진도군	진도군의 경우 양식장에서 평균 10명 가량 고용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업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경북도	양식장이나 선원 등 6개월 이상 종사자는 포함시키되, 운영위원회 조직하여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충남도	어가만 대상으로 하자. 어업종사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다.
		경북도	주민등록상 조건불리지역 도서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는 어가판정위원회(어촌계장, 이장, 자율관리어업)의 심의를 거쳐 인정해 주도록 하자.
		신안군	지역 내 어선 300여척에 평균 5~6명이 승선하나 이들은 어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업종사자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5. 도상연습

1. 도상연습 개요

-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도상연습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확인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상연습 기간은 1차, 2차에 걸쳐 진행하였음
 - 1차 도상연습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시행되었으며, 대상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국화어촌계 39개 어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 2차 도상연습은 2009년 2월 25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39일간 시행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여수시, 고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를 대상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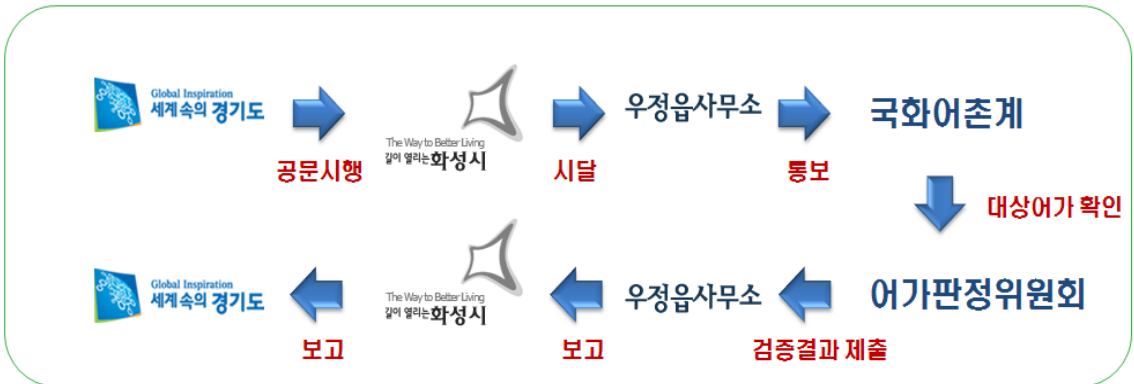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목 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자 선정 및 확인절차 검증
1차 도상연습	기 간	2009. 12. 10~12. 16일(7일간)
	대 상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국화어촌계(39개 어가)
2차 도상연습	기 간	2009. 12. 25~2010. 4. 13일(47일간)
	대 상	- 전라북도(군산시) - 전라남도(신안군, 진도군, 여수시*, 고흥군) - 인천광역시(옹진군) - 경상남도(거제시*, 통영시)

주 : *표시 지역은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유인도서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상여부를 검토하였음

2. 도상연습 수행절차

- 본 도상연습은 연구과정상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자 및 대상자 확인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으로 광역시도, 시군, 읍면사무소,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음
 - 선정된 대상지역의 지자체인 시도 → 시군 → 읍면사무소 → 어촌계를 통해 공문과 대상어가 검증확인서를 송부하였음

- 해당 어촌계장(운영위원장)은 대상어가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가판정 심의위원회에 보낸 후 대상어가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어가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명단을 읍면사무소 → 시군 → 시도를 통해 보고를 받는 수행절차를 시행하였음



<부록그림 4> 도상연습 수행절차(경기도 예시)

- 2차 도상연습의 경우에도 1차 도상연습과 동일한 절차로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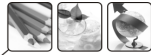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3. 도상연습 수행결과

가. 1차 도상연습 수행결과

- 국화도(국화어촌계)에 대한 도상연습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시행지침상의 절차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원활한 수행이 되었음
- 연구과정에서 지자체를 통해 검증된 대상어가는 39어가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어가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39개 어가 가운데 26어가만 대상어가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조건불리지역 대상어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음

나. 2차 도상연습 수행결과

- 2차 도상연습도 1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였으며, 도상연습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군, 읍면 담당자가 초기에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다소 질문이 있었으며, 이러한 질의사항은 전화 응답으로 대부분 해소하였음
 - 향후 시범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 어촌계장, 마을이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차 도상연습의 결과는 사전조사, 실태조사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실태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실태조사가 전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상연습 과정상에서 가족 구성원 중복 기재 등 일부 오류가 있어 실태 조사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비조건불리지역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건불리지역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모두 비조건불리지역으로 확인되었음



연번	시도	시군	도서명	어촌계명	사전조사	실태조사	도상연습	
1	전라 남도	신안군	신도	신도	13	17	18	
2			상사치도, 하사치도	사치	22	23	29	
3			추포도	추포	25	36	16	
4			평사도, 고사도	고평사	27	19	19	
5			장병도, 문병도, 능산	장병	29	19	17	
6			고이도	고이	34	102	67	
7			상태도, 중태도	상중태	40	7	7	
8			옥도	옥도	37	15	20	
9			마진도	마진	51	16	4	
10			영산도	영산리	44	16	29	
11			매화도, 황마도, 마산도	매화	42	111	113	
1			진도군	만재도	만재도	41	4	44
12				반월도	반월	99	45	34
13		하구자도		구자도	10	11	6	
14		관매도		관호	-	46	39	
				관매	184	53	76	
15		관사도		중도	-	15	38	
16		죽향도		신전(죽)	19	41	15	
17		라배도		라배	53	20	26	
18		장도		세방	-	-	4	
19		가사도		공항	-	-	4	
20		불도 - 비대상		-	-	-	-	
21		저도(진도) - 비대상		-	-	-	-	
22		주지도 - 비대상		-	-	-	-	
23		송도 - 비대상	송도	-	-	31		
24		늑도 - 비대상	늑도	-	-	23		
25		화태도 - 비대상	화태	-	-	98		
26		나빌 - 비대상	나빌	-	-	22		
27		자봉 - 비대상	자봉	-	-	13		
28		둔병도 - 비대상	둔병	-	-	20		
29		낭도 - 비대상	낭도	-	-	184		
30		여수시	개도 - 비대상	여석	-	-	3	
				화난	-	-	49	
				호전	-	-	25	
				신흥	-	-	34	
				월향	-	-	19	
31	하화 - 비대상	하화	-	-	5			
32	화정 - 비대상	제도	-	-	54			
33	여자 - 비대상	여자	-	-	61			
34	상화 - 비대상	상화	-	-	34			
35	소경도 - 비대상	소경도	-	-	54			
36	손죽도 - 비대상	손죽	-	-	13			

연번	시도	시군	도서명	어촌계명	사전조사	실태조사	도상연습
37		고흥군	애도(봉호)- 비대상	봉호	-	-	14
38			침도- 비대상	오취	-	-	10
				백일	-	-	5
39			거금도- 비대상	평지	-	-	6
				궁천	-	-	32
				서촌	-	-	46
				일정	-	-	10
				명천	-	-	60
				석정	-	-	30
				청석	-	-	18
				신촌	-	-	12
				금진	-	-	28
				중촌	-	-	0
				석교	-	-	1
				성치	-	-	26
				연소	-	-	9
				상하촌	-	-	27
				신양	-	-	17
				중동	-	-	10
				금산 배천	-	-	6
				상동	-	-	19
				신정	-	-	4
				동정	-	-	0
신평			-	-	11		
월포			-	-	33		
남천			-	-	10		
금장			-	-	30		
40			금산도- 비대상	오전동천	-	-	75
				신금	-	-	38
				어전동천	-	-	19
				익금	-	-	14
				우두	-	-	25
				신흥	-	-	33
				흥연	-	-	4
옥룡			-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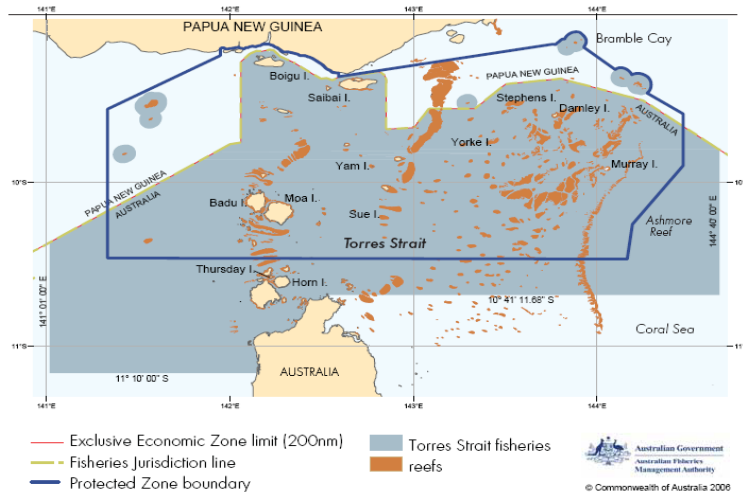
연번	시도	시군	도서명	어촌계명	사전조사	실태조사	도상연습
41	전라 북도	군산시	말도	말도	31	13	14
42			명도	명도	34	21	23
43			관리도	관리도	47	29	33
44			개야도, 죽도	개야도	319	115	144
45	인천 광역시	옹진군	울도	울도	43	23	30
46			백아도	백아	49	20	22
47			소연평도	소연평	57	10	12
48			문갑도	문갑	52	20	20
49			모도	모도	27	25	52
50			소이작도	소이작	47	34	57
51			이작도	이작	77	52	77
52	경상북도	통영시	추도	추도	42	30	27
53			소매물도	소매물도	13	13	9
54			하노대도	하노대	17	14	14
55			수우도	수우도	24	22	25
56			오곡도 - 비대상	오수	-	-	11
				학림	-	-	48
57			연대도 - 비대상	연대	-	-	32
				오비	-	-	13
58			어의도 - 비대상	어의	-	-	30
59			해간도 - 비대상	연기(해간)	-	-	20
60		지도 - 비대상	수도	-	-	12	
61		노대도 - 비대상	산등	-	-	2	
62		거제시	지심도 - 비대상	소림	-	-	1
63			황덕도 - 비대상	대곡	-	-	16
64			고개도 - 비대상	청곡	-	-	5
65	산달도 - 비대상		산달	-	-	53	

6. 도서 공동화 방지대책

(호주 Torres Strait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 정책을 중심으로)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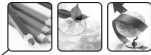
- Torres Strait는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사이의 해역에 여러 섬들이 몰려 있는 군도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Torres Strait Protected Zone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Tropical rock Lobster, finfish, Coastal Trout 등을 잡아 생활을 영위하는 도서어촌 지역임
- 이 지역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가 서로 협정을 맺어 엄격히 TAC(Total Allowable Catch)를 적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품종별로 잡을 수 있는 쿼터(quota)를 정하고 있음



Torres Strait 지역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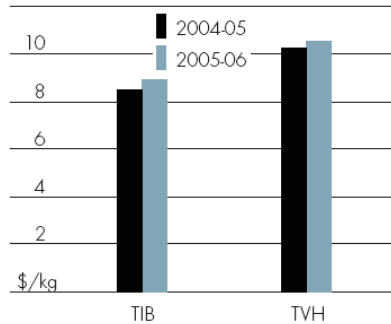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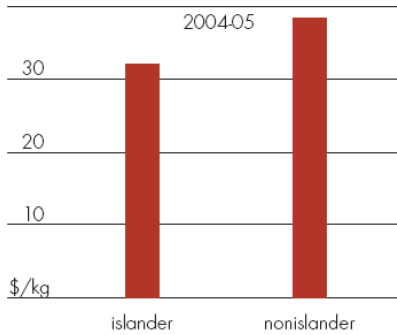
2. 도서지역과 육지지역 어업인의 수산업 여건 비교

- Torres Strait 지역의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수산업 활동은 육지지역의 어업인들과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Torres Strait 지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어가(漁價)를 받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음
 -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소형선박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반면에 육지지역의 어업인들은 숙박시설, 냉동시설 등을 갖춘 대형선박으로 조업활동이



이루어짐

- Torres Strait 지역의 어업인들은 기능이 제한적인 소형선박으로 냉장시설이 없어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지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획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어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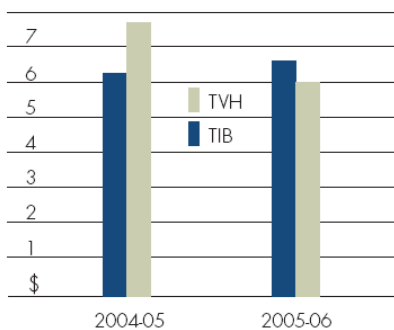


바닷가재를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받는 평균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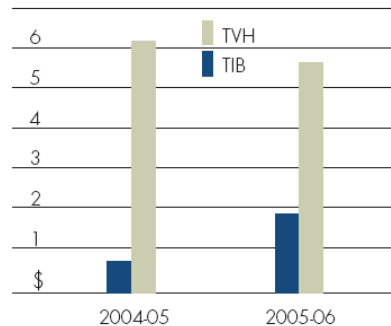
finfish를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받는 평균어가

주 : TVH(Transferable vessel holder fishers - 육지지역의 현대화된 어선)
TIB(Traditional inhabitant boat fishers - 도서지역의 노후화된 어선)

- Torres Strait 지역 내 바닷가재와 finfish의 킬로그램 당 수입을 살펴보면 육지지역의 현대화된 어선의 수입이 finfish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6배 이상 차이가 나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도 3배 이상 격차가 나타남



바닷가재 kg 당 수입(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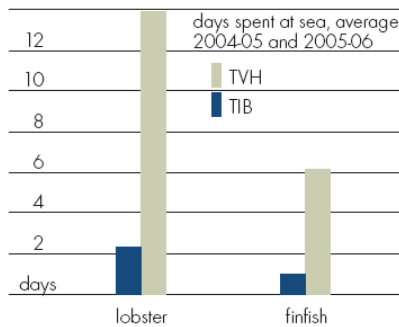


finfish의 kg 당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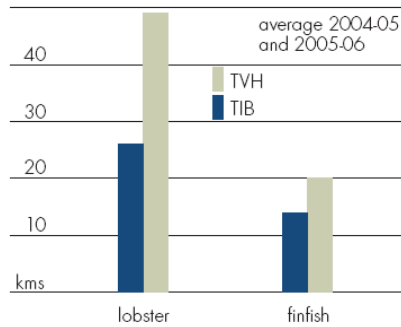
- 둘째, Torres Strait 지역의 어업인들은 육지지역의 어업인들에 비해 단위생

산량 대비 더 많은 어업경비가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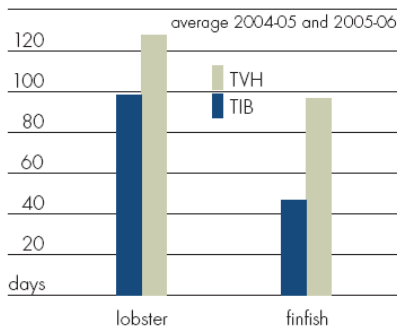
- 동일한 조업여건에서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매일 수산물을 양륙하기 위해 귀항해야 하기 때문에 육지지역의 어업인들에 비해 더 많은 연료비를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업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1회 출어 시 평균 조업기간



양륙을 위한 평균 이동거리



연간 평균 조업기간

- 셋째, Torres Strait지역의 어업인들은 소비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 Torres Strait지역의 어업인들의 소규모적인 어업활동과 시설 노후화, 경험부족은 소비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호주의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정책



- Torres Strait 내에서 도서지역의 노후화된 어선으로 조업을 하는 어업인과 육지지역의 현대화된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 간에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호주의 도서지역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구분	정부의 지원정책	어업인의 자구노력
모든 도서지역 어업인	1. TAC의 설정 2. 경쟁의 장애요인 제시	1. 경비 영수증 보관 2. 주요 장비는 스스로 준비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도서지역 어업인	3. 생산량에 따라 어획방식제한 제거 및 완화(어구, 금어기 등) 4. 어선원 고용에 대한 제약 제거	3. 예산과 계획 4. 활어로 소비지까지 상품 배송 5. 연료와 다른 보급품의 대량 구매를 위한 조합 형성 6. 육지지역 어선과의 협력을 통한 어업활동

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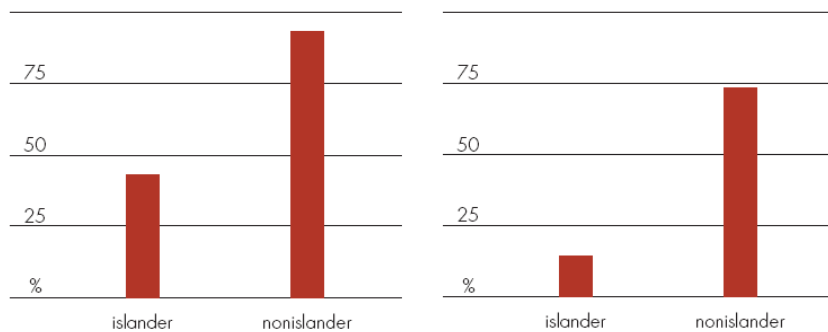
- 호주정부는 Torres Strait 도서지역의 수산업 조건불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TIB 어업인들의 어업수입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특정지역과 특정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정책목표의 목표는 명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전제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조건불리성이 나타나고 있는 Torres Strait 도서지역의 어업인들과 육지지역 어업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모든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TAC(Total Allowable Catch)를 설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에 한해 생산량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 금어기 등 어획방식제한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조건불리성으로 인한 차액범위 내에서 어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타 지역의 어선원을 고용하여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요인을 풀어줌으로써 실질적인 어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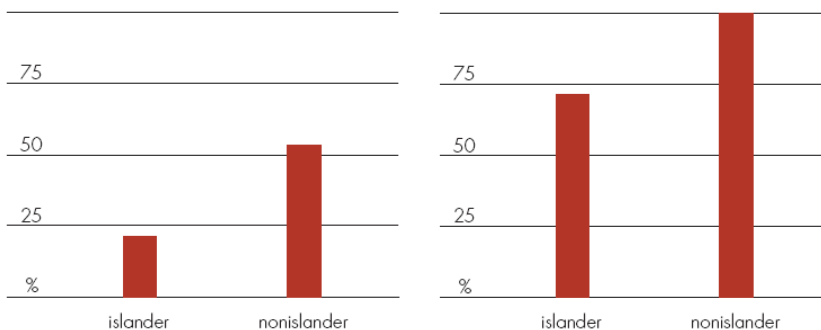
나. 어업인 스스로의 자구노력

- 수산업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회계장부 작성 여부

어업경영 계획 수립 여부



컴퓨터 활용 여부

어선과 장비 관리 여부

- Torres Strait 지역내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그들이 어획한 수산물의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활어상태에서 소비지까지 운송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연료 및 기타 보급품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하여 어업경비를 감축할 수 있는 자구의 노력을 병행함

4. 시사점

- 첫째, Torres Strait 도서지역의 수산업적 조건불리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Torres Strait 지역의 주요 품종에 대해서 TIB와 TVH 간 kg당 어업소득, 경비차액, 1회 출어 치 조업기간, 연료사용 등 어업소득과 경비의 객관적 격차를 제시함으로써 지원정책의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 둘째, 수산업적 조건불리성에 따른 타 지역 어업인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지원정책의 수혜자인 어업인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
 - 조건불리성 해소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 의무는 어업인 스스로 가지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음
- 셋째, 수산업적 조건불리성을 해소하는데 국가가 직불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조건불리성의 원인과 그 근본적인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넷째, 수산업적 조건불리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완화를 통해 도서지역 어업인들과 비도서지역 어업인들 간 어업소득 차액을 줄일 수 있어 국가가 예산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7.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부록 7. 조건불리지역의 특성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경 기 도	안산시	풍도, 육도	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및 어업. 콩, 고구마, 채소 소량생산 조기·새우류·민어·갈치 어획 굴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3척 자망 5척 복합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해삼, 120ha/500kg 작년 말 총폐살포로 수확량이 적음. 어촌계 공동채취, 공동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ha 꽃게, 전복, 게 마을 70가구 공동 어장 	
				국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우럭·버지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빛연승 12척 관리선 11척 우럭, 광어, 꽃게, 3,000kg 낙지, 우럭, 꽃게, 27,00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ha, 170,000kg 버지락, 전복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ha, 10,000kg 굴, 버지락, 낙지
경 남	통영시	추도	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면적 50% 쌀·보리·고구마 등 멸치·고등어·전갱이·참돔·갈치·삼치·방어 등 굴·망게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인통발 17척 연안자망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3,000kg 전복, 우럭, 광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ha, 2,000kg 해삼, 전복, 소라 외지해녀 고용해서 채취 맨손어업·고등 	
				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아가 배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4ha, 6870kg 버지락, 해삼 		
				관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2척 복합 5척 양식관리선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렁쉥이, 홍합 4.7ha, 14000kg 28명 0.15ha씩 기구당 500kg, 200만원 기량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200천kg 툰, 버지락 20일 작업, 50만원 기량 소득분배 	
				소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 1척 통발 2척 연안복합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ha 굴, 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ha, 10,000kg 버지락 	
		한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경지면적은 19% 벼, 마늘, 참깨, 무, 배추 재배 버지락·키조개, 한산멸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관리선 1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ha, 118,000kg 우렁쉥이, 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ha, 21,000kg 버지락, 해삼 		



수산물야 조건불리지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아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우두	가두리 양식은 국항공사로 5년째 휴업	가두리 양식은 국항공사로 5년째 휴업 •가두리 양식은 국항공사로 5년째 휴업. •개인별 생산 •247구	•양식관리선 22척 •나잠용 3척 •정지망(각망) 1척 •명계 양식관리선 5척 - 휴업중 •가두리양식관리선 1척 - 휴업중	•32.3ha, 207전kg •미역 •가두리 양식은 국항공사로 5년째 휴업. •개인별 생산 •247구	•31.4ha, 13,000kg •전복, 해삼, 톳, 고등 •정지망 0.5ha, 300kg •매기리, 고등어 •외지해녀+어촌계해녀 •해녀 50%, 어촌계장 30%, 어촌계 20%
			창좌		•연안통발 2척 •어선업 2명			•3.78ha/8350kg •바지락, 해삼, 청각
			두억	•아장 임대(고령) •아염소목 100만원 미만	•근해의줄납시선 1척 •굴 직업선 1척	•3.5ha, 멍게 •287구 공동작업 •2011년 생산예정 •개인면허어장-굴	•20ha, 3,000kg •바지락, 해삼, 전복	
			두억구		•납시용 1톤 미만 어선 2척		•없음	•14.8ha, 미역, 톳 •197구 공동채취로 부락경 비 조달 •미늘어업만 참여
			문어포				•적조피해로 양식장 생산량 없음	
			장작지	•장작지에서 버스 25분 (12km) 이동 후 한산형에서 육지행 여객선을 타야 함.	•연안통발 1척 •연안복합 1척 •무동력선(양식용) 6척	•3.5ha, 2,250kg •우렁쉥이 •기구당 0.3ha, 1인기구는 0.1ha씩 관리. •기구 속도 50만원 기량	•220ha, 2,250kg •전복, 소라, 톳 •전복 150kg, 소라 100kg, 톳 2000kg. •1/n분배(남 100%, 여 70~80%)	
			야암	•버스 30분 이동 후 진두항에서 승선	•복합선 4척 •유자망 3척, 통발 1척	•6.15ha, 1,450kg •멍게, 납치, 우럭	•40.7ha, 950kg •바지락, 톳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원에서 버스로 계승당항으로 이동후 승선 추원에서 통영까지 15km 어업소득 기구당 150~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력선 15척 무동력선 4척 		1종공동 미물어장
	통영시	매물도	매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콩-고구마-마늘-쌀-보리-양파 가지마·도미 등 자연산 김·미역·조개류 뉴시터로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3척 연안복합 10척 유디당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7ha, 3천kg 방어, 전갱이, 농어 협동양식어장 15ha, 1500kg 전복, 소라, 홍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ha 개인판매 전복, 소라, 미역
	통영시	죽도	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치, 방어, 송어, 농어 등 아쪽지원 풍부 뉴시어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6척 통발 1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ha, 30kg 전복, 해삼, 톳, 미역
		소매물도	소매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어·전갱이·멸치·방어 등 전복·소라·돌미역·해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3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ha, 3천kg, 미역, 톳, 전복 연간 150~200일 작업 미역: 13명 공동 작업. 톳: 공동작업, 부락경비, 전복: 공동작업으로 7:3 3을 1/13로 분배 해녀는 참가비 200만원 내 고 자유롭게 채취함
	통영시	비진도	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 쌀·보리 굴·멍게 양식 야생 흑염소, 팥두름, 돌미역 등 최근 관광업 비중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선, 나잠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당 1척 외줄 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a 미역, 전복, 해삼, 성게알 미역양식, 우렁쉥이양식 면허가 있으나 우렁쉥이는 면허만 있고 양식하는 사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ha, 3천kg 전복, 해삼, 성게알 해녀가 채취, 어촌계와 분배 톳, 자연산 미역 1종공동 어장은 반별로 구획을 정해 반별작업 기구당 소득 20만원 가량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비진도	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의 대부분이 산지 •지리산(398m)·불모산(399m), 옥녀봉(291m) •대부분 어업에 종사 •떨치잡이가 주를 이룸 •피조개·굴 양식 •흑염소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9km •생필품 구매가능 •어선어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어장(니점)1척 •전복, 해삼, 소라 •정치망(각망)2척 •돔, 광어, 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a, 생산량 없음 •미역, 우렁쉥이 •양식장 수온의 변화로 매년 폐사 •정지성 각망으로 대체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0ha •전복, 해삼, 소라 •니점어업협회의뢰, 채취 •정치망(각망), 0.3ha •광어, 송어, 농어 등
		상도	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의 대부분이 산지 •지리산(398m)·불모산(399m), 옥녀봉(291m) •대부분 어업에 종사 •떨치잡이가 주를 이룸 •피조개·굴 양식 •흑염소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km •생필품 구매가능 •'08년에는 종패가 없어 양식을 많이 못함. •'09년에는 0.1~0.3ha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19척, 1500만원, 낙지, 문어, 해삼 •연안통발10척, 1천만원, 낙지, 문어, 해삼 •연안자망3척, 1천만원, 도다리, 전어, 새우 •선망어척, 25천만원, 멸치, 전어, 고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7ha, 80전kg, 혼합 •협동양식어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ha, 30,000천원 •바지락, 톳, 문어, 해삼
		상도	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km •생필품 구매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9척, 15전kg, 낙지, 빨라, 집어 •연안자망4척, 2전kg, 전어, 도다리 •연안통발6척, 3전kg, 장어, 문어 •기타척, 500kg, 문어, 낙지, 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4전kg, 바지락 •1종마을공동어장 수익금은 어촌계 공동자금으로 사용 •개인소득 분배 없음. •31가구 공동작업해서 소득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가구수(31가구)로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4전kg, 바지락 •1종마을공동어장 수익금은 어촌계 공동자금으로 사용 •개인소득 분배 없음. •31가구 공동작업해서 소득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가구수(31가구)로 배분
	통영시	상도	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ha, 200전kg,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ha, 꼬막, 바지락, 전복, 해삼, 톳, 고동 •살포식 44ha, 자연산 6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4ha, 꼬막, 바지락, 전복, 해삼, 톳, 고동 •살포식 44ha, 자연산 60ha
	통영시	상도	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해선망3척 •연안복합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5전kg, 혼합 •혼합양식 어가 중 판매는 하지 않고 어선어업시 미끼로 사용하는 가구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ha, 바지락, 문어, 톳 •멘손어업 90일정도 •혼합양식은 개인관리로 가구별 생산량 상이



수산물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통영시	상도	사금			•연안자망어획, 연안연승 1척, 무동력 낚시배 1척	•개인면허 1ha, 굴, 홍합	•1.5ha, 300kg •방어, 송어, 전아-1인
	통영시	상도	옥동				•3ha, 0kg, 홍합 •개인에게 연간1500만원에 임대	•20.5ha, 30kg •홍합, 해삼, 전복 •수협에 관리위임, 년1100만원 받아 마을기금으로 사용 •외지혜녀가 작업
	통영시	상도	진촌		•해파리 피해 •피조개:수온변화로 작년 양식 판매액 없음		•5ha, 홍합, 굴, 피조개 •굴:1년 행사로 200만원 받아 마을경비 조달 •개인면허2명	•해삼, 고동, 멍게, 전복 •수협에 관리위임 •임대로 받아 마을 공동경비 조달
	통영시	하도	덕동	•경지면적 10% 인pflicht •농업 활발. 흑염소 사육. •섬 주변의 수역은 대륙붕 지대, 초퇴(礁堆) 발달 •낙지, 장어, 문어, 물메기, 도다리, 도미 등 •홍합, 우룻기서리 양식	•어선어업 1명		•2ha, 홍합(미끼용) •판매가 아닌 미끼용 양식 이라 개인들은 양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157구 양식, 소독에 따라 행사비 분배 •개인면허 1인	•30ha, 바지락 •공동작업, 공동분배 •1년 200일 가량 종사 •마을주민 5:5로 분배 •40~50만원 가량
	통영시	하도	먹방			•통발 6척, 복합 5척	•없음-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타지역(통영) 사람에게 전부 매각	•33ha, 4,300kg •해삼, 금목, 상게 •수협에 위탁, 경비 제외하고 연간 1600~1700만원을 어촌계원들에게 분배 •어업일수 7~8개월
	통영시	하도	읍포			•복합5척, 문어, 낙지, 잡어 •통발5척, 문어, 낙지, 잡어	•4ha, 없음, 홍합 •적조양식업피해 •2008년 생산량 없음	•37ha, 1,200만원 •해삼, 바지락
	통영시	하도	능양			•연인복합10척	•5ha, 없음, 피조개, 꼬막	•툫, 미역, 해삼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통발6척 연안연승9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관리, 배분함(40여명 참여) 2008년 종패 실패로 2009년엔 소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으로 미역, 톳 채취해서 공동배분(기구당) 비어업 노령자도 참여 해삼종류는 타 어촌계 해녀에게 임대(2~3백만원) 임대 수익금을 받아 일정금액이 되면 기구당 배분(비어업 노령자 포함) 맨손어업으로 톳, 미역 채취 30일 이하 작업, 기구당 50만원
통영시	하도	백화			•아기의 고령화로 1증공동 마을어장 3년전 폐기	•연안통발 13척	•없음	•없음
통영시	하도	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통발5척, 연안자망2척 연안연승 3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ha, 5천kg, 멍게, 해삼, 전복 맨손어업4~5개월
통영시	수우도	수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합 양식 종사 •7월~12월까지 멸치잡이 •선단이루어 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5척, 4천kg •도다리, 물메기, 치고기 •자망, 통발2척, 1,600kg •도다리, 물메기, 기타 •자망1척, 200kg, 도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3ha, 7300kg •해삼, 개조개, 전복, 멍게, 톳나물, 청각, 고동 •맨손어업 연간 30일 이하 	
통영시	육지도	육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 •감성돔 등, 어족자원 풍부 •김, 굴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에 소속되어 승선 •어선어업많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ha, 1,160kg •고동, 전복, 해삼 •해녀:마을5:5 분배 •마을은 공동경비로 사용 •1년 조업일수 40일. •협동어장, 8.7ha, 1,190kg, •고동, 전복, 해삼



수산분야 조건별리지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통영시	육지도	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 5척, 연안복합 3척 •보트 3척, 정지망 1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ha, 5천kg •전복, 소라, 해삼 •정지망, 6.4ha, 10천kg •고등어, 갈치, 멸치
	통영시	육지도	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어업: 어획한 수산물 오후에 판매(납시, 맨손어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뉴기 8척, 조피볼락, 방어 •연안복합 1척 조피볼락, 돔,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ha •도미, 복어,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ha, 5천kg •도미, 고등어, 복어, 방어 •1년 180일 정도 작업 •수심 깊은 곳은 해녀, 짐수부 동원해 채취. •공동작업, 공동분배 1년1호당 30만원 정도 •대부분 미물경비로 사용(노인복지, 새마을사업, 축제행사비, 불우이웃돕기) 	
	통영시	육지도	목청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협면허로 양식 •우럭, 방어, 복어, 고등어, 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1척, 자망 1척, 통발, 채뉴기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ha, 356180kg, 우럭, 참돔 •협동양식어장, 0.88ha, 2200kg, 전복, 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5ha, 6250kg •비지락, 소라, 해삼 	
	통영시	육지도	불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어업 3척 •복합어업 10척 •채뉴기 2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ha, 200kg •소라, 멍게, 톳, 미역 •정지망(간망)780ha/100kg/ •참치, 방어, 고등어 	
	통영시	육지도	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망 4~5ha •고등어, 전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어업 5척, 1500kg, 볼락, 삼치, 방어 •간망 1척, 고등어, 전갱이, 멸치 •연안자망 1척, 참돔, 우럭, 꽃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개인면허, 전복 •참돔, 우럭, 4~5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ha, 1500kg •소라, 전복, 해삼, 톳 •마을해녀 수의 분배 	

시도	시군구	도서	이촌계	도서의 특성	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통영시	육지도	육동 산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저망 3척 연안복합 15척 정지망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6ha, 8천kg, 우럭, 돔 이촌계 및 개인 기두리 양 식업 면허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2ha, 3500kg 소라, 전복, 해삼
	통영시	육지도	육동 산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망1척, 연안복합 1척 나잠척, 통발척, 자망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9.4ha, 2천kg 전복, 소라, 멍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2ha, 1,000kg 고등어, 소라, 전복
	통영시	육지도	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저망 2척, 복합 2척, 통발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ha, 1500kg 소라, 멍게,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ha, 1500kg 돔, 미역, 우뚝가사리
	통영시	육지도	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1척, 자망 1척 채낚기5척, 양식관리선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ha, 20천kg 돔, 우럭, 방어 수협 임대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75ha, 19천kg 전복, 해삼, 돔, 미역, 소라
	통영시	하노대도	하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미늘, 고구마 등 우럭·참돔 등 양식 뉴시터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4척, 관리선 3척 외줄낚이선 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촌계면허양식어장 없음 개인어장 47구 우럭, 돔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2ha, 4천kg 전복, 해삼, 돔 맨손어업 2개월 미만
	통영시	상노대도	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빈(砂濱)발달 멸치잡이, 전복 양식 도미 서식지로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연안) 1척 복합(연안) 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ha, 참돔 개인어장 행사, 현재 무도 상태로 매출 없음 협동양식어장, 30ha, 전복, 소라, 멍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ha, 전복, 소라, 해삼 육지수협에 행사 줌 행사비 연간 7~8천만원
	통영시	상노대도	상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통발 8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어장-개인지분으로되 어 있어 개인양식업 협동양식어장, 19ha, 2450kg, 전복, 해삼, 멍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ha, 1200kg 전복, 해삼, 소라 조합일수 9개월 이상
	통영시	상노대도	탄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통발5척 문어, 우럭, 노래미 무허가어선(무동력)4척/모 름/우럭, 불락 양식관리선15척/우럭, 참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ha, 우럭, 참돔, 불락 157구 행사, 타이촌계원 3ha 행사 개인양식면허-어류기두리 15여가구(6.3ha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ha, 5000kg 소라, 전복, 멍게, 돔 육지나 제주해녀 매출에서 일부를 받음. 1종공동어장, 전복, 소라, 멍게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산 툇-어촌계 공동체 취, 일당 지급 및 어촌계 운영자금으로 사용 •어촌계 공동작업에서 개인적으로 40일미만 고동 등 채취, 연간 100만원 안팎
	통영시	연화도	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 고구마 •멸치·민어·참돔·갈치·문어·낙지 어획 •김·굴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방척, 아구, 삼치, 농어, 백아리, 고등어 •부망척, 아구, 삼치, 농어, 고등어 •연안복합(어장관리겸합)36척, 전복, 해삼, 소라, 씀뱅이, 우돔, 불락, 장어 •통발척, 볼락, 놀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ha, 우럭, 돔, 참돔 •377구 양식 •1가구당 행사로 1년 10만원씩 내고 미물경비로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ha •전복, 소라, 해삼, 미역, 툇 •조업일수 300일정도 •공동작업, 마을경비 조달, •30~50만원 지급 	
	통영시	연화도	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5척 •방어, 볼락, 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7천ha, 4500kg •전복, 소라, 해삼 •107가구가 양식, 마을·개인 4:6으로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천ha, 3천kg •전복, 해삼, 소라 •조업일수 150일 •전기구 공동작업, 공동분배 •가구당 70~80만원
	통영시	두미도	두미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콩·고구마, 미늘·고추 •볼락·참돔·낙지 •피조개 양식 •바다뉴시터로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 11척, 도다리, 물메기, 도미 •연안통발 2척, 꽃게, 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4ha, 11천kg •전복, 소라, 김 •종패 살포 후 헤너 채취 	
	통영시	두미도	두미 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의 맨손어업인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ha, 5,000kg •전복, 해삼, 소라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경북	울릉군	도서	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면적 15% •미역취 부지깁이, 천궁, 더덕, 작약 재배로 농가소득 •어업 종사자 감소 •관광산업 비중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7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선 1척, 2840kg •홍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ha, 3,007kg •미역,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1ha, 10488.2kg •해삼, 전복, 소라 •생신량(홍해삼=3,670kg, 흑해삼=1,167kg, 소라=5,644kg, 전복=7.2kg)
			도동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릉도 시동 신항건설로 면허어장 보상 받음 •총 어가수 48호, 어선어업 어가 13호. •조업일수 70~90일 정도 •채낚기 인 경우 9,77톤 정도 •도의 어선으로 연간 1억~1억3천정도의 어획고 •오징어 가공어기는 오징어 판매업체에서 오징어 1축당 건조가공비 2500~3000원 정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낚기 3척 •오징어 채낚기 13척 •60천kg •오징어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ha, 2천kg •전복, 소라, 문어 •잠수기 어업 •43기구에 20만원씩 배당
			신흥				없음		
			저동						
			죽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 양식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공동미늘어장 	
			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3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양식어장, 22.5ha •김,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ha •전복, 소라, 해삼 	
			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양식어장(오징어채취) •어촌계면허양식어장 		
			통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낚기4척, 30천kg, 오징어 •뉴시선5척, 60천kg, 방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ha, 3천kg •해삼, 소라,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구없어 어선어업 불가 •잠수선 1척은 타지역에 관리를 맡겼다가 1~2월에 겨원 4명이 전복, 해삼을 채취해서 소득의 48%를 어촌계가 가짐 •미늘어장에서는 돌김, 미역을 채취 21기구가 분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수기1척, 전복, 해삼, 소라 •자망1척, 가자미, 쥐치 •11천만원 가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8ha, 약 7,600만원 •전복, 소라, 해삼 •연간 50~60일 작업 •공동작업, 공동분배 •경비제외하고 1/19 (50~100만원) •공동경비로 1700만원 이상 저축 		
			학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용어장 특성
			현포					
		별음도	별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쌀·보리·미늘·고추 백합 양식 		2가구		1증공마을어장
		서검도	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콩·고추·미늘 기존에 있던 염전을 없애고 15만여 평의 대규모 대하 양식장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포리항까지 배로 나와서 인천까지 갈 때는 다리를 건너옴(석포리에서 인천까지 3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강명(장치만) 7척 자망 14척 통발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5ha, 굴 인천공항 매립관계로 뿔이 많아 생신을 못함 작년 굴 생신은 소득 없음 	
		아차도, 주문도	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농업 종사 		개인면허		
		대연평도	연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게잡이로 유명. 				
		백령도	진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나리액젓·참다래(키위)·흑염소·엑기스 전복·해삼·멸치·약쑥·가리비·농어·우럭·놀래미 		367가구		
		백령도	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19척 남장망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9.94ha, 74,500kg 전복,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ha 조류파도로 인한 시설물 파손으로 작년 생산량 없음 미역, 다시마 연간 조업일수 60~90일
	웅진군	백령도	남3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포 연회에서 백령까지 이동 후 백령에서 인천항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통발, 남장망) 18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5ha, 5,000kg 전복, 해삼, 다시마,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ha 전복, 해삼 연간 8명, 60일 조업 55.45 분배. 8명이 55 갖고 어촌계원이 45를 1/수함
		대청도	선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대부분 농업 종사 일부 주민은 농경지와 밭농사를 겸업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대청도	육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원 100여 명 •고령 비어업가구 증가로 실재어가 40여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ha •전복 	
		소청도	소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주민 어업 종사 •굴과 돌미역 등 해조류양식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포도 재배 •망둥어·맛조개 등 •포도 •김·백합·동족·새우류·바지락 •김 양식이 활발하였으나 인건규제공항 건설로 중단. •농어·민어·준치·우럭 등 •굴·소라 등 	부합연승 1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1ha, 7,800kg •전복, 해삼 	
		신도 시도	신시					
		장봉도	장봉도				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굴(패류)
		소연평도	소연평도					
		모도	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 주위에 뉴시터 형성 •송어, 망둥어, 우럭, 봉징어 •포도재배 •자연산 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1척, 1,500kg •꽃게, 송어, 망둥이 •뉴시터저선8척 •송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바지락, 굴, 낙지 •공동채취, 개인판매. •품종에 따라 채취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동채취하지 만 채취량 한계만 정해놓고 개인판매하기 때문에 개인 간 소득은 차이가 있음
		덕적도	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 면적의 10% 미만 •개펄 발달되어 바지락·굴·김 등을 양식 •해산물 외에 산디덕·흑염소·포도·참외·포고 등의 지역 특산물을 생산 •서포리해수욕장, 지갈해변으로 관광소득이 소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획량이 적어 어선어업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양식도 불가능함 •전체 어가가 300여 호 •어선어업이 33척 •대부분 굴, 바지락, 고등채 취하는 고령 맨손어업 아가가 •어선어업의 경우 어획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ha, 10천kg •다시마, 바지락, 조피볼락 •조피볼락 1ha 양식은 어촌계 관리하에 어촌계원 중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당 주고 판매 후 수익이 나면 어촌계 기금으로 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ha •굴, 바지락, 고등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적어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로 매출 높음 •연안북해어선들은 낚시꾼들을 실을 수 있는 허가 받아 여름철 소득 500~1000만원 정도 더 올림. •꽃게잡어선 연간 3~4000만원 •잡어낚시어선 1~2000만원 •맨손어업 어가는 연간 150일 조업, 4~500만원 매출			•다시마 양식 허가를 받아 7어가가 행사했으나 조류가 세서 5어가는 실제 •양식 중단하고 그나마 조류가 약한 일부 지역에서 2어가가 양식하고 있음. •바지락 종패를 살포식으로 양식하는데,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채취에 제한을 두고 공동채취, 공동판매하는데 2008년에는 종패만 뿌렸고, 2009년 어기당 100만원 정도 매출 발생.	
		소야도	소야	•넓은 간석지 •천연 배사장 •바다낚시터와 피서지				1중공동마을어장
		저월도	저월	•해안가의 평지와 낮은 구릉지 등은 농경지로 개간 •포도, 누에고치, 꿀, 흑염소 •참조기·새우류·민어				1중공동마을어장
		문갑도	문갑	•쌀·보리·고구마 •꽃게·우럭·새우·노래미 •굴·조개류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어기수 감소	•연안자망 4척 •연안복합 1척	•23ha, 3,000kg	•개인판데 •굴, 바지락, 낙지 •연간 40~50일 조업
		이작도	이작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굴·소라·꽃게·우럭 •흑염소, 토종닭	•아선들은 낚시배(낚시꾼 실은) 허가 검토했으며 고소득	•통발(낚시배로도 활용)1척, 노래미 4척, 우럭, 꽃게 1척 •연안자망(낚시배 허가 중)13척, 꽃게, 간재미 •선내기(낚시배허가종복)3척	•4ha, 다시마, 우럭 •개인면허-우럭(가두리), 가리비	•89ha, 120천kg •굴, 바지락, 해삼, 전복 •꽃동채채취, 개인판데 •바지락, 100일, 굴 120일 ~200일 가량 조업 •어기당소득 300~1000만원
		소이작도	소이작			•자망 4척 •복합 4척	•없음	•64.5ha, 7,200kg •굴, 바지락, 전복



수산분야 조건별리지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통영시	육지도	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 5척, 연안복합 3척 •보트 3척, 정지망 1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ha, 5천kg •전복, 소라, 해삼 •정지망, 6.4ha, 10천kg •고등어, 갈치, 멸치
	통영시	육지도	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어업: 어획한 수산물 오후에 판매(납시, 맨손어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뉴기 8척, 조피볼락, 방어 •연안복합 1척 조피볼락, 돔,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ha •도미, 복어,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7ha, 5천kg •도미, 고등어, 복어, 방어 •1년 180일 정도 작업 •수심 깊은 곳은 해녀, 짐수부 동원해 채취. •공동작업, 공동분배 1년1호당 30만원 정도 •대부분 미물경비로 사용(노인복지, 새마을사업, 축제행사비, 불우이웃돕기) 	
	통영시	육지도	목청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협면허로 양식 •우럭, 방어, 복어, 고등어, 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1척, 자망 1척, 통발, 채뉴기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ha, 356180kg, 우럭, 참돔 •협동양식어장 0.08ha, 2200kg, 전복, 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5ha, 6250kg •비지락, 소라, 해삼 	
	통영시	육지도	벌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망어업 3척 •복합어업 10척 •채뉴기 2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ha, 200kg •소라, 멍게, 톳, 미역 •정지망(간망)780ha/100kg/ •참치, 방어, 고등어 	
	통영시	육지도	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망 4~5ha •고등어, 전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어업 5척, 1500kg, 볼락, 삼치, 방어 •간망 1척, 고등어, 전갱이, 멸치 •연안자망 1척, 참돔, 우럭, 꽃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개인면허, 전복 •참돔, 우럭, 4~5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ha, 1500kg •소라, 전복, 해삼, 톳 •미물해녀 수역 분배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울어장 특성
전남	고흥군	무의도	큰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개해수욕장과 실미혜수욕장 •어업활동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의도~월미도 3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2척 •연안저망 1척 •정지망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ha, 270천kg •굴, 버지락, 기무락 •공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ha, 40000kg •버지락, 굴, 기무락 •공동작업, 개인판매 •맨손어업 200일 이상
		무의도	광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명항에서 잠진도항까지 50km 이동한 후 버스타고 인천으로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정관리선 6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ha, 10천kg •김, 석화, 기무락 •맨손어업 150일 종사 •공동작업, 공동분배 •출석일수에 따라 소득 분배 •수료 0.5% 떼서 마을 운영경비 •호당 500만원 정도 분배
		무의도	포내			2기구		
전남	고흥군	소무의도	소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에 나갈려면 도선을 3번타야 인천 월미도에 도착함 (소무의도->대무의도->용유도->영종도->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정관리선12척 •자망복합척, 꽃게 •자망척, 꽃게, 우럭 •복합척, 쭈꾸미, 노래미, 우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ha, 해태, 다시마 •개인면허(6명)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 버지락, 고동, 소라 •관광객에게 개인판매
		연흥도	연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콩·녹두·양파·마늘 •멸치·노래미·낙지 등 •김·미역·툇·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필품 육지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관리선 1척 •미역, 다시마, 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ha, 185,000kg •미역, 다시마, 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ha, 10,000kg •버지락, 파래, 돌김
전남	고흥군	시산도	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김·미역의 양식 •팻치·감성돔·붕장어·누리 •고구마·보리·쌀·마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필품 육지 구입 •고령화로 어업종단 기구 多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관리선 70척 •30ha, 12000000kg •김, 다시마,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ha, 전복, 해산, 상게 •3000만원 •전복종패살포하여 채취 •350ha, 2~3000만원수입 	
		병풍도 소익도 소가점도 대기점도	병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고구마·마늘·쌀·보리 •농어·민어·어회, 김·양식 •소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부터 피조개 공동양식 시작, 아직 생산량 없음 			



수산물야 조건별리지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고이도	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이 넓어 제방을 쌓아 염전이나 농경지로 이용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쌀·보리·고구마·콩·마늘 •낙지·도미·바지락·송어 등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10척, 70000kg, 송어, 농어, 낙지 •연안자망2척, 14000kg, 송어, 농어, 낙지 •연안통발배척, 7000kg, 농게, 아나고, 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면허3명, 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ha, 바지락, 굴, 꼬막 •공동채취, 공동판매 •30~60일 조업, 기구당 80만원~100여만원 소득 •개인적으로 낙지 채취하는 사람들은 조업일수 많고 소득 700~800만원 정도. 	
전남	신안군	매화도 항마도 미산도	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 주로 농업 종사 •어업은 부업 •쌀·보리·고구마·파·마늘·고추 •낙지·송어·잡어 등 •미역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양식관리선 3척 •17000kg, 김 •주낙남시선 32척 •8,000kg, 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9ha, 170000kg,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ha, •갯지렁이, 농게, 가시파리 	
전남	신안군	당사도 초란도	당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쌀·콩·고구마·참깨·마늘 •고등어·전갱이·조기 •김·미역·굴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로 어가 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어장 •김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어장 •김양식 	
전남	신안군	지은도	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늘·뽕콩·방울토마토 •새우·뽕어·강달어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량양망2척 •남정망4척, 복합10척 •어장관리선2척 •양식관리선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ha •김(20ha) 17기구 •친초(20ha) 6~7기구 •백합(25ha) 면허있으나 양식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ha, 4000kg •토, 석화, 우물기사리 •석화채취, 조업일수 180일 이상, 연간 소득 600~700여만원 	
전남	신안군	지은도	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도항에서 송구항8km, 고신항에서 목포항까지 2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ha, 60000kg, 김 •합동양식어장, 265.5ha, 2000톤,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ha, 전복, 백합 •생산량 없음 	
전남	신안군	제원도	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류와 파도의 영향으로 양식 불가 •어선어업 소득이 높은 편이라 젊은층이 많이 거주함 •남편은 섬에서 어선어업, 부인과 자녀들은 목포에 거주하는 경우 많음 •9.77톤 어선 1척당 연간매출 3억5천만원~4억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ha, 돌김, 파래, 석화 •공동채취, 개별채취 •조업일수 90일 이상, 소득 약 2000만원 내외 •석화와 돌김으로 맨손어업 소득이 높은 편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비금도	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콩·고구마·마늘·양파·시금치 멸치·농어·참조기·가지미·붕장어·문어·낙지·해삼·새우 김·미역 양식, 제염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잡망15척, 30천kg, 염장 새우, 병어, 오징어 근해저망8척, 40천kg, 새우, 병어, 오징어, 꽃게 연안연승3척, 12천kg, 장어, 우럭, 간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88.6ha 개인면허-롯데 양식면허-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ha, 낙지, 칠게, 갯지렁이, 파래, 미역
전남	신안군	비금도	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ha, 7000kg. 개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미시용으로 허가취소 	
전남	신안군	상사치도, 하시치도	사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고구마·쌀·미늘·콩 민어·농어·멸치 조개·굴 채취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격거리 23km 생필품 구매가능(쌀) 양식어가 17구, 어선어가 27구 외에 개인적으로 낙지, 실장어 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ha, 김, 전복, 다시마, 미역 개인이 미늘어장임대 전복7톤, 다시마, 미역 800톤 김 40ha, 가구행사 전복 4ha, 가구행사 다시마 1ha, 가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공동미늘어장없음 맨손어업소득 500만원 이하, 조업일수 50여 일 	
전남	신안군	수치도, 상수치도	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마늘 멸치·새우 김, 조개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2척, 500kg, 꽃게, 장어 등 무동력선 7척, 실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ha, 김 김장소유자2명이 145ha를 어촌계와 행사 계약. 2명이 따로 개인에게 임대 행사비는 1책(1ha=54책)당 1000원씩 받아 부락경비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ha, 낙지, 칠게, 갯지렁이, 비지락 공동미늘어장 외 지역에서 개별작업, 조업일수 180일 이상 	
전남	신안군	도초도	이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쌀·보리·고구마, 담배 갈치·농어·참조기·새우·우럭·붕장어·가지미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다시마,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칠게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출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도초도	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어가 15~20호, 그 외 반농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5ha, 김, 전복, 다시마 •개인어장28ha, 우럭,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5ha, 개별채취, 개별판매 •낙지, 석화, 바지락
전남	신안군	기린도	기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해도(연륙)의 부속섬으로 압해도까지 배를 타고 2~300m 간 후 압해도에서 유리로 목포항으로 갈 •반농반어 •쌀·모리·고구마·마늘 •낙지·바지락·송어·새우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맨손어업이 주업 •맨손어업 아가들 배 소유 •배를 타고 갯벌로 나간 후 낙지, 꼬막, 굴 채취 •배는 거의 어장관리선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3ha, 석화, 꼬막, 바지락, 낙지 •맨손어업 60일 이상
전남	신안군	추포도	추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 부진 •김 양식, 낙지잡이 				
전남	신안군	팔금도	안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어·도미·갈치·문어·낙지·꼬막·조개·새우 •갯벌에서 파래·돌김·갯지렁이 채취 •김 양식 •염신업 발달 				
전남	신안군	임태도	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농업 비중 큼) •쌀·보리·참깨·콩·마늘·고구마·고추 •민어·송어·참조기·멸치·갈치·낙지·문어·전어 •대규모의 김 양식 •제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7척/8000kg/병어, 민어, 농어 •연안안강망1척/1800kg/새우, 민어, 병어 •연안복합낙척/3000kg/장어, 우럭, 민어, 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7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7척/8000kg/병어, 민어, 농어 •연안안강망1척/1800kg/새우, 민어, 병어 •연안복합낙척/3000kg/장어, 우럭, 민어, 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ha, 갯지렁이, 바지락, 낙지 •조업일수 50여 •개별채취, 개별소득
전남	신안군	임태도	송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7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ha, 낙지, 갯지렁이, 게 •조업일수 약 300일 •개별채취, 개별소득
전남	신안군	임태도	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10척, 민어, 농어, 병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양식 127구, 기구당 13~14만원 어촌계 회비 •수익금 150~200만원은 어촌계 공동경비로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ha, 낙지, 갯지렁이, 게 •20여 기구 참여 •조업일수 100일~150일 •개별소득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대물도	대물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멸치·장어 김·전복 양식 고구마·보리·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업, 어선어업 중복 가 구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연승 36척 관리선 4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20천kg 다시마, 미역, 우럭, 전복 50여 가구 우럭기두리양식1칸→5㎡ 개인면허3ha(전복, 우럭)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해삼, 톳 맨손어업 공동작업, 공동판매 개인판매 병행 조업일수 15일 가량 소득 80만원~500만원 가 량으로 개인편차 큼
전남	신안군	대문도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등어·농어·멸치·장어·조 기·우럭 김·굴·전복 양식 보리·고구마·감자·콩·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가구 		
전남	신안군	대문도	도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통발 3척 복합 8척, 지망 2척 양식관리선 3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5ha, 15000천kg 우럭,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5ha, 5천kg 전복, 해삼, 미역
전남	신안군	대문도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연승10척, 15천kg 우럭, 놀레미, 광어, 장어 연안자망6척, 10천kg, 우럭, 놀레미, 광어 아장관리선35~40척, 350천kg, 우럭,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ha 전복, 미역, 우럭, 다시마 전복 생산 대략 60000kg 미물어장 개인임대, 행사로 채취량에 따라 관리인 과 헤너가 나눔 기두리(전복, 우럭), 미역, 다시마 28ha. 개인행사 전복양식 4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ha, 40천kg, 톳, 미역, 김 공동채취작업, 개인판매 조업일수 60일 이상, 소득 50~100여 만원 지역이 넓어 반별로 계획
전남	신안군	흥도	흥도1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어업 종사 주 소득원은 관광수입 고구마·보리·콩·마늘 우럭·붕장어·농어 전복, 김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격거리 120km 생필품 구매불가능 맨손어업과 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17척, 200천kg, 우럭, 농어, 잡어 아장관리선 4척, 우럭, 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ha, 미역, 톳, 다시마 공동작업, 공동분배, 개인 판매 조업일수 90여 일



수산물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홍도	홍도2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미역 채취 •어촌계 명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장 임대 •연간 임대료 1000만원 •맨손어업은 톳, 미역 채취 •연간 30일 미만 조업 •판매금액 10~40만원
전남	신안군	영산도	영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보리·콩·고구마 •농장어·농어·낙지·문어·멸치·갈치·우럭 등 •자연산 김, 전복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장 공석 •육지 진출로 어가 수 감소 •실제 거주자 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 4척 •소형선외기(괘리) 4척 •도선(행정선)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0kg, 우럭 •기두리양식 실패로 생산량 없음 	
전남	신안군	만재도	만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참조기, 고등어·전갱이·도마·붕장어·갈치 등 •고구마·보리·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1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보리·콩·마늘·참깨 •참조기, 병어 •미역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어류(가두리), 전복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2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낭장망 10 •2008년에 해파리 피해로 멸치 수확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ha, 전복, 다시마, 미역 •전복(1ha)인 •다시마비역(20ha)3인 •우럭(1ha)행사계약만하고 양식안함 •전복양식-행사, 임대료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ha, 3000kg •돌미역, 가사리, 톳 •맨손어업은 공동작업, 개인 판매 •조업일수 30일 가량, 소득 100~200만원
전남	신안군	흑산도	진리1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력선 2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5ha •우럭, 전복, 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7ha •미역, 톳, 다시마
전남	신안군	흑산도	진리2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으로 어업활동 중단 가 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 전복(개인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미역, 다시마, 톳
전남	신안군	흑산도	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170000kg/우럭, 전복, 다시마-17~18명 개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ha, 2000kg •전복, 해삼, 미역 •조업일수 60일가량, 공동작업. 일정부분 미물 경비 쓰고 나머지 25가구 분배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흑산도	심리		•고령으로 어업활동 중단 가구 증가		•10ha •미역, 다시마	•2ha, 미역, 톳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리					
전남	신안군	상태도, 종태도	상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태도-주로 어업 종사, 흑산홍어, 우럭, 멸치, 봉장어, 김·우뚝가시리 채취, 고구마, 콩·마늘 •종태도-대부분 해녀, 해초 채취, 멸치·조기·전복·김·과래, 돌김 •해조류 채취기간인 3월에서 10월까지의 전주민이 거주하나,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많은 주민이 인근 도시에 나가 다른 일에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지에서 멀어 생산판매가 힘들어 어선어업은 없음 •자연산 채취는 태풍과 안개로 작업을 못해 채취량이 적고, 패류나 어류 가두리 양식은 양식장이 거리가 멀어 파도나 날씨영향으로 먹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수확량이 적어 전반적으로 수입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역, 다시마, 톳, 전복, 해삼, 홍합 •해녀 조업일수 250일 •해녀·어촌계 60:40 배분 •미역, 다시마는 전복 먹이용으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역, 톳 	
전남	신안군	하태도	하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어업 종사 •멸치·봉장어·우럭·농어 •전복·김·미역 양식 •보리·고구마·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할10척, 우럭, 돔, 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a, 13천kg, 우럭,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역, 다시마, 톳, 전복, 해삼, 홍합 •해녀 조업일수 250일 •해녀·어촌계 60:40 배분 •미역, 다시마는 전복 먹이용으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역, 톳
전남	신안군	미진도	미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고구마·마늘·참깨 •병어·봉장어·농어·도미 •김, 톳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장관리선9척 •공동어장관리선, 해조류, 다나지 •양식관리선3척, 417천kg, 전복, 다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ha, 90천kg, 전복, 다시마, 미역 •개인면허, 2ha,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2ha, 5천kg, 낙지, 해조류, 전복 •공동 및 개인채취 •조업일수 200일 이상, 소득 500여 만원 	



수산물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장산도	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활발 쌀·보리·고구마·콩, 유자 갯벌을 이용한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2척, 송어 정치망2척, 갑오징어, 농어 어장관리선1척, 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9.9ha, 150돛(1돛=김100장), 김 양식 3명 개인면허 4명, 새우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ha 낙지-참가비 20만원 내고 20명 참가, 조업일수 30일, 개인 소득 송어-참가비 각 20만원 내고 4명 조업일수 100일, 개인소득 참가비는 미물공동자금으로 사용
전남	신안군	장산도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온상승으로 김 양식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10척 양식관리선 30여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5ha, 꼬막, 김 개인면허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ha, 낙지, 게, 굴, 갯지렁이 조업일수 100일 자유롭게 채취, 본인소득 1년 참가비1~2만원 참여비 미물공동경비 사용
전남	신안군	장산도	팽진					
전남	신안군	지라도	지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염업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6.5ha, 128000kg 김,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참게 5000kg 낙지 3000점
전남	신안군	반월도	반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농업비중 큼) 보리, 쌀·콩·마늘·참깨·고추 잡어 돌김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관리선 44척 연안복합 4척 연안자망 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ha, 568.5kg, 김, 전복, 참모자반 김 369ha, 전복 20ha, 참모자반 30ha. 참여제한 없음, 개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5ha, 93kg 낙지, 석화(알), 강태
전남	신안군	안좌도	안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중사 비율 50% 이상 쌀·보리, 고구마·콩·마늘·참깨 송어·멸치·갈치·낙지·문어·참조기 굴 양식, 제염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안좌도	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이격거리 40km 도서에서 생필품 구매 개인 양식 면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낙남서14척 아장관리선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ha, 전북, 다시마, 미역 전북 기두리7ha, 87구행 사미역, 다시마 병행) 연승식, 김 60ha, 67구가 행사(지주식). 전북양식 3년차로 생산량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ha, 굴, 낙지, 바지락 바지락, 해조류(갈매, 톳) 공동채취 개인판매 굴, 낙지, 공동채취, 개인 판매 4계절 채취, 소득500~1000여 만원
전남	신안군	안좌도	우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연안 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ha, 해태, 김 김, 27ha 부류식(5ha) 개인면허, 새우, 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0ha, 낙지, 굴, 갯지렁이, 바지락 개별 판매 조업일수 3개월~6개월
전남	신안군	안좌도, 울도	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부락 중 오동리 마진이 바다와 가까운 맨손어업 소득이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누기(주낙) 90척, 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5ha, 340전kg 김, 파래, 해삼 37구 행사. 김 양식 37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2ha, 낙지, 굴, 철게 개별채취, 개별판매 낙지, 게 조업일수 60일 이상
전남	신안군	우이도, 동소야도, 사소야도	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흑염소 사육과 아업이 주 꽃게, 새우, 돌김,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해지망 2척 연안지망 8척 연승 30척 양식관리선 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a, 20전kg, 우럭, 전북 개인면허, 다시마 5ha, 500kg 공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2.8ha 간미역, 간가사리, 톳 맨손어업 미물공동 작업 조업일수는 한달 가량
전남	신안군	상하테도	노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보리·콩·고구마·마늘 멸치·오징어 김 양식 염전 발달로 지역소득의 50~60% 차지 				
전남	신안군	상하테도, 기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염전 많음. 아가 30%가 염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 3척, 500kg 우럭, 방어, 송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ha, 김, 전북, 새우 김(7~87구), 전북기두리(37구)20ha, 새우축제식 7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ha, 23500kg 철게, 낙지, 굴 낙지, 굴 채취 조업일수 140일 개별채취, 개별판매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하의도, 개도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의도-쌀·보리·콩·고구마·고추·마늘·과·멸치, 장어, 낙지·전통식초·유자, 염전, 김·미역·톳 양식 •개도-양식업 주업, 김·톳 양식, 바다 뉴시터로 유명, 도미·농어·우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ha, 전복, 우럭 •개인임대 •200ha, 다시마, 미역 	
전남	신안군	신도, 장재도, 대야도	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농업과 어업 겸, 보리·고구마·콩·마늘·참깨, 참조기·고등어·전갱이·갈치, 미역·톳·채취, 김 양식 •장재도-김, 굴·미역양식, 조기·삼치·고등어 •대야도-농업과 어업 겸, 쌀·감자·고구마·보리·콩, 갈치·고등어·조기·꽃게, 김·미역·톳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km •생필품 구매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명(각망)2척, 농어, 도미, 우럭 •복합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ha, 20000kg, 톳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20ha, 2500kg, 톳, 미역 •공동어장은공동작업, 공동판매, 조업일수 120~150일, 소득 약500~600만원 •정치명(각망), 0.5ha, 농어, 도미, 우럭
전남	신안군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김·굴·새우 양식 				
전남	신안군	욱도	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고구마·콩·마늘·참깨 •멸치·문어·낙지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각거리 3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연승2척, 송어, 농어, 간채미 •양식관리선10척,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ha, 김-17명 행사 •양식면적은 개인별로 다름 •김양식- 부류식, 지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ha, 갯지렁이, 낙지, 석화 •개별채취, 개별판매 •조업일수 100일 이상
전남	신안군	평서도, 고서도	고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보리·콩·고구마, 땅콩·미늘 •멸치·잡이 •조개·꼬막·대합·낙지·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상태어촌계에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선 9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ha, 70000kg, 톳 •전복 20ha, 올해 시작 •툫양식 30ha(5ha씩 67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 톳, 파래, 우룻가사리, 자연산 전복·다랑어·하고 공동판매함 어업일수 120일 이상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가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다수 어업 종사 조기 멸치, 전복, 농어 후박나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자망 16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도로 허가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ha, 6500kg 미역, 소라, 전복 개인 행사 계약 행사비로 부락경비 조달 172세대 공동작업, 공동분배, 조업일수 90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가거2, 3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 5척 자망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0ha, 30000kg 전복, 해삼, 소라, 미역, 톳
전남	여수시	금오도	우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 삼치, 정어 미역,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동력선 多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가구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로 어기수 감소 			
전남	여수시	금오도	두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착장 없어 어선어업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장머취, 상강머취, 낭장머취- 모두 타 마을 사람에게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ha, 1000kg 미역, 전복 전복은 진도 해녀에게 행사 미역 공동채취, 공동판매 조업일수 35~40일, 1인가구 소득 200여만원, 2인가구 400여만원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함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격거리 26km 생필품은 연료유만 구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망2척, 2500kg, 돛, 방어, 대구 연안복합4척, 1700kg, 장어, 볼락, 노래미 동력선5척, 2100kg, 잡어, 해삼, 전복 무동력선9척, 1300kg, 건다시마,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ha, 2100kg, 다시마, 전복, 미역 함양양식어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ha, 800kg, 전복, 다시마, 톳 전복5ha(10명) 미역+다시마5ha(10명)
전남	여수시	금오도	승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a, 10000kg, 조피볼락, 도미, 전복 7명 공동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ha, 200kg 톳, 우뚝가시미, 미역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여수시	금오도	대소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망9척, 불락, 김중어, 전어, 갈치, 짐어 • 자망2척, 조기 • 조망1척, 새우 • 연안복합5척, 삼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ha, 전복, 해삼, 성게 • 937구 공동작업 조업일수 35일. 공동경비제외후 가 구별 한물 지급
전남	여수시	금오도	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우조망3척/2500kg/새우, 고록, 짐어 • 통발척/1000kg/장어, 문어, 기타 • 각망6척/4500kg/송어, 감승어, 돔 • 복합6척/7000kg/문어, 장어, 기타 • 자망척/400kg/양태, 서대, 오징어 • 관리선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ha/4070kg/전복, 다시마 • 양식 6 가구 • 전복 6x6m=17두리당 행사로 2만원 • 다시마 1줄(200m)당 행사로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ha, 톳, 미역, 우뚝가시리, 전복, 해삼, 멍게 • 공동작업, 공동분배 • 조업일수 40일 • 수익금으로 마을경비 조달 • 나머지는 전체어가 1/n (어가당 30만원 가량)
전남	여수시	금오도	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복합 2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ha, 돔, 다시마 • 개인에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ha, 1500kg • 전복, 해삼, 톳 • 조업일수 3개월~6개월 • 공동채취, 공동분배
전남	여수시	안도	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농반어 • 고구마·보리·무·시금치·미늘 • 멸치·갈치·방어·쥐치·민어 • 김·미역·홍합 양식 • 부도·보리, 고구마, 우럭·광어·멸치·노래미·전복·굴·김·소라·톳 • 부도와 안도 사이에 나룻배 왕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복합 25척 		
전남	여수시	안도, 부도	서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발 12척 • 연안복합 15척 • 자망 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ha, 10전kg, 도미, 우럭, 불락 • 개인면허, 31ha, 20전kg, 도미, 우럭, 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ha, 4000kg • 전복, 해삼, 톳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여수시	연도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절반 이상 농업 종사 나머지는 반농반어 쌀·보리·콩·녹두·고구마 멸치·가지미·쥐치·도미·전어·낙지·문어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예전에는 어업이 주였으나 저인망김장척으로 어업 비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지망1척 통발5척 북합6척 양식관리선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ha, 2500kg,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령생이 우럭(가두리)30ha2호 우렁생이·홍합(10ha2호) 개인면허·광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ha, 김, 톳, 가시리, 전복, 해삼 전복과 해삼은 해녀 채취 후 4:6으로 나눔 톳, 가시리 채취권 행사임대 전복, 해삼, 톳, 김, 전복포함 임대수익금 17구당 90만원정도.파래, 봉하니, 되버리 등을 마을어가들이 개인적으로 채취해서 판매하기도 함. 맨손어업어가 조업일수는 60일
전남	여수시	연도	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복합(낙시배) 4척/통발 4척/자망 15척/새우, 조망 3척/관리선(해녀) 2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ha/10000kg/전복, 해삼, 소라-마을해녀 5명 있음. 맨손어업 인하고 어촌계 수익금을 받는경우 있음 연세 많으셔서 작업은 안하지만 수익금은 분배됨. 어업일수 3개월~6개월
전남	여수시	대두리도	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고구마·감자·보리·무 쌀·콩·마늘 멸치·갈치·낙지 전복 채취 김·홍합 양식 				
전남	여수시	소두리도, 니밭도	니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고구마 멸치·문어·장어·쟁아리·쥐치 전복·김·미역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ha(200000kg)/우럭, 농어, 감성돔-187구가 나눠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ha/3000kg/바지락, 톳, 전복, 해삼-외지해녀를 불러서 작업 해녀:어촌계 7:3으로 나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여수시	대항간도 소항간도	황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마늘 오징어·우럭·광어·멸치 전복·해삼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내리 중심으로 주변 섬들을 오가는 배로 황간리에서 타서 돌산항으로 김(약 4~5분 걸림) 	연안복합36척/멸치, 정어 통발5척/문어, 정어 저망1척/잡어(우럭, 도다리, 광어)	10ha/40200kg/우럭	17ha/4000kg/해삼, 전복-해파·마늘 4:6으로 분배 마늘이익금을 43가구가 나눔. 공동작업 연말에 17구당 70만원정도 나누어가짐. 1년 50일정도 작업
전남	여수시	적금도	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고구마·쌀·콩 멸치·정어·문어 김·피조개 양식 			390ha-살포식, 소화식, 해조류	100ha이상
전남	여수시	둔병도	둔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 보리·쌀·마늘·콩·무 참조기·고등어·전갱이·멸치·갈치·방아·도미·꽃게 김·꼬막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저망 1척/연안통발 4척/연안복합 1척/냉장망 1척/무동력선(외출남시) 16척 	90ha/45000kg/새꼬막-양식면허(폐류)도 공동작업해서 공동판매	36ha/30000kg/꽃, 참꼬막, 바지락-180일정도 일함. 맨손어업인끼리 분배
전남	여수시	여지도	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보리·무·마늘·땅콩 참조기·멸치·낙지·새우·붕장어 새꼬막·피조개 양식 		저망35척/승어, 서대, 양태, 농어 연승12척/낙지 통발10척/낙지 조망3척/새우	300ha/400kg/새고막-2008년 400톤, 2009년 없고 2010년 100톤	200ha/6000kg/바지락, 새우-공동작업, 공동분배 30일. 57구당 10ha 공동작업, 공동분배 200만원정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마·감자·마늘·보리·콩·유채·참깨·양파 삼치·멸치·정어·도미·갈치 지연산 굴·미역·조개 채취 			15ha-우렁쉥이	14.8ha
전남	여수시	서도	덕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늘, 감자, 유채·참깨·양파 멸치·삼치·갈치 툰·미역·조개류 채취 		307구		
전남	여수시	서도	서도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여수시	동도	유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마늘·보리·콩·유채·참깨 •고등어·전갱이·멸치·도미·참조기·갈치 •미역 양식 		<p>통발 5척/복합 6척/저망 2척</p>	<p>2ha/ 우렁쉥이 -업자들이 1~2개월동안 태풍을 피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곳으로 옮기는 장소로 생산량은 측정하기가 곤란함.</p>	<p>63ha/700kg/해삼, 소라, 전복, 해초류-1종공동미물어장중 58ha는 다른 어촌계와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어촌계와 검칠수가 있음. 1/n으로 나눔</p>
전남	여수시	동도	죽촌				<p>10ha-어류(기두리) 5ha-다시마 6ha-우렁쉥이</p>	<p>1종공동</p>
전남	여수시	초도	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콩·고구마 •멸치·갈치·고등어·민어·납치·쥐치·문어·낙지 •김·미역·통·창각·우룻가시리 •전복 		<p>복합 5척/관리선 1척</p>	<p>80ha/1169.8kg/전복, 소라, 해삼</p>	<p>80ha/1169.8kg</p>
전남	여수시	초도	의성			<p>연안저망 5척, 연안복합 1척, 관리선 1척, 동력선3척</p>	<p>없음</p>	<p>57.8ha/150000kg/전복, 소라, 홍합</p>
전남	여수시	초도	진막			<p>무허기3척/6000kg/서대양배 통발1척/5kg/괭어, 우럭, 돔 저망4척/괭어, 돔, 서대 복합2척/문어, 광어, 잡어, 서대</p>	<p>없음</p>	<p>40ha/10000kg/소라, 굴, 홍합, 전복-전복과 소라는 마늘해너들이 작업. 맨손어업 작업일수는 90일~100일정도 작업</p>
전남	여수시	순주도	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고구마·마늘·옥수수·보리·양파·콩 •문어·삼치·방어·도미 •자연산 톳 채취 •미역·김 양식 	<p>-파도때문에 양식 못함</p>	<p>연안복합5척/우럭, 농어, 능성어 통발1척/문어, 방어 무허기어선4척/우럭, 농어</p>	<p>없음</p>	<p>80ha/2000kg/전복, 소라, 홍합, 톳, 미역, 김-자연산 채취는 톳, 미역, 김 채취함. 가구당 소득30~50만원, 해너들이 채취해서 각호당 1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톳, 미역, 김 등은 개인채취로 30~50여만원 정도</p>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여수시	소거문	소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늘 •전복, 문어 		연안복합 2척	파도때문에 없음	5.6ha/300kg/전복, 소라, 해삼-멘손어업 1~3개월은 60일 미만 작업. 어촌계 시범항에 부타해서 전복, 소라, 해삼 채취, 자연산 돌미역, 툇, 돌김도 채취
전남	여수시	평도	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총합 		1.5ha-전복, 패류		소라, 전복, 총합
전남	영광군	인마도, 석만도, 오도	인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거나 농업에 더 많이 종사 •쌀·보리·옥수수·미늘·콩·참깨·고추 •참조기, 멸치·갈치·고등어·넙치·가지마·민어·도미·붕장어·낙지 •김 양식, 미역·툇·우뭇가사리 		연안자망8척/연안복합 7척/구획어업(이강망)-1척/통발-2척	96ha/500000kg/전복, 다시마, 미역-전복양식은 개인행사함	54.5ha/50000kg/전복, 해삼, 소라-바지락, 굴, 미역은 개인 각자 채취, 판매. 자연산 전복, 해삼, 소라는 짐수부 동원해서 매출을 일부 줌
전남	영광군	송이도	송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농업 종사 •보리·쌀·감자·유채 •오리·소·돼지·닭·기축사육 •참조기·새우·고등어 •미역·꽃게 		연안자망 12척/통발 3척/연안복합 5척	50ha/900kg/바지락, 백합, 굴, 맛	220ha/2600kg/바지락, 백합, 굴
전남	영광군	신낙월도, 대각시도	상낙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 종사 많음 •새우젓, 병어, 돌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온상승으로 김양식 피해가 크다보니 점점 김양식 어가수 줄어 들어 지금은 20여기만 함. 해조류 피해가 커서 소득이 적음 		5ha/김-임대로 안발음. 김 양식 자체가 안되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함	105ha/410000kg/백합, 고막, 바지락, 맛-1년 300일 정도 작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영광군	하남월도	하남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멸치·조기·가지미·갈치·문어 김 양식 		근해저망 11척(연어저망 4척/연어복합 1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 없음
전남	완도군	원도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면허(동력선) 3척/문어, 장어, 썸베-미을시람 1명하고 어촌계장님이 배한척 가지고 같이 어업해서 똑같이 나눔 	없음	16ha/170kg/전복, 소리, 해상-외지해녀 불러서 작업함. 호당 수입금 30만원정도 지급. 지연산 톳, 미역, 돌김 등은 공동 작업. 개인별 채취하기도 함. 공동채취는 공동판매, 개인채취는 개인판매함. 작업일수 20~30일. 어기소득 20만원
전남	완도군	신도	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고구마·콩 도미·농어·붕장어 김·미역·다시마 양식 		없음	25ha/전복, 어류, 복합 미역, 다시마, 톳-어류 1ha, 전복 4ha, 복합 20ha. 건다시마 생산, 전복양식 초기 단계로 생산량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삼, 전복, 톳, 병포-해삼과 전복은 외지해녀 불러 작업해서 해녀와 어촌계가 나눔. 톳과 병포는 공동채취하고 공동판매해서 마을은 영비로 사용. 연간 2~3일정도 작업함
전남	완도군	황간도	황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 주로 어업 종사 멸치·도미·붕장어·불락·문어 김·미역·전복 양식 쌀·보리·고구마·콩·마늘·무·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어통발 1척/관리선(김양식) 3척/관리선(전복양식) 1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ha/198000kg/전복, 김, 다시마-전복 7ha 10가구, 김 16ha~22ha 37가구, 다시마 20ha+20ha 10명/전복 30000kg, 생김 160000kg (2000포대), 다시마 8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23000kg/전복, 톳-멘손어업작업일수1개월미만(건톳7000kg, 생톳15000kg, 전복1000kg)
전남	완도군	당사도	당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지연산 톳과 미역, 우룻가시리 김·굴 양식 		채취선 2척/복합어선 1척	214ha/6000kg/김	110ha/3000kg/전복, 톳, 미역-약 90일이상씩 일하고 채취량은 각자 가져가기 때 문에 소득액 다름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평일도	감목리	주민들 주로 어업 종사 •미역·다시마·뿔 •멸치·장아·도마·농아·문어 •쌀·보리·고구마, 콩, 유자재배				
전남	완도군	평일도	구동리					
전남	완도군	평일도	공항리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도장리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동백리				전복-0.8ha 개인임대부합-2.5ha	소라, 해삼, 전복-미물해녀 들이어촌계70%해녀30%-나눔 뿔, 미역은반별로공동작업
전남	완도군	평일도	동송리					
전남	완도군	평일도	사동리				전복, 다시마, 미역	
전남	완도군	평일도	상화전				전복, 미역, 다시마	
전남	완도군	평일도	신평리			없음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흥리			연안부합5척 통발6척	42ha/5000kg/다시마, 미 역-19어가가 행사함. 1어 가당 행사비 50만원씩 공 동경비로 사용	40ha/뿔, 가시리, 우뿔-1년 전주민10일작업. 공동작업, 공동채취.연말에1어가당300 만원씩나누어줌
전남	완도군	평일도	월송리					60ha/해삼, 성게, 전복, 뿔 -1년 270일정도 작업. 어촌 계 6반으로 나눠 반별로 구 획정해 반별로 공동작업. 공 동분배. 미물경비 쓰고, 나 머지 아가당 150만원 정도 연말에 지급
전남	완도군	평일도	일장리			양식관리선약36척	136ha/전복, 미역, 다시마 -38~40어가가	
전남	완도군	평일도	척치리		•척지에서 일장까지 3km	양식관리선(동력 동력) 26척	257.8ha/전복, 미역, 다시 마-907기구가 양식하는데 어가별 면적 차이	30ha/바지락, 꼬막-맨손어 업만 하는 어가 45~50일 조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평일도	허화진					
전남	완도군	소량도	소량			기슬린 48척	134ha/미역, 다시마, 전복 -전복(기두리양식, 51ha, 22 가구정도 됨). 미역, 다시 마(부류식, 129ha)	30ha/전복, 소리, 해삼-해 녀채취 후 분배, 미물자급으 로 사용. 톳, 병포, 미역, 바지락은 미물주민들이 공 동채취 공동판매해서 돈나 봄. 연간 15일정도 작업, 어기당 100~200만원
전남	완도군	우도	우도		여객선 없음, 금일까지 자기 베로 5km, 금일에서 육지가 지 여객선으로 5km, 어선은 양식장 관리어선 뿐임	양식관리선 5척	39ha/627000g/미역, 다시마, 참각	31ha/496000kg/톳, 진표, 병포-굴투석도함. 1종공동 어장. 소리, 굴 채취시 해녀 들이 채취.5:5 분배
전남	완도군	다량도	다량도	•반농반어 •콩 등의 두류 •멸치·소·해삼·미역·전복	미물공동어업활동만하는노 령이기도있음, 섬에다니는어 객선이없음, 비조합원이면서 낚시하는사람도있음		21.25ha/70000kg/다시마, 미역	98ha/1800kg/다시마, 미역, 멸치
전남	완도군	섬도	섬도	•약간의 콩 재배 •돌김·미역·다시마·전복 채취				
전남	완도군	총도	총도	•쌀·보리·고구마 •고등어·전갱이·갈치·새우·도 미·방어 •미역, 다시마, 톳, 전복 양식		양식관리선7척/ 농정망 1척		
전남	완도군	항제도	항제도	•멸치·갈치·전어·조기·쥐치 김·톳·미역·파래	•파도 때문에 양식어장 없음 •완도에서 배편이 이틀에 1 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야 윤행함	없음	없음	70ha/톳, 미역-8가구가 공 동작업, 공동분배 연간 50 만원도 작업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의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장도	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 대부분 어업 종사 고등어·전갱이·삼치·장아돔·우럭 툰, 미역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배를 타고 초도항으로 5km 나가서(군에서 지정한 배)-초도항에서 여수항까지 58km 	없음	없음	500kg/전복, 소라, 패류-해녀 채취, 툰, 미역 등 자연산 해조류도 노령화로 인근 어촌계 사람들 불러서 작업함. 생산금액 가지고 77가구 나눔. 10일정도 작업
전남	완도군	노회도	이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콩·참깨·고구마·마늘·도미·삼치 김·굴 양식 수산물가공업 활발 천일염 생산 		3~4명	12ha -전복, 다시마, 미역, 툰	
전남	완도군	노회도	포진리			없음	전복, 다시마	
전남	완도군	노회도	잘포리			없음		
전남	완도군	노회도	당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어가 평균 5톤 생산 전복양식 활성화로 아가자녀들의 귀촌 증가 양식어가 평균연령 30~40대, 아가별 2~4명 자녀 		전복 양식, 다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공동 미늘어장지는 머구리 공용하여 전복, 소라 채취 전복, 툰, 가시리 등 연간 7일 정도 공동작업해서 수익금을 미늘기름으로 사용
전남	완도군	노회도	삼미리			크레인배(관리선) -18척/관리선-34척	38ha/17000kg전복, 다시마, 미역	없음
전남	완도군	노회도	미라리			양식관리선 280척/1100000kg/전복, 미역, 다시마	109.5ha/1100000kg/미역, 다시마, 전복 전복(79.5ha) 76호 행사 개인면허, 2ha/미역, 다시마	5ha/전복, 해삼(살포식)-잠수부 등원해서 채취. 청년회에서 관리해서 청년회원들이 청년회 운영비로 사용
전남	완도군	노회도	북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으로 어업종단 기구 많음 	없음	244ha, 2200톤kg, 전복, 해삼, 미역 전복(64ha) 587가구 행사 미역, 다시마(184ha)580가구	84ha/100t/툰, 병포, 진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노화도	신리					
전남	완도군	노화도	신목리			2~3기구(문어, 낙지)	전북, 다시마, 미역	미역, 툇
전남	완도군	노화도	구목리				46ha/10000kg/전북, 미역, 다시마	14ha/5000kg/툇
전남	완도군	노화도	동고리			307기구(전북 양식용)		
전남	완도군	노화도	친구리				61a-전북 8.5ha-미역, 다시마	툇
전남	완도군	노화도	충도리			전북(관리선)50척/800천kg 다시마, 미역(관리선)24척/ 1000000kg/다시마, 미역 무동력9척/다시마 연안복합양치/낙지, 망둥어, 우럭 •크레인4톤이상 20척, 2톤 이상 54척, 무동력 9척	192ha/580000kg/김, 전북, 미역, 다시마-전북(547구) 1/n면적, 김(30여기구) 1/n 면적, 전북과 김 같이하는 아가(307구)	19ha(600kg)/툇, 미역, 낙지 -공동마을어장 맨손어업단 헤도 90일이상 작업하고 낙 지채취량이 적어 금액은 높 지 않음. 연세많은 분들은 툇, 미역 공동작업 6~7일, 10여 만원
전남	완도군	장사도	이목리					
전남	완도군	노루도	노루리				전북, 다시마, 미역	
전남	완도군	미삭도	미삭리	•반농반어 •고등어전갱이·멸치·갈치·도미 •김·굴 양식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대 부분 어업 중단, 3~4기구 만 어업소득 올림			
전남	완도군	넙도, 후장구도 미안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내리	•반농반어 •고구마·보리·미늘·곰 •갈치·삼치·도미·농어 •김·소라·전복 양식	•자기베로 노화항까지 5km 정도 감	없음	2ha/500kg/전북	500kg/전북, 툇, 해삼, 소라 -자연산 전복, 해삼, 소라는 헤너 불러서 작업후 비올때 로 금액 나눔
전남	완도군	넙도	방축리					



수산물 안전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서남도, 죽골도	서리	서남도-반농번어, 고구마·보리·무·파·콩·미늘, 삼치·해태·돔·전복 •죽골도-김·미역·돔·파래채취				
전남	완도군	대정구도	내리	•자연산 미역, 돔		없음	2ha/500kg/전복	500kg/전복, 돔, 해삼, 소라 (자연산 전복, 해삼, 소라는 해녀 플러서 작업후 비올때로 금역 나눔)
전남	완도군	대제원도	내리	•보리·콩·미늘 •도마·도다리·농어 •김, 돔 양식				
전남	완도군	모항도	등촌		버스타고 원도읍까지 10km) 신지와 원도사이에 연육교 있음	양식관리선 1척 17척/연안통발	80ha/1325000kg/다시마, 미역, 황각(간조)-207구가 같이함	18ha/전복, 돔, 해삼, 소라, 성게-1년에 90~120일정도 공동작업
전남	완도군	청신도	구장리	•쌀·보리·고구마 •딸치·도마·민어·갈치·쥐치·장어·문어·낙지 •김·미역 양식	구장리항에는없고청신도내 도청항이있음구장리항에서 도청항까지5km	연안복합 2척/연안어망 2척/양식관리선 1척	7.5ha, 1100kg, 돔(미른)	해안선 300m/100kg/미른·돔·전복, 소라, 해삼 채취는 읍리어촌계내 행사권을 줌
전남	완도군	청신도	국화리		•해파리 피해로 주요 소득원인 남정망 멸치잡이 망침	남정망11척/멸치 양식관리선21척(남정망포함)/전복, 다시마	20.5ha/다시마, 전복, 해삼	마을공동어장
전남	완도군	청신도	권덕리					
전남	완도군	청신도	당리			연안복합1척	마을어장-미역1000평, 돔 2000평, 임대해서 727구별 년5~6만원정도씩 수수로 분배	40ha/25000kg/미역, 돔, 전복-자연산 소라, 전복, 해삼은 도청리 해녀들 불러서 채취한후 5:5로 분배. 돔, 미역, 천초, 우뚝가사리 채취, 작업한 사람에게는 권리권을 인정해주고 인당 50~60만원, 2인가구 100만원 정도 줌, 해당지역은 타지역 해녀들에게 임대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도락리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도항리	•어선 김축 많음	관리선 100척/전복	108ha/전복 •70호에 행사비 받음		200ha/소라, 해상 툫, 우 룻가사리-1년 2일작업. 전 주민 참여 원척, 작업한 사 람이 생산한거 가져감
전남	완도군	청산도	동촌리			김양식허가 받아서 임대		툫, 미역 어업허가는 있는데 작업은 안함
전남	완도군	청산도	상서리		없음 -배는 임대해서 사용	없음		20ha/5000kg/전복, 미역, 툫-미역, 툫, 가사리, 우무 등 자연산채취로 1년소득이 15000만원 정도, 아가당 소 득 500만원
전남	완도군	청산도	신흥리		긴척되서 없음	107ha/전복, 미역, 다시마, 김-김(56ha), 다시마, 미역 (41ha), 전복(10ha)13호가 나눔, 개인면허없음		10ha/2000kg/툫, 진포, 미 역-총 45호가 참여 양식어 기도 맨손어업참여함. 1년에 17구당 약 30~40만원정도 어업일수는 30일정도 함
전남	완도군	청산도	완동리		없음	전복, 다시마, 미역-타지인 에게 임대해줌		5.5ha/툫, 미역, 전복-맨손 어업은 30일 조업, 공동체 취공동판매후 분배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읍리		없음	124.5ha/노령화로직접못해 서도청리사람에게임대해줌 개 인 면 허 5건 - 복 할 양 식 20ha, 헤조류양식7.5ha, 도 수나짐22ha, 해태양식95ha, 전복양식2ha		22ha/1880kg/전복, 소라, 해삼-외지 해녀 고용하여 채취. 어촌계 양식면허 임 대. 직접 어업 아가없음. 1 년내 행사료로 각 호당 50 만원정도 지급
전남	완도군	청산도	중흥리	중흥리에서 도항항으로 7km 버스로 이동	없음	전복, 기두리 3ha/다시마, 미역 3.4ha-작년에는 1가 구 현재는 27구		0.2ha/3060kg/툫, 병포, 진 포, 우룻가사리-17호가 참 10월~7월까지 작업, 실제 작업 100일 맨손 공동어업 기구 소득은 75만원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청산도, 장도	지리		완도에서 19km, 1047구	양식관리선62척 농장망9척 연승업(겸용선)8척	219.7ha/45000kg/전복, 다시마, 미역-1어가 3년계 역(부락경비로 사용 32간 =1조->20만원, 2조->25만원, 3조->30만원씩 받음)	전복, 톳, 해조류 60ha (104가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진산		진산항에서 도청항으로 도청항에서 원도항으로 이동	예지망(자망) 1척	160ha/김, 미역-4가구 해초양식 160ha 중 김 100ha는 4명이 행사함(면적다름). 다시마, 미역은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	40ha/2500만원/전복, 톳, 미역, 가시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창계리					맨손어업만 있음, 모두 60일 이내 활동
전남	완도군	여서도	여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쌀·보리·콩·참깨 도미·숭어·도다리 지연산 돌미역, 해삼, 전복 채취 		107가구(장어, 돔)	양식면하는 인돔(파도 높고, 물살세서)	톳, 미역-반별작업 소라, 전복-여서리해녀직업, 어촌계와 해녀 비율 분배
전남	완도군	대모도	모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감자·쌀 마늘·콩·보리·참깨 멸치·도다리·삼치·숭어·도미 김·미역 양식 지연산 굴·톳·전초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4km 생필품 구매가능 	삼치 -정치망 어선이 7~8척 있으나 고령화로 실제어업하는 어기는 없음	247ha/김-고령화로 못해서 소안의 다른 어촌계에 임대	돌미역, 병고, 진포, 전복, 소라-전복과 소리는 미물해녀와 외지해녀가 행사료만 내고 같이 채취함.
전남	완도군	대모도	모서리			농장망5척 삼강망3척 어장관리선1척	384ha/전복, 미역, 다시마, 톳, 김	50ha, 10000kg, 전복, 다시마 •맨손어업만 하는 어기들은 90일 조업, 100~300여만원
전남	완도군	소모도	모복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km 생필품 구매가능 	양식허가선 1척(300kg/도미, 농어	20ha/25000kg/김 •공동작업해서 1/n으로 나눈. 직업할때 17구당 1명씩 작업. 김 양식은 공동관리	30ha/미역, 톳, 우뚝가시리, 전복-해녀 불러서 직업 4:6으로 나눈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소안도	기학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콩·고구마 파인애플·굴·고추 멸치·민어·방아·도미·기오리·고등어 굴·전복·미역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전복 25ha 다시마-200ha, 개인임대 	낙지, 소라, 전복, 해삼
전남	완도군	소안도	동진리			양식관리선 30척	45ha/45000kg/전복, 다시마, 미역-전복 5만, 미역 10만, 다시마 30만 생산. 전복, 다시마, 미역 (20ha) 해조류 (25ha). 총 257가구 양식. 김양식 67가구(타지역 양식장임대)	2ha/5400만원/툰, 전복, 해삼-6~9개월 종사. 기구별로 20만원씩 나눔. 고품질 들은 일을 못하고 어촌계 해녀들이 전복채취. 톳은 공동작업
전남	완도군	소안도	맹선리			농장망 3척-어선어업 농장망 37구 제외하고 모두 양식관리선	83.5ha/177000kg/전복, 김, 미역, 다시마- 각 7ha 정도 면적내 생산량이 각 150t 정도 생산. 전복 137ha를 27명이 똑같이 나눔. 미역, 다시마(복합양식) : 27명이 나눔. 김 : 34.5ha를 77구가가 나눔	36ha/3500만원/툰, 전복, 소라, 해삼-1종공동어업 전복, 소라 채취는 외지해녀들 불러서 작업 6.4(해녀)로 나눔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리리			17구(통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복합-60ha 김 387.5ha 	
전남	완도군	소안도	부상리			없음	450ha/65000kg/생김-13가구가 함. 파도가 높아서 김양식 채취량이 다른 어촌계에 비해 50%밖에 안됨. 70k마데 X 7 X 1400줄	0.25ha/7000kg/미역, 톳-공동작업해서공동분배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소안도	복음리			남정만 15척/정치망 2척	302.5ha, 김, 2520000kg, 김, 전복, 다시마-전복, 다시마 복합양식-20여기가 개인행사합(3ha), 전복 가두리-1명 행사(2.5ha), 김양식-16명(297ha)	35ha/8000kg/툰, 전복-멘손 어업 45일 조업 정치망-농어, 송어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동리					
전남	완도군	소안도	비서리			정치망3척 지망3척 연안복합5척 양식관리선100척	697.5ha/김, 미역, 전복-개인채취	3.5ha/전복, 소라, 해삼, 톳 -1년 10일기량 전주인 참여 작업, 판매소득은 부락경비로 사용하고 남은건 연말에 17구당 20만원 정도씩 나눠기짐
전남	완도군	소안도	서종리		•2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 1년에 전복 소리를 채취해서 수익금은 개인분배함. 50호정도 멘손어업자가 200만원. 30일정도 일함	김13척 다시마25척 미역25척	232ha/김, 전복, 미역, 다시마-김 190여ha(107구), 전복 7ha, 미역 다시마 40ha	35ha/전복, 소라, 해조류
전남	완도군	소안도	소진리			남정만 5척/복합어장 7척	210ha/42500kg/미역, 다시마-397구정도 나누지만 똑같은 없음	15ha/1000kg/전복, 해조류, 톳
전남	완도군	소안도	월항리		•최근 정장년총 유입		전복, 복합, 김	투석식, 해조류
전남	완도군	소안도	이목리				양식면허 없음	노령화로 채취안함
전남	완도군	구도	구도	•반농반어 •감자-보리+콩 •장아-도미+볼락+멸치 •김, 미역 양식		연안통발 1척	81ha, 3960천kg, 김, 전복, 다시마 •전복 가두리 12ha, 187구 •복합양식 20ha, 237구	0.3ha/1000kg/전복, 전초, 병포(가사리)-전복은 외지해녀 불러서 작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당사도	당사	•반농반어 •자연산 톳, 미역, 우뚝가사리 •감, 굴, 양식			•김 49ha, 47가구	
전남	완도군	금당도	기화			양식관리선 65척	718.5ha/미역, 톳, 다시마	146ha/해삼, 톳, 전복, 파래 -1년에 100일정도 작업. 행사 참여비 1인당 10만원 씩 받아 마을경비 조달
전남	완도군	금당도	봉동리			없음(양식관리어선)	부녀회공동양식장에서 소득 발생, 호당 100만원 미만 57ha복합(미역, 톳, 다시 마)	36ha/바지락, 굴
전남	완도군	금당도	삼산리			없음(양식관리어선)	전복(4~5명 행사) 가두리 100 ha 넘음, 개별 생산	해삼, 패류
전남	완도군	금당도	세포		•이각거리 10km •생필품 구매가능	관리선4척/미역, 톳, 다시 마(멸치)농장양2척/멸치	60ha/309000kg/톳, 미역, 다시마	80ha/5000kg/굴, 바지락, 꼬막
전남	완도군	금당도	신흥리					
전남	완도군	금당도	올포			연안연승11척 양식관리선12척	53.5ha/다시마, 미역, 톳, 돔-개인면허-(어류)전복양 식1가구	2ha/800kg/해삼, 전복, 소라, 톳-공동어장, 공동채취. 1년 에 30일정도 일할 수익금은 미물공동자금으로 운영. 전 복, 해삼등을 채취하는데 마 을어가들이 시리때 직접 채 취하는데 채취량이 적어 작 년에 30일정도 어업하고 총 500여만원정도 소득됨.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금당도	육동리		•고령으로 어업 활동 중단 기구 증가	없음	314ha./120000kg/미역, 다시마, 버지락, 파래, 톳	113ha/30000kg/파래, 매생이, 버지락
전남	완도군	금당도	차우			연안복합양식	73.7ha/75000kg/미역, 톳, 다시마	88ha/44000kg/굴, 고막, 버지락-1종어장내에서 공동으로 패류채취
전남	완도군	허우도	허우	•멜치·장어·문어·감성돔·오징어 •김·미역·다시마·조개·꼬막				
전남	완도군	비건도	비건리	•반농반어 •보리·고구마·쌀·참깨 •문어·도미·민어·붕장어 •김·미역·다시마 양식	•고령자 50%로 어업 중단	농장면양식/22500kg/잡어 통발양식/(4000만원정도)/ 문어	64ha/350000kg/톳, 미역, 다시마, 전복- 5가구가 개 인적으로 행사함. 면적은 복합면허. 500만원정도 수 익금 어촌계 부락자금으로 사용	0.8ha/톳, 미역-1년에 10일 어업함. 공동작업하고 공동 자금으로 사용
전남	완도군	보길도	백도리	•쌀·보리·감자 •도미·삼치·멸치 •김·미역 양식	•노령화로 어기수 감소	양식관리선 80척	170ha/20000kg/다시마, 미역, 전복	91ha, 3000kg, 톳, 전초- 맨손어업은 1달 미만 조업
전남	완도군	보길도	종리					
전남	완도군	보길도	여항리			없음	55ha/104000kg/전복, 다 시마, 미역-25호가 면적을 뚝갈이 나눠서 행사함. 가 두리 양식. 조사진행한 어 가종 1~2아가 빼고는 전 부, 다시마, 미역 다 양식 함	톳, 우뚝가사리, 전초, 버지 락, 전복, 해삼-전복, 해삼 은 이웃어촌계(종리, 통리) 헤너들이 와서 채취해 헤너- 어촌계 4:6으로 분배. •1종어장내 전복, 소리는 다 이버 고용해서 작업, 수익금 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 맨손어업만 어기는 공동작 업, 공동판매할 15~20일정 도 작업일수 10가당 80여만 원정도 수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보길도	통리			양식관리선(큰배) 50척(작은배) 9척	68.4ha/전복, 미역, 다시마, 톳-전복양식54호가전복면적호14.8ha.비수한면적으로 나눠서양식하는가두리양법.미역, 다시마는먹이로부류식으로함. 전복양식어기는미역, 다시마100%갈비양식함.전복123000kg, 톳22500kg, 247.4ha/425000kg/전복, 미역, 다시마, 톳-전복(50가구)면적을똑같이나눔.톳(707가구), 미역, 다시마(50가구)	20ha/톳, 전복, 가시리-맨손어업어기는 공동작업, 공동판매 하고 15~20일작업 50만원정도 됨
전남	완도군	보길도	예송리			양식관리선 117척	24.8ha/100000kg/전복, 다시마-전복(4.8ha), 다시마(20ha)16점이비수하게면적나눔.개인행사함 개인면허없음	75ha/200000kg/톳, 우뚝가시리-공동어장 채취 1년에 30일 미만 정도에 40만원 소득
전남	완도군	보길도	월송리			양식관리선14척		20ha/5000kg/미역, 우뚝, 세미, 톳-307구가 다 공동채취, 공동분배. 맨손어업가구는 30일정도 어업일수됨. 공동작업이라 17구당 30만원. 톳은 277구가 공동작업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부흥리					
전남	완도군	보길도	보옥리		•보길에서 노화는 다리노 연 결됨	구획어업(낭장망)1척/멸치 저망1척/삼치 북합연승10여척/삼치, 갈치, 준치, 오징어 양식관리10척	8ha/10ha/톳, 미역, 다시마	1ha/전복, 톳, 미역-공동작업, 공동분배함 1가구당 2명 작업 원최(79만원), 1가구당 1명 작업(35~40만원). 1년에 톳은 3~4일, 미역 2일, 전복 20일 작업함. 전복 수확량에서 1kg 당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25000원씩 헤너 수고비로 주고 수익금은 마을경비로 씀. 올해는 전복을 개인에게 1년에 800만원의 받고 임차, 마을경비로 씀
전남	완도군	보길도	정자리			양식관리선 97척	60ha/680000kg/전복, 미역, 다시마	40ha/55000kg/전복, 우돔가사리, 톳-맨손어업은 7개월 이상 작업
전남	완도군	보길도	정동리		•정동리에서 동천항까지 버스로 10km 이동 후 동천항에서 완도항까지 이동	연인복합1척/200kg/간재미, 정어 양식관리선72척	62ha/1159000kg/전복, 다시마, 미역	
전남	완도군	보길도	선창리			없음		
전남	완도군	예작도	예작리	•반농반어 •보리·콩·고구마 •멸치·참조기·농어·도미·갈치·전어 •김·미역·파래·우뭇가사리·채취		없음	55ha/전복, 다시마, 톳-양식어가는 아가마다 면적지다름. 전복 기두리 67구행사 계약해서 하는데 분가한 지녀집에 일부 떼어주는 경우가 있어 실제는 약 8가구가 전복양식	104ha/150000kg/해삼, 가사리, 전복, 미역, 톳-헤너 불려서 행사로 받아 미물기금으로 사용. 1종공동 맨손어업만 하는 아가들은 연간 12개월에 걸쳐서 1달에 사리때 어업일을 하는데 약 140여일정도 작업, 1인당 300~400여만원
전남	완도군	생일도	서성리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멸치·삼치·장어·송어 •미역·김 양식		관리선(양식어업)46척 관리선(농수, 자기용)12척	124.5ha/450000kg/건더시마, 물미역-작년 10명 3h 전복, 전복 기두리 0.3ha씩 다시마 미역은 면적 다름. 건더시마 생산 배작업 날짜 전복양식은 200일이상. 미역, 다시마 100일정도 작업함.	104ha/150000kg/미역, 톳, 가사리, 해삼, 전복·부락헤너 외지헤너 불려서 작업. 맨손어업어가 연간 30여일정도 작업하고 약 100여만원정도 소득됨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완도군	생일도	유촌리				169ha/4500500kg/전복, 미역, 다시마-45호기면적 똑같이 나눔. 전복 500kg, 미역2000000kg, 다시마 2500000kg	48ha/500kg/돔, 비지락, 가시리, 미역-65호전부참여 함.1년에30일정도공동작업. 수익금1/n로나눔
전남	완도군	생일도	금곡리			양식관리선 24척	239ha/170000kg/전복, 다시마, 미역	13000kg/미역, 김, 툇맨손 어업 조업일 한달미만
전남	완도군	생일도	굴전리				10가구	
전남	완도군	생일도	용출리		-적조피해로 전복 폐사 많 이됨 -태풍피해로 다시마 소득 줄었음	어장관리선1척 양식관리선30척 -배소유자 승선인원 2명 60세이상 150일, 60세미만 200일 출어	150ha/미역, 다시마, 전복 -핵사비 10기단 1줄 2000원-마을경비로 사용	50ha/ 돔, 해상, 상계-어촌 계 허락하여 5일만 공동작 업 수확양 많은날만 판매-1 인단 20만원정도 돌아감. 수확량 적은날은 개인이 가 저감. 맨손어업은 1년에 15 일정도 일함 소득은 3~4백 만원 정도임(돔, 미역 채취)
전남	완도군	덕우도	덕우리	•주민들 대부분 어업 종사 •장어·멸치·삼치 •김·미역·전복 양식 •쌀·보리·감자·고구마·콩· 마늘		안강망, 통발, 상강만	가두리 전복 85헥타	미물공동-125헥타, 도내거 주 해녀들이 작업해서 미물 60%, 해년 40% 나눔
전남	진도군	상구자도 하구자도	구자	•조기, 도마·민어·홍어·갈치 •김 채취	•생필품은 육지에서 구입 •육지에 나갈때는 개인배 이 용해서 각자 육지로 나감	107구, 돔, 우린, 농어, 잡 는데 끈로가 아러움-유류 값, 생선의 선도유지 때문 에 어쩔수없이 선어로 판매 하는 데 선호도가 낮아 마 진이 거의 없음	107구, 김양식, 700헥타. 107구, 공동으로 분배해서 개인인 관리, 가을 거울에 생산활동	미역, 툇생선, 107구 참여 1/n로 분배, 작년 17구당 2~3백만원소득, 날씨에 영 향을 많이 받아서 소출량이 안정되지 않음, 여름에 많이 활동
전남	진도군	가시도, 가시혈도, 광도, 성남도,	가시	•반농반어 •고구마, 쌀·보리·콩·미늘·유 채 •장어·멸치·잡어 •김·미역·돔 양식				미물공동어업-툇, 미역, 가시 리, 불등이, 공동출해해서 1/n로 분배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소성남도 웅남도, 양덕도				통벌3척/12천kg/문어, 꽃게 연연연승7척/30000kg/장 어, 우럭, 송뱅이 연안복합6척/25000kg/간쟁 이, 우럭, 장어 연안양식30척/200000kg/ 돔, 미역, 참돔 남장망5척/30000kg/멸치, 두피디	55ha/200000kg/미역, 다 시마, 돔-17기구당 행사미 30만원씩 받아 전부 미물 경비로 씌(수협에 일정비용 내고 면사무소에 면허세 납)	30ha/100000kg/미역, 돔, 참돔-1년 90일정도 작업, 전기구 공동작업, 공동분배 1/n (작년 300~400만원씩 나눠줌)
전남	진도군	관매도	관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 쌀, 보리, 콩, 유채 멸치, 조기, 민어, 삼치, 농어 감, 미역, 돔, 양식 		남강망 6척/연인통발 2척- 어선어업 8명	40ha/85000kg/돔, 미역- 미역양식 10기구. 돔양식 17기구 중복해서 2가지 다 하는 기구 10기구	14000kg/미역, 돔-맨손어 업하는어가 3개월정도 일함
전남	진도군	관사도, 갈목도, 진목도, 소마도	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 콩, 보리, 고구마 조기, 민어, 참치, 새우, 우럭, 장어, 갈치, 전갱이, 쥐치 미역, 돔, 양식 		연승 2척	없음	돔, 미역, 가시라-돔 4~5kg 미역 20무X157구 가시라 200kg
전남	진도군	소마도	소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 마늘, 유채, 보리 멸치, 봉장어, 병어 감, 미역, 돔, 양식 		연안복합 3척/관리선 4척- 어선어업 인함	16ha/0kg/돔-면허만 있고 행사는 안함(중단)	25.3ha/10550kg/돔, 미역, 듬북-대략 120일 이상 어업 함 1기구당 약 700만원정도 됨
전남	진도군	내병도, 늘옥도, 옥도, 외병도	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 보리, 참깨 멸치, 문어, 낙지, 갈치 감, 미역, 양식 돔, 파래, 우뚝가시리 채취 		연승4척 통발2척 양식관리선12척	12ha/120000kg/다시마, 모자반, 창각	40ha/50000kg/미역, 돔, 듬북-60일 이상 작업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진도군	대미도	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고구마·감자·유채·마늘 등이며, 보리·쌀·콩 •도미·멸치·병어 •자연산 굴·미역 채취 •김·톳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어망 4척/톳양식 8척/무동력선 12척/연승업 1척/낭정망 1척/연안복합 3척/양식관리선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ha/ 톳, 전복, 다시마 -15h+3h+5h+9h+12h 1줄 100m(톳, 전복, 미역, 다시마) 	565ha/ 미역, 다시마, 김, 세모가시리-톳, 미역 반별로 수확할 달라 반별로 1/h로 나눔, 1년에 개인당 250만원 정도
전남	진도군	둑거도, 둑거혈도, 탄향도, 슬도	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종사 •붕장어·멸치·도미 •자연산 미역 •김·전복 양식 •고구마·보리·유채·콩·마늘 				
전남	진도군	라배도, 모도	라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반 이상 농업 종사 •보리·쌀·콩·고구마·감자·참깨·마늘·유채 •소·돼지·닭·염소·기축사육 •장어 •미역·전복·김·톳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톳, 전복, 다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어업-통발, 장어
전남	진도군	모도	모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보리·콩·조·시금치 •멸치·붕어·도미·승어 •김·미역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선 4척-한달에 20~25일 동안 하루에 3~4반씩 실어나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ha/5000kg/톳, 다시마, 미역-계장의 4아가기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톳, 다시마, 미역, 엽일수는 6개월 ~ 7개월
전남	진도군	하조도	청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2척/양식관리선 1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5ha/11000kg/톳, 미역 -13세대가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ha/둘미역, 톳, 가시리 -151세대 자유롭게 1년 70일정도 작업. 8반으로 나눠서 자유롭게 생산, 판매 반끼리 나눔
전남	진도군	상조도	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고구마·콩·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낭정망 1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15ha/59000kg/전복, 다시마-전복양식은5년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ha/3000kg/톳, 물, 세모 -200만원 소득어기는 연



수산물 안전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돼지 가축 사육 • 참조기·멸치·갈치·전어·민어·홍어 • 김·굴 양식 			인입차, 어촌계에서 설립한 주는대신 개인이 시설을 각자 갖추고 대신 입자묘는 안남 개인허가양식업	40일 작업함. 모든어가가 다 어촌계원임
전남	진도군	죽항도	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대부분 어업 종사 • 갈치·고등어·멸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 해파리 피해로 소득 감소 	농장만 7척	117.5ha/100000kg/톤, 모자반, 미역, 전복 개인면허-해조류	20ha/8000kg/톤, 미역, 우뚝가사리-공동채취하고 공동판매 1년 30일만 100여만원 그외 우뚝가사리 60일
전남	진도군	청등도	읍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콩·고구마 • 김·파래·미역·툰·우뚝가사리 		연안복합 3척, 농장양 1척	21ha/60000kg/톤, 청각, 모자반-217구가 양식어장은 나눠서 개인행사	65600ha/16000kg/미역, 툰, 병포
전남	진도군	상하죽도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서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농반어 • 고구마, 쌀·보리·마늘 • 삼치·우럭·병어·붕장어 • 김 양식 		부합 3척/10000kg/아나고, 우럭	없음 개인면허1명-전복	15ha/미역, 툰-1년에 7~10일정도 어업활동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150~200만원 정도 소득임
전남	진도군	맹골도, 죽도, 광도	맹골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농반어 • 보리·고구마·유채 • 붕장어·멸치·도미·우럭 • 자연산 미역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도로 양식면허없음 • 서거차어촌계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업무는 분리되어 있음 	연안복합 3척	파도, 바람때문에 면허없음	미역, 툰, 김·팬손어업은 100일~120일 정도 공동작업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동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주로 어업 종사 • 갈치·멸치·고등어·도미·방어·붕장어·전어 • 자연산 굴·소라 채취 • 미역·김·툰 양식 • 고구마·보리·콩·마늘·유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가 강해서 미역외에 다른 양식은 못함, 멸치는 여객선오면 화물차 실어보내 병동시킨 후 중간거래상에 게 판매, 미진 적음 • 동거차 어촌계가 동육과, 동막으로 구분, 동육으로 통합예정 	농장만 5척/연안연승 1척-주업이 멸치어장이다 6명이 하는데 여객선 동내주민 전체가 매달려서 하고있음. 연안연승은 판매용 어획은 안함	184.5ha/간미역, 간툰, 병포-팬손어업일수는 30일. 미늘주민 공동채취, 공동판매. 주로 미역, 툰, 가사리. 단 미역은 채취후 개인별로 나누어서 개인이 건조 가공후 판매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동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km •생필품 구매가능 	<p>남장망5척/80000kg/멸치, 디포리</p>	<p>10ha/35000kg/미역-어촌계원 일부만 양식함</p>	<p>20ha/10000kg/미역, 톳</p>
전남	진도군	하조도	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뚝-돌미역·멸치 •물돔은 6월 한달간 거두어 전 물량을 수출하므로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톳 자연산 채취해서 마을어장에 다시 심어 양식함 	<p>남장망1척/3000kg/멸치, 장어, 문어</p> <p>통발2척/6000kg/멸치, 장어, 문어</p> <p>양식관리선21척/50000kg/톳, 다시마</p>	<p>21ha/50000kg/톳, 다시마, 전복</p>	<p>톳, 미역-팬손어업 60일미만</p>
전남	진도군	하조도	유도			<p>양식관리선 5척</p>	<p>17ha/28000kg/톳, 다시마, 미역-개인행사증. 57구정도가 똑같이 나누어서함.</p>	<p>30ha/9500kg/톳, 다시마, 미역-팬손어업으로 미물양종등어업하는 어가의 어업종사기간은 평균 30일정도 됨</p>
전남	진도군	하조도	명지					
전남	진도군	상조도	동구			<p>양식관리선 4척</p>	<p>17ha/37580kg/톳, 모자반, 다시마-개인 5명이 행사함. 어촌계 양식면허어장 톳 16ha, 페류 1ha,</p>	<p>97ha/3540kg/톳, 미역, 황각-공동작업, 공동판매, 150~180일 정도 일하고 1가구당 300만원 정도 수입</p>
전남	진도군	상조도	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농반어 •쌀·보리·고구마·콩·마늘 •소·돼지 가축 사육 •참조기·멸치·갈치·전어·민어·홍어 •김·굴 양식 •특산물로는 멸치젓·굴젓 		<p>연안복합 2척/관리선 7척-양식관리선인데 어업도 함. 배가 있는데도 어선어업 안하는 경우가 많음</p>	<p>52ha/90000kg/톳, 다시마-면허 1088호 (8ha), 10890호 (9ha), 10889호 (9ha), 10886호 (5ha), 10887호 (3ha), 10516호 (8ha), 수협면허 10ha</p>	<p>73ha/5000kg/톳, 미역, 돔북-팬손어업은 공동작업으로 90일정도 함. 2079호 (52ha), 2077호 (21ha)</p>
전남	진도군	상조도	올목			<p>복합4척/46000kg/멸치, 병어, 문어</p> <p>양식관리선8척/40000kg/톳</p>	<p>21ha/30000kg/톳, 우럭, 광어</p>	<p>3ha/3000kg/돔북, 새모, 미역-나미든 노인들만 있어서 정승배씨 개인에게 1년에 200만원씩 받고 임차</p>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이촌계	도서의 특성	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어어장 특성
전남	진도군	상조도	당도			없음	16ha/27000kg/툰, 전북, 다시마-전북 2ha, 다시마 미역 톨 14ha. 전북은 2가구가 1ha씩 나눠서 함. 작년에 비해 농아서 생산은 못함. 톨양식은 11기구 행사 개인마다 면적은 다름 연승식으로 양식	3ha/3000kg/툰, 톨북, 기사리-1종공동어장만 하는 맨 손어기는 공동작업, 공동판매 하는데 1년간 30~40일 정도 어업일함. 17기구당 대략 100여민원정도 매출
전남	진도군	죽향도	죽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어업 종사 •갈치·고등어·멸치 		남정망 12척	10ha/36000kg/툰-12기구 톨같이 나눔	연간생산량 2400kg/미역, 톨
전북	군산시	비안도, 두리도	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 대부분 농업과 어업 겸하나 어업 비중 큼 •멸치·오징어 •김 양식, 전북·해삼 채취 •쌀·보리·고구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에 나가고, 어업활동 중단한 기구가 많음 	지망 30척/복합 40척	750ha/700kg/김	93ha/10000000kg/전북, 해삼
전북	군산시	연도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어업 종사 •멸치·삼치·새우 •전북·해삼 채취 •김 양식 •고구마·보리·무·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km -생활품 구매불가능 	남정망4척/멸치 동발2척/꾸꾸미, 우럭, 들개 복합6척/우럭, 농어 양식관리선10척(어선어업도 함)/꽃게, 꾸꾸미 상위양3척/광어, 오징어, 우럭 연안개발양간망5척/새우, 아구, 꾸꾸미-총30척에서 연간생산량20만kg	102ha/0/김-1/n로분배. 2008년에 돌풍을고해서 수확량없이시설민망기침 개인면허-피조개(임덕수), 전북(김수정)	73ha/해삼, 전북, 바지락- 개인들이 채취해서 개인작업량만큼 기침. 작업은 90일 이상함
전북	군산시	장지도, 대장도	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어업 종사 •조기 		연안개발10척/연안복합10척-지명어선총예5척정도멸치도잡음 어선이약간큰경우	100ha/5000kg/김-면적이 100여 ha가 넘지만 시설비 투자금이 높고 어기들이 노	25ha/바지락, 해삼, 전북-1종의 해삼, 전북은 개인(다름마을시림)한테 임대주고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에는낚시배활용해서 소득을 림.아기50여호호되는데어선어 업어가5가정도있고그외 어가들은어선어업어기들과 친척간이라같이배타고생계 틀어어감	평화되어 양식을 기피해 한 재 두어가가 각 10여ha 행 사하고 있음	임대료를 어촌계 운영자금 으로 사용. 바지락·부녀회 주관으로 1년 3일정도 공동 작업, 공동분배, 체험마을 운영으로 일반인에게 참가 비발아 부녀회가 사용. 작년 1어가당 바지락 채취로 얻 은 소득 10만원 정도 연말 에 지급
전북	군산시	신유도	신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부분 어업 종사 멸치·조기·바지락·꽃뚜기·주꾸미 김 양식 쌀·보리·고구마·마늘·고추 		연안유지망8척/4000kg/광 어, 꽃게 연안통발2척/12000kg/아나 고, 소라 연안복합20척/40000kg/우 럭, 놀래미, 농어	없음	84ha/3000kg/전복, 해삼등 -3~12월까지 물때만 작업. 해녀:마을 6.4로 나뉨. 4년 에 행사비 4억받아 공동경 비쓰고 난 나머지 1년에 1 어가당 50만원 정도씩 나누 어줌
전북	군산시	어청도	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우럭·놀래미·해삼·전복 미늘·채소 		복합자망120척이상 무허가100척이상	941ha/20억원 이상/김, 바 지락, 피조개	38ha/30억원 이상/해삼, 전 복·해녀작업 1년 120일. 해 녀:마을 3:7 연말 공동분배 (238기구) 1000만원 이상 기집
전북	군산시	무녀도	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새우 바지락 양식 제염업 쌀·보리·고구마 		연안복합15척 연안유지망3척	200ha/김	60ha/전복, 해삼, 홍합-1년 50일이상 작업. 전주민 공



수산물 안전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양식관리선5척		동작업 공동경비로 사용 나 머지 연말에 1500만원씩 나 눠줌. 홍합은 무제한으로 가 져가되 1인당 1포대(20kg짜 리)당 1만원씩 어촌계에 내 야함. 받은돈은 부락경비로 사용
전북	군산시	방축도	방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 •전복·해삼·김 양식 •쌀·콩·고구마·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망 15척, 복합 10척, 낭 정망 4척, 구획허가 7척 	240ha/28000000전kg/김, 해삼, 전복 개인어장 1명 소유	97ha/1900000전kg/홍합, 툰, 청각
전북	군산시	명도	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3척/지망 2척/구획어 업 3척/양식장관리 3척/기 타 5척 	49ha/김	49ha/5000kg/해삼, 전복, 가 리비-1년에 90~100일정도 일함
전북	군산시	말도	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발 3척/각망(구획어업) 3 척/지망 1척/복합 1척/양식 장관리선 4척 		75ha/7800kg/가리비, 피조 개, 해삼, 전복 양식어업으 로는 면허가 나가는 했는데 모두 종패를 뿌려서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양식업으 로 보고 있지 않음
전북	군산시	개야도, 죽도	개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야도-조기·갈치·삼치·도 미·대하 •죽도-주로 어업종사, 갯벌 에서 패류채취 체험프로그램 운영 		160~170기구		1증공동미늘어장
전북	부안군	신왕등도 하왕등도	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왕등도-대부분 어업종사, 약초재배, 보리·고구마·쌀 •멸치·조기·광어·농어·우럭 •하왕등도-주민들 자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격거리 32km •생필품 구매가능 •통상 매년 맨손어업만 해서 약 7~800만원 정도 소득 	연안복합5척/30000kg/농 어, 우럭, 놀래미 통발양척/20000kg/문어, 아 니고, 정어	104.18ha/4000kg/전복, 피조개 개인면허-전복 12ha(계장 님)	31ha/홍합, 툰-어가들이공 동작업. 1년에약90~120일정 도어업일함. 전복, 피조개, 투석살포식 양식어장은해녀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약초 채취, 주로 어업과 양 식업 종사, 해삼·전복·민어· 우럭, 농어·노래미 등	이 있었으나 최근 소득이 줄어 최근 약 500여만원정 도에 불과	관리선2척 정지망(각망)1척/22000kg/ 농어, 우럭, 노래미		(외지)고용하직업 정지망-31ha/22000kg/농 어, 우럭 55ha/바지락, 홍합-1년60 일공동작업, 공동분배함을 지급개인소득.전주민참여1 년1000만원정도돌아감.바지 락홍합채취.
전북	부안군	식도	식도			없음		
전북	부안군	위도	치도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가 끝난 후 생태계가 파괴 로 생산량 급감		정지망2척/행사계약하고시 설안해서생산량없음 연안복합1척 연안자양1척	94ha/255000kg/바지락, 가무락, 전복-바지락(65ha) 중개인에게10ha임대.전복 (9ha) 중 5ha임대 전복 5ha, 가무락10ha, 백 합10ha, 전복9ha	4kg/5000kg/해삼
전북	부안군	위도	별금		•마을어업지역 총 250ha	자망1척 연안복합8척 양식관리선10척	50ha/ 전복, 톳 -전복 1어 가. 1년 1500만원, 톳 6어 가. 임대료는 마을경비로 사용	200ha/바지락, 홍합-1년150 만원공동작업, 공동분배, 마을경비일부쓰고나머지1어 가당대략650만원정도지급
전북	부안군	위도	진리				158ha/235000kg/바지락, 감-김 125ha(작년 12월에 시작. 어촌계가 관리하고 20여가가 참여하는데 개인 으로 행사안하고 일할때마 다 일당으로 지급됨). 바지 락 33ha(50가구정도가 채 취함. 채취량 개인별로 나 눔)	81ha/바지락, 굴, 가무락- 개별(개인들이)로 채취해서 모름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전북	부안군	위도, 거문도	대리		•주소만 되어있고 실제로 외 부에 거주하는 사람 많음			
제주	서귀포 시	미라도	가파도	•전복·소라·툰·미역 채취 •민박소득 •옹천수가 나지 않아 빗물을 모았다가 여과시켜 가정용 수로 사용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에 서 전력 공급		복합어업 11척/모름·방어, 돔, 참돔 연간 3000만원	없음	303.8ha/170000kg/전복, 소라, 오분자기, 툰, 미역
제주	제주시	황간도, 상추자도	대서	•보리·고구마 •멸치·고등어·방어·도미·가지 미·넙치·갈치·조기·전갱이·쥐치·문어 •김·미역·우뭇가사리·툰·채취 •굴 양식				
제주	제주시	상추자도	영흥	•보리·고구마 •멸치·삼치·고등어·조기·방어·도미·넙치·갈치·쥐치·문어 •미역·툰·우뭇가사리 •마른멸치·문어포·갈치참자 젓·멸치젓 등이 특산물		근해유지망 5척/연인복합어업 22척/무동력선 5척	없음	105ha/27000kg/소라, 미역, 툰, 모지반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신양			30가구		1종공동미늘어장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묵			연인채낚기 3척	없음	99.5ha/38000kg/소라, 툰, 모지반, 해삼, 전복
제주	제주시	하추자도, 추포도	예초	•고등어·전갱이·도미·갈치·방어·삼치	•전체 35가구 중 어선어업 10여가, 해녀 24~25명, 맨손어업 5~10여호	-연인복합8척/삼치, 부시리 -통발2척/문어, 삼치		150ha/전복, 소라, 미역-해녀 채취 •툰, 모지반-어가 직접 채취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늘어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어업 10척 중 5톤이 넘는 통발 어선이 2척은 연간 9개월에 걸쳐 약 150일 조업, 5000만원의 매출. •1척은 인력난으로 조업중단 •5톤미만 8척은 연간 150일 조업, 2500~3000만원의 매출, 혼자 조업하거나 해녀인 부인이 같이 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미늘공등어장에서 해녀들은 어촌계에 행사를 내고 연간 8개월에 걸쳐 약 120일 정도, 보통 1000만원 정도 매출 올림(개인별 편차가 심함) •1종 공동 맨손어업은 반별로 연간 20일 정도 모자반 공동채취해서 어기당 50만원 정도 매출 올림.
충남	보령시	삼시도	삼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삼치·새우류·게 •김 양식 •굴·전복·대합 양식 •쌀, 보리·콩·고구마·마늘·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공동, 양식면허 공동채취, 공동판매 금액도 똑같이 나눔. 연간 공동작업 일수가 75일정도 1가구당 1000만원 정도 소득됨. 공동작업 외에도 개인 채취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20척/꽃게, 쭈꾸미 •농장민2척/멸치, 새우, 꽃게 •인강5척/멸치, 새우, 꽃게 •기타(낙시배)2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ha/25737kg/해삼, 전복 -해삼, 전복은 짐수기선과 계약을 해서 채취후 어촌계가 매출 일부 받아나눔. 가구당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8ha/굴, 홍합, 낙지, 바지락
충남	보령시	호도	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조기·꽃게·새우류·해삼 •전복·김·굴 양식 •쌀·마늘·파·양파·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지에서 25km, 정기선 1일 1회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선(마을어장)1척/60전kg/해삼, 전복, 바지락 통발5척/75전kg/꽃게, 우럭, 노래미 복합어업25척/75전kg/광어, 우럭, 삼치 지망5척/7500kg/광어, 꽃게, 기타잡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ha/60000kg/해삼, 전복, 바지락 •해삼 56000kg, 전복 2000kg, 바지락 2000kg
충남	보령시	외연도	외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전복·해삼·새우류·꽃게·우럭·까나리·놀래기·홍어 등 •지연산 김, 미역·굴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담선(관광객)1척/해삼, 전복, 키조개 화물선1척 짐수기선1척/5417722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83.75ha/해삼, 전복, 홍합 -135어가공동관리.어촌계에서관리함(개인에게분배안함)전복, 홍합, 해삼종류를 산 톳, 미역,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5ha/해삼, 전복, 홍합 톳, 미역, 김-맨손어업만 하는 아가들도 계절마다 자연산 톳, 미역, 김 	



수산물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미물어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고구마·고추 		<p>니점기선1척/477353700kg 관리선1척 근해안강망7척/까나리, 멸치, 아구 연안안강망13척/까나리, 멸치, 아구 연안저망15척/긴제미, 광어, 우럭 연안통발14척/놀래미, 꽃게, 소라 연안복합33척/우럭, 도미, 농어</p>	<p>투석식으로양식,해녀불러서 채취 개인면허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산 전복, 해삼 등 채취 •해녀들이 채취해서 판매금을 어촌계 관리비용으로 사용, 어촌계 소속 한 어가당 작년에 약 330여만원 정도를 지급함
충남	보령시	북도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치·전복·해삼·새우류·꽃게·우럭·까나리·놀래기·홍어 등 •자연산 김, 미역·굴 채취 •보리·고구마·고추 		<p>개량안강망7척 연안복합7척 근해안강망2척</p>	<p>128ha, 100전q, 해삼, 전복, 개조개, 해녀나 잠수배로 채취. 58호로 수익금 분배</p>	<p>홍합, 바지락, 톳·팬손어업 200일이상 어업일수 되고 어가당 500~1000만원도 얻음. 개별채취, 개별소득</p>
충남	보령시	장고도	장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업은 갯길·생선·주업 •까나리, 새우류, 참조기·민어·송어·갈치 •김, 굴, 백합 양식 		<p>유지망 10척/연안개량안강망 5척/연안장망 2척/근해안망 24척/통발 1척</p>	<p>없음</p>	<p>367.5ha/133484kg/바지락, 전복, 해삼</p>
충남	보령시	고대도	고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우류·전어·멸치·남방망자어·꽃게·조개류 어획 •김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르피해 지역 	<p>개량안강망9척, 연안안강망 1척, 근해안강망 1척, 연안저망 24척, 구획주목망1척</p>	<p>385ha/10000kg/미역, 해삼, 전복, 바지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3.5ha, 50전q, 낙지, 굴, 게 •어촌계은 자유롭게 채취. •개인소득, 연간 100일 조업
충남	보령시	원산도	선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3분의 1 농업 종사 •보리·쌀·고구마·콩 •멸치·대구·까나리·새우 •미역·김·꼬막양식 			<p>어촌계면허양식어장</p>	<p>1종공용미물어장</p>

시도	시군구	도서	어촌계	도서의 특성	어촌계의 특성	어선어업 특성	양식어업 특성	마을어장 특성
충남	보령시	원산도	진항				어촌계면허양식어장	마을어장 특성 1종공동마을어장
충남	보령시	원산도	집치			인강만 4척/복합지망 25척	마을어장없음 협동양식어장, 217ha/1000kg/우럭, 해삼, 새조개	80ha/15000kg/바지락·kg수 를 개인별로 규정. 새조개는 종패살포 초기단계로 생산 량 없음
충남	보령시	효지도	효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합·백합·김 양식 •멸치·꽃게·우럭 •쌀·보리·고구마·인삼 		정지성구획업 1척	6.5ha/10000kg/우럭	32ha/150000kg/바지락, 해 삼, 굴
충남	보령시	육수	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수 어촌계(섬5개) 소도항 거쳐기면 8km 	주목명(농장) 20척/연인통 밭 15척	6ha/200000kg/우럭	30ha, 50천kg, 바지락, 해 삼, 자연산 및 종패 채취
충남	서천군	유부도	송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우류·송어 •연전 				